

# DDA 농업협상 진전 상황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임 송 수 연구 위원  
김 상 현 전문 연구 원  
임 소 영 연구 원  
이 용 호 연구 원  
최 용 규 세계농정연구원장

## 연구 담당

임 송 수	연구위원	연구총괄, 2장~6장
김 상 현	전문연구원	1장, 2장, 3장, 7장, 자료정리
임 소 영	연구원	2장, 3장, 자료정리
이 용 호	연구원	3장
최 용 규	세계농정연구원장	5장

## 머 리 말

---

2006년 7월 WTO 라미 사무총장은 DDA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다. DDA 협상 주요 6개국 각료회의에서 미국, EU, 브라질 등 주요국이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7월 이후의 협상 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다.

DDA 협상이 중단된 현재, WTO 회원국들은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모델리티 협상 내용과 결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협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협상을 주도하는 회원국들이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바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UR 협상에서도 보았듯이 주요 회원국과 그룹 간의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중단된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의 내용을 분야별로 평가·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서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모델리티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국의 제안을 근거로 분석하되 새로운 관점과 분석 방법의 개발에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협상 담당자들에게 긴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재개될 모델리티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협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 ABSTRACT

## Impacts of DDA o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raw up implications from the agricultural proposals made by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the Group of 20 (G20) countries for the Doha Round negotiations, to analyze spillover effects on domestic agriculture, and then to propose recommendations for establishing the Country Schedule (C/S) and indicate directions for agricultural policies under the new WTO regime.

The implications drawn out by analyzing market access scenario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U.S proposal will bring Korean tariffs to deeper cuts than the EU and G20 proposals. Second, designation of sensitive products would partially contribute to alleviate negative effects of tariff cuts. However, substantial designation of special products, above all, is given priority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of tariff cuts. Especially the negative effects of tariff capping would be minimized by securing sufficient numbers of special products.

The results of domestic support scenarios are as follows: Under the developing country status, the overall base level of the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 is subject to a substantial reduction of up to 47% at maximum, and the sum of AMS plus de minimis (DM) plus Blue Box (BB) is reduced by 48%. However under the developed country status, the OTDS is declined by maximum 70% and the sum of AMS, DM, and BB is reduced by 78%. Therefore, the OTDS does not constrain the utilization of domestic supports on the basis of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Doha Development Round.

The KREI-ASMO and partial equilibrium models are applied to forecast modality effects on domestic agriculture. Agricultural income including direct payments for rice would be subject to lower cuts than in the case of no direct payment for rice. Namely, the direct payment for rice would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attenuate decreases of farm income during the DDA round. And the analysis of a partial equilibrium model shows that the production values of beef, pig, pepper, garlic, etc. would be subject to deeper cuts than those of other commodities.

Taking a higher level of market opening into consideration, Korean agriculture needs lower reduction obligations and additional transition periods

in implementing the WTO rules. After submitting the country schedule on the basis of modalities, we need to conduct bilateral negotiations with the countries concerned. Hence, we should concentrate our efforts to maintain the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bilateral negotiations.

Now, while the infrastructur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e are still poor, domestic agriculture has come to face drastic changes and crises as it has to fully open its agricultural market.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have been centered on supporting rice prices, but these policies need to be redirected to strengthen government services or expand directly paid subsidies. Therefore, to effectively make preparations for a new era of openness, it is imperative to reform agricultural policies.

Researchers: Song Soo Lim, Sang Hyun Kim, So Yeong Lim, Young Ho Lee  
E-mail address: [songsoo@krei.re.kr](mailto:songsoo@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4

### 제2장 모델리티 협상 동향과 시사점

1. 협상 논의 동향 ..... 5
2. 분야별 주요 내용 ..... 7
3. 협상 전망과 시사점 ..... 26
4. 협상 중단 의 원인과 시사점 ..... 64

### 제3장 모델리티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1. 모델리티 분야별 시나리오 분석 ..... 73
2. 시장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97

### 제4장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민감품목의 선정 ..... 115
2. 특별품목의 선정 ..... 120
3. TRQ 대상과 증량 방식 ..... 121
4. 특별 수입구제조치(SSM)의 선정 ..... 123

### 제5장 이행계획서(C/S) 양자협상 대책

1. 주요 양자협상 대상국의 잠재적 요구 사항 ..... 126
2.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대응 방향 ..... 130

## 제6장 WTO 규범을 고려한 국내 농정 방향

1. 국내보조 조치의 요건 검토와 조정 방향 ..... 134
2. 국내 농정의 새로운 방향 ..... 137

## 제7장 요약과 결론

1. 모델리티 협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 ..... 142
2.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과 양자협상 대책 ..... 144
3. WTO 규범을 고려한 국내 농정 방향 ..... 145

참고 문헌 ..... 147

- 부록 1. 관세 감축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계측: 부분균형 모형 ..... 153
- 부록 2. 탄성치 가정에 활용한 선행연구 ..... 156
- 부록 3. 부분균형 모형에 의한 시장접근 분야 모의실험 결과 ..... 162
- 부록 4. 양자협상 대상국에서 수입한 실적: 품목별 ..... 192

## 표 차례

---

### 제2장

표 2- 1.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에 관한 주요국 제안 비교 .....	11
표 2- 2.	SSM의 발동 기준과 추가 관세: G33 제안 .....	15
표 2- 3.	SSM에 관한 회원국 사이의 공방 .....	16
표 2- 4.	주요국의 그린박스 제안 주요 내용 .....	23
표 2- 5.	주요국의 국내보조 감축 제안 내용 .....	26
표 2- 6.	수출국별 수출 품목과 수입국별 관세율 .....	27
표 2- 7.	주요국의 관세 감축률 제안별 국내 효과 비교 .....	29
표 2- 8.	주요 수입국의 고율 관세 비중 .....	30
표 2- 9.	주요 수입국의 고율 관세 품목 .....	32
표 2-10.	9개 민감품목에 관한 예시 .....	34
표 2-11.	수입수요 탄성치별 TRQ 증량 수준 .....	42
표 2-12.	G20 감축률에 기초한 TRQ 증량 수준 .....	44
표 2-13.	각국의 감축률에 기초한 TRQ 증량 수준 .....	46
표 2-14.	미국의 품목별 CCP 지급 현황 .....	53
표 2-15.	주요국의 품목별 AMS 현황 .....	55
표 2-16.	주요국의 최소 허용보조 지급 현황 .....	57
표 2-17.	우리나라의 최소 허용보조 실적 .....	57
표 2-18.	회원국들의 블루박스 활용현황 .....	59
표 2-19.	우리나라의 허용보조 지급 동향 .....	60
표 2-20.	미국의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 시나리오 .....	62
표 2-21.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 총액 추계 .....	63
표 2-22.	주요국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	70

## 제3장

표 3- 1.	시나리오 구분: 개도국 가정 .....	74
표 3- 2.	시나리오별 관세구간 및 감축률 .....	75
표 3- 3.	특별품목 시장개방 시나리오 .....	77
표 3- 4.	시나리오 1-1-1~1-1-3의 특별/민감품목 .....	78
표 3- 5.	시나리오 2-1-1~2-1-3의 특별/민감품목 .....	79
표 3- 6.	시나리오 3-1-1~3-1-3의 특별/민감품목 .....	80
표 3- 7.	시나리오 1-2-1~3-2-3의 특별/민감품목 .....	81
표 3- 8.	국내보조 분야의 시나리오 설정 .....	88
표 3- 9.	선진국, 개도국 시나리오 설정 .....	98
표 3-10.	관세 감축률 가정 .....	103
표 3-11.	모형에 사용된 탄성치 .....	104
표 3-12.	일반품목과 관세상한을 적용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선진국 .....	106
표 3-13.	민감품목과 관세상한을 적용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선진국 .....	107
표 3-14.	민감품목과 관세상한을 비적용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선진국 .....	109
표 3-15.	일반품목을 가정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개도국 .....	110
표 3-16.	민감품목을 가정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개도국 .....	112
표 3-17.	민감품목과 관세상한을 비적용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개도국 .....	113

## 제4장

표 4-1.	최적화 모형의 설정 .....	117
표 4-2.	최적화 모형의 결과: 민감품목의 선정 .....	118
표 4-3.	민감품목의 TRQ와 일반품목의 수입량 비교 .....	122
표 4-4.	수입량 기준 SSM의 발동 가능성: 개도국 시나리오 .....	124

표 4-5. 수입량 기준 SSM의 발동 가능성: 선진국 시나리오 .....	124
---	-----

## 제6장

표 6-1. AMS 상한 소진에 이르는 변동 직불의 변수 값 .....	138
---	-----

## 부록 3

부표 3- 1. 일반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선진국 ...	165
부표 3- 2. 일반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선진국 .....	166
부표 3- 3.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선진국 ...	170
부표 3- 4.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선진국 .....	171
부표 3- 5.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선진국 ...	175
부표 3- 6.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선진국 ...	176
부표 3- 7. 일반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개도국 ...	180
부표 3- 8. 일반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개도국 .....	181
부표 3- 9.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개도국 ...	185
부표 3-10.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개도국 .....	186
부표 3-11.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개도국 ...	190
부표 3-12.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개도국 ...	191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 1.	DDA 농업협상의 흐름 .....	6
그림 2- 2.	구간별 관세 감축 제안: 선진국 적용 .....	9
그림 2- 3.	구간별 관세 감축 제안: 개도국 적용 .....	
그림 2- 4.	WTO 회원국의 AMS 양허수준 .....	18
그림 2- 5.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및 개별 보조의 감축효과 비교 .....	25
그림 2- 6.	주요국 제안별 관세 감축 효과의 비교: 선진국 적용 .....	28
그림 2- 7.	관세 감축률과 관세상한의 등가곡선 .....	31
그림 2- 8.	관세 감축과 TRQ 증량의 관계 .....	36
그림 2- 9.	수입량과 TRQ의 관계 .....	40
그림 2-10.	일반품목, 민감품목, 특별품목 수의 관계 .....	49
그림 2-11.	주요 회원국의 AMS 현황 .....	52
그림 2-12.	주요 회원국의 OTDS 현황 .....	62
그림 2-13.	미국의 OTDS 집행액과 감축제안의 비교 .....	65

### 제3장

그림 3- 1.	관세 감축률 변화에 따른 관세구조 변화 .....	83
그림 3- 2.	민감품목의 수 변화에 따른 관세구조 변화 .....	83
그림 3- 3.	특별품목의 수 변화에 따른 과급 효과 .....	85
그림 3- 4.	관세상한의 설정에 따른 과급 효과: 특별품목 5개 .....	87
그림 3- 5.	관세상한의 설정에 따른 과급 효과: 특별품목 20% .....	87
그림 3- 6.	개도국 시나리오 분석 결과: 1995~2000년 기준 .....	90
그림 3- 7.	선진국 시나리오 분석 결과: 1995~2000년 기준 .....	92
그림 3- 8.	1999~2001년 기준 시나리오 분석결과 .....	94

그림 3- 9.	1995~2004년 기준 시나리오 분석결과 .....	96
그림 3-10.	시나리오별 농업소득 전망(직불금 포함) .....	100
그림 3-11.	시나리오별 농업소득 전망(직불금 제외) .....	100
그림 3-12.	시나리오별 재배면적 전망 .....	101

#### 제4장

그림 4- 1.	최적화 과정: 민감품목의 선정 .....	119
----------	------------------------	-----

#### 제6장

그림 6- 1.	쌀 변동 직불의 규모와 AMS 상한 비교 .....	138
----------	------------------------------	-----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연구의 필요성

- 2001년에 출범한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농업협상은 2003년 칸쿤과 2005년 홍콩에서 가진 각료회의에도 불구하고 무역 자유화의 내용과 이행일정을 담은 모델리티(modalities) 수립에 실패함.
- 2005년 11월 홍콩 각료회의는 농업부문에서 큰 성과 없이 끝남. 2006년 4월에 모델리티를 수립하고 7월에 회원국별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를 제출함으로써 연말까지 DDA 협상을 모두 완료한다는 일정을 제시하는데 그침.
  - 최빈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허용과 면화보조금에 대한 합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시한 등 일부 의제는 합의됨.
- 2006년 WTO는 미해결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전개함. 모델리티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WTO는 2006년 1월부터 매월 농업협상 회

의를 열어 논의를 거듭했으며, G6(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 주요 회원국들 또한 고위급 회의와 임시 각료회의를 가지면서 주요 쟁점에 관한 타협을 시도함.

- 2006년 4월로 모델리티 합의 시한이 연기된 가운데 6월에는 농업협상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이 제시됨.
  - 그러나 관세와 보조 감축에 관한 회원국들의 견해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짐. 7월 말 WTO 라미(Lamy) 사무총장은 DDA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룸.
- 모델리티가 타결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WTO 회원국들은 보통 3개월 안에 모델리티에 기초한 국내 C/S를 WTO에 제출한 이후 양자협상을 통해 다른 회원국의 C/S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게 됨.
- 국내외 시장개방의 수준과 정책개혁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규범인 모델리티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국내영향 평가를 포함한 면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C/S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자협상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이바지할 것임.
- 모델리티에 기초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C/S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델리티에 내재된 유연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함.
- 모델리티가 국내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평가는 이행 목표수준이 수치로 명시되는 C/S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계량분석에 기초해야 하며,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교감을 통해 품목별·지역간·분야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양자협상을 통한 C/S 검증 과정은 우리나라의 모델리티 유연성 확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주요 무역 상대국이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도 C/S 작성과 병행해 추진돼야 할 것임.
- WTO 규범에 맞는 무역정책과 농업정책을 시행하려면 농업협정과 C/S 이행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필요한 농정개혁 방향 제시가 필요함.
  - 특히 국내보조 규범에 따른 기준과 요건 등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존 농정조치의 개선이나 조정 또는 새로운 농정조치의 방향을 제시함.

## 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 목적은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의 내용을 분야별로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C/S를 마련하고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그러나 농업협상이 모델리티를 도출하지 못하고, 2006년 11월 현재 그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국의 제안을 근거로 분석하되 새로운 관점과 분석 방법 개발에 연구 초점을 맞추기로 함.
- 계량분석을 통해 농업협정 이행이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품목별·대안별로 분석함으로써 C/S 작성에 필요한 품목 간·지역간·분야간 균형과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모델리티에 내재된 신축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도출함.
- 무역규범에 관한 이해와 주요 무역 상대국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C/S 검증과 관철에 필요한 양자협상 전략을 개발해 제시하되, 우리나라가 선택할 개도국 감축 의무를 뒷받침하는 논리와 대안에 중점을 둠.

- WTO 규범과 기존 주요 국내 농정조치의 합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 또는 개선 방향을 제시함.

## 2. 연구의 내용

- 모델리티 협상 동향과 시사점
  - 협상 논의 동향 및 분야별 주요 내용
  - 협상 전망과 시사점
  - 협상 중단의 원인과 시사점
- 모델리티에 따른 국내 파급영향 분석
  -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의 시나리오 분석
  - KREI-ASMO와 부분균형 모형을 활용한 주요 품목별 시장개방 파급영향
-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 특별품목·민감품목 범위와 기준 설정
  - 특별품목·민감품목 선정안 제시
  - TRQ 대상 및 증량 방식 검토
  - 개도국 특별 긴급 수입제한(SSM)의 대상 품목 선정과 발동요건 검토
- C/S 양자협상 대책
  - 주요 양자협상 대상국의 잠재적 요구사항 검토
  -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전략
- WTO 규범 아래 국내 농정 방향
  - 기존 국내보조 조치의 재분류와 요건 검증과 조정 방향
  - 새로운 농정조치의 도입 방향

##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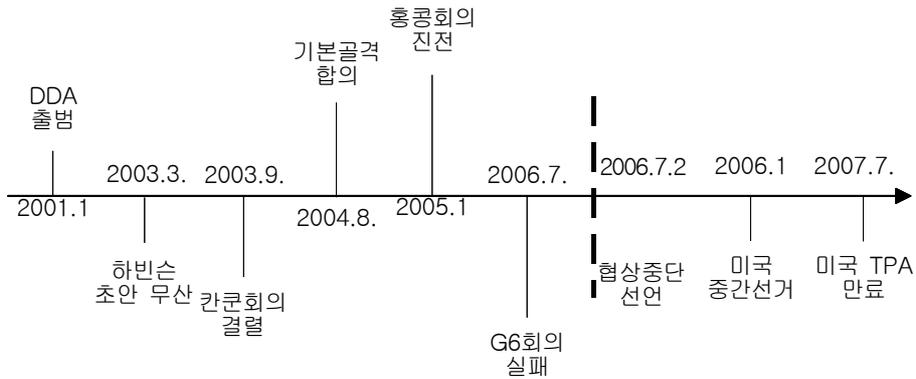
---

### 모델리티 협상 동향과 시사점

#### 1. 협상 논의 동향

- DDA 농업협상은 2001년 11월 UR 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 농업지원 및 보호 수준을 상당히 감축하거나 철폐한다는 장기목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출범함.<그림 2-1>
  - 2003년 3월 하빈슨(Harbinson) 농업협상 의장은 완전한 형태의 모델리티를 확정하려 했으나, 농산물 수출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대립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
- 2003년 9월에 열린 칸쿤(Cancun) 각료회의는 모델리티보다 낮은 단계인 기본 골격(framework)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함.
  - 2004년 초 WTO는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해 2004년 7월까지 기본 골격 타결을 목표로 밀도 있는 협상을 진행시킴.
  - 그 결과 2004년 8월 1일에 WTO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는 기본 골격에 합의함으로써 모델리티의 접근방식과 원칙을 제시함.
- 2005년 9월 후에 WTO는 사무총장에 라미(Lamy), 농업협상회의 의장에 팔코너(Falconer)를 새로 임명하면서 협상 진용을 재정비함.

그림 2-1. DDA 농업협상의 흐름



- 또한 쟁점 사항을 해결하려고 WTO가 위치한 제네바(Geneva)에서 수시로 협상을 소집함으로써 회원국 간 논의를 활성화시킴.
-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제6차 WTO 각료회의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놓지 못함.
  - 미국, EU, G20(주요 수출 개도국 그룹) 등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임.
  - 각료회의는 최빈 개도국(LDC)에 대한 무관세와 무쿼터 수입과,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데에는 합의함.
  - 또한 2006년 4월까지 농업과 비농산물(NAMA) 분야의 모델리티를 확정하며, 2006년 7월까지 이행 계획서(C/S)를 제출하는 일정도 제시함.
- 그러나 협상 진척이 지연되면서 2006년 4월로 정한 모델리티 합의 시한은 다시 연기됐고, 6월 말에는 팔코너 의장의 협상 초안이 공개됨.<sup>1)</sup>

1) 모두 74쪽으로 구성된 의장 초안은 쟁점별 회원국 간 견해 차이를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그러나 합의되지 못한 사항으로 표기된 괄호가 738개에 달해, 모델리티 타결에 회의적인 의견도 많음(임송수 2006).

- 의장 초안을 토대로 7월 24일에 제네바에서 열린 주요 6개국(G6: 미국, EU,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 회의는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쟁점 사항을 해결하지 못함.
- 이에 라미 사무총장은 무기한 DDA 협상 중단을 선언함. 이로써 2006년 10월 말 현재 DDA 협상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임. 협상이 중단된 8월 후에 그룹별 회의는 계속 진행됨.

## 2. 분야별 주요 내용

### 2.1. 시장접근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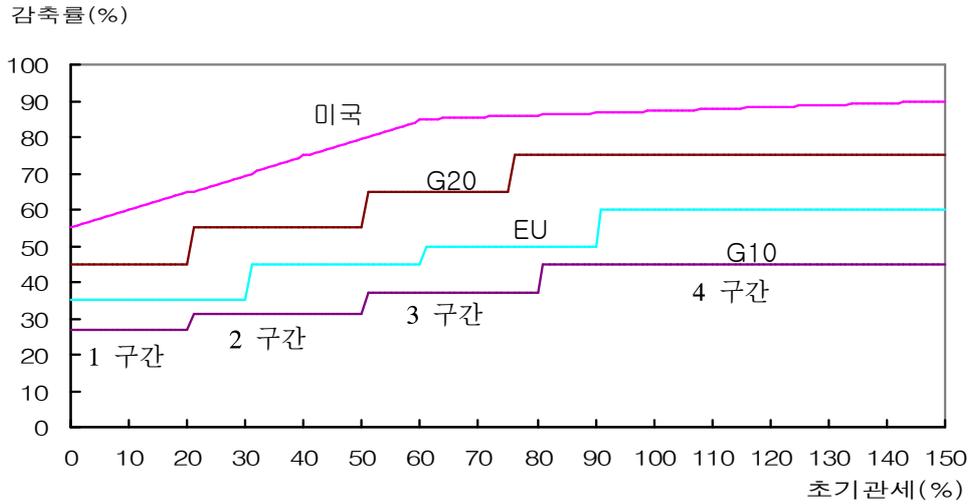
- 관세 감축에 대해 일부 쟁점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남은 쟁점들에 대한 수출입국간 의견 차가 매우 커 DDA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음.
-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이며, 개도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품목에 대해서도 선진국 및 수출개도국과 G33 사이에 견해 차이가 큼.

#### 2.1.1. 관세 감축 구간과 감축률

- 관세 감축은 양허 관세율의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률이 커지는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함.
  - 2004년 7월 말 기본 골격 합의 시 회원국들은 관세율의 높낮이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관세율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감축하는 구간별 관세 감축방식을 채택함.

-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구간을 4개로 나누는데 합의가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제1구간에 속한 품목의 관세율이 가장 낮은 반면에 제4구간의 관세율은 가장 높음.
- 협상을 통해 주요국이 제안한 관세 감축 구간과 구간별 감축률을 비교하면 선진국의 경우 <그림 2-2>, 개도국은 <그림 2-3>와 같음.
- 선진국에 적용될 관세구간의 경우 미국은 0~20%(제1구간), 21~40%(제2구간), 41~60%(제3구간), 61% 이상(제4구간) 등을 제시한 반면, EU는 0~30%(제1구간), 31~60%(제2구간), 61~90%(제3구간), 91% 이상(제4구간) 등을 제안함(USTR 2005, ICTSD 2005a 2005b, 2005c).
  - 특히 가장 높은 감축률이 적용되는 제4구간의 설정과 관련해 미국과 EU의 견해 차이가 큼.
  - G20과 G10이 제안한 구간은 모두 미국과 EU의 제안 사이에 놓임.
- 개도국에 적용될 관세구간에 대해 미국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EU와 G20은 선진국 수준보다 구간 폭이 넓게 하여 각각 0~30%, 31~80%, 81~130%, 131% 이상으로 제안함.
- 선진국에 대한 구간별 평균 감축률은 미국이 60%(1구간), 70%(2구간), 80%(3구간), 87.5%(4구간) 등을 제시해 가장 큰 감축을 요구함.
  - 반면 수입국인 G10은 각각 21%(1구간), 31%(2구간), 37%(3구간), 45%(4구간) 등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제시함.
- 개도국의 구간별 감축률에 관해 미국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선진국 수준의 2/3 원칙(2/3 rule)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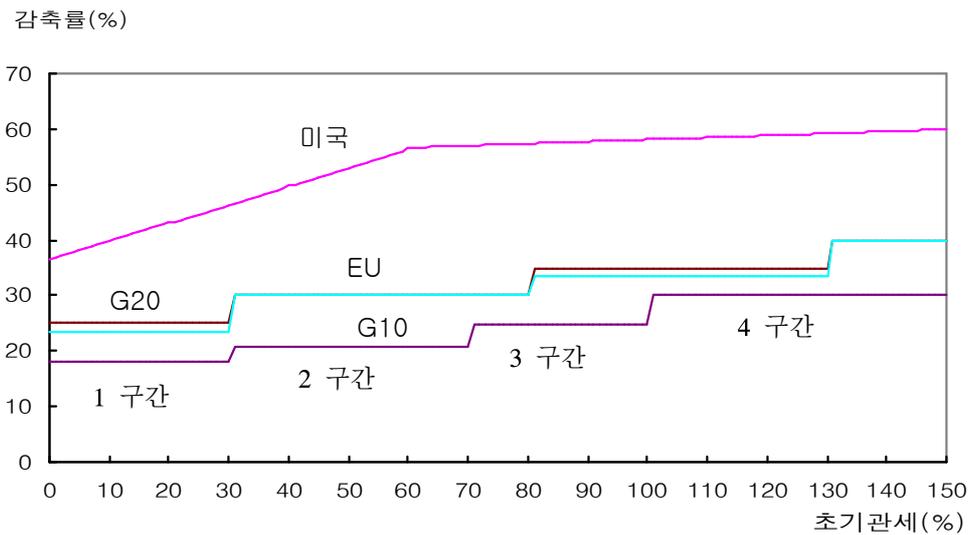
그림 2-2. 구간별 관세 감축 제안: 선진국 적용



주: EU, G10의 그래프는 평균 감축률을 적용한 것임.

자료: USTR(2005), ICTSD(2005a, 2005b, 2005c)

그림 2-3. 구간별 관세 감축 제안: 개도국 적용



주: 미국은 개도국의 감축률에 관해 제안하지 않고 있으나 선진국의 2/3 수준을 가정해 적용한 것임.

자료: USTR(2005), ICTSD(2005a, 2005b, 2005c)

- 관세 감축은 선형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미국과 EU는 각각 점증 선형 감축방식(progressive linear cut)<sup>2)</sup>과 피벗(pivot) 방식<sup>3)</sup>을 제안함.
  - 미국은 선형 방식으로 관세를 감축하되 구간 안의 평균 감축률을 기준으로 관세가 높을수록 더 큰 감축률을 적용하도록 제안함.
  - EU는 2005년 10월에 배포한 제안서에서 구간별 감축방식을 선형방식으로 하되 제1구간에 대해 피벗 방식을 적용하도록 제시함.
  - G20은 단순 선형 감축방식을 제안했고, G10은 선형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신축성을 부여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WTO 농업협상 회의의 펠코너(Falconer) 의장은 2005년 11월에 무역협상 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관세를 선형 감축방식을 적용하여 감축한다는데 회원국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함(WTO 2005a).

### 2.1.2.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의 수와 대우

- 각 회원국은 자국에 중요한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일반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감축률(이하 ‘일반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이하 ‘민감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음.
- 민감품목이 보통 높은 관세율로 보호되고 있는 만큼 협상에서 결정될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수준은 시장접근 개선 수준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

---

2) 점증 선형 감축방식(progressive linear cut)은 구간 안에서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품목에는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고 관세가 높은 품목에는 더 큰 감축률을 적용함으로써 평균 감축률을 맞추는 것임.

3) 피벗 방식(pivotal approach)은 UR 감축 방식을 변형한 형태로 최소, 최대 및 평균 감축률을 각각 정하고, 구간 안에서 일부 품목은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최대 감축률을 적용해 평균 감축률을 맞추는 것임.

- 이에 따라 민감품목의 수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미국과 G20 등 농산물 수출국은 농산물의 전체 관세라인의 1%를 제안한 반면에 EU는 8%, G10은 10% 이상을 요구함.4)
- 그러나 EU는 상위 구간인 제1구간의 관세 감축 시 융통성이 확보된다면 민감품목 수를 관세라인의 4%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힘.

표 2-1.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에 관한 주요국 제안 비교

회원국	민감 감축률	TRQ 증량 기준과 산출 공식
EU	일반 감축률의 33~66%	<p>&lt;산출 공식&gt;  <math display="block">x(\%) = \left( \frac{n-s}{100+t} \right) \times 0.8 \times e</math>                     n:일반 감축률(%), s:민감 감축률(%), t:양허 관세율(%), e: 탄성치 단, t는 200을 초과할 수 없음.</p> <p>① 현행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5%보다 적을 경우 증량 기준은 국내 소비량의 5%  <math display="block">x(\%) = \left( \frac{n-s}{100+t} \right) \times e_1</math></p> <p>② 쿼터 내 수입 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5~10% 인 경우 증량 기준은 현행 수입량  <math display="block">x(\%) = \left( \frac{n-s}{100+t} \right) \times e_2</math></p> <p>③ 전체 수입 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5~10%인 경우 증량 기준은 현행 수입량  <math display="block">x(\%) = \left( \frac{n-s}{100+t} \right) \times e_3</math></p> <p>단, <math>e_1 &gt; e_2 &gt; e_3</math></p> <p>④ 현행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②의 증량폭에 다음과 같은 조정계수를 곱함.                      i)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10~30% 인 경우: a                      ii)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b                      단, <math>1 &gt; a &gt; b</math></p>

4)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라인 수는 HS 10단위 기준으로 1,452개이므로 민감품목 수를 10%로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수는 145개로 결정됨.

표 2-1 계속

회원국	민감 감축률	TRQ 증량 기준과 산출 공식																				
미국	<p>&lt;TRQ 품목&gt;                      ① 쿼터 밖 관세를 수준별로 30%, 35%, 40%, 45% 감축                      ② 쿼터 내 관세는 철폐</p> <p>&lt;TRQ 이외 품목&gt;                      ① 일반 감축률                      +특별수입제한조치(SSG)                      ② 일반 감축률                      +이행기간 연장                      ③ 일반 감축률                      +back-loading</p>	<p>&lt;기준&gt;                      국내 소비량</p> <p>&lt;산출 공식&gt;  <math display="block">x(\%) = base(\%) \times c + (n - s) \times d</math>                     base:국내 소비량의 3%; c:시장접근 조정계수</p> <table border="1" data-bbox="730 813 1257 1003"> <thead> <tr> <th><math>\frac{TRQ}{Cons}</math> 나 <math>\frac{Import}{Cons}</math> 중 큰 값</th> <th>조정계수(c)</th> </tr> </thead> <tbody> <tr> <td>&lt; 5%</td> <td>1</td> </tr> <tr> <td>5% &lt; 10%</td> <td>0.8</td> </tr> <tr> <td>10% &lt; 30%</td> <td>0.6</td> </tr> <tr> <td>&gt; 30%</td> <td>0.4</td> </tr> </tbody> </table> <p>n:일반 감축률(%); s:민감 감축률(%); d:구간별 조정계수</p> <table border="1" data-bbox="730 1059 1257 1227"> <thead> <tr> <th>관세 감축 구간</th> <th>조정계수(d)</th> </tr> </thead> <tbody> <tr> <td>제1구간</td> <td>0.1</td> </tr> <tr> <td>제2구간</td> <td>0.15</td> </tr> <tr> <td>제3구간</td> <td>0.2</td> </tr> <tr> <td>제4구간</td> <td>0.25</td> </tr> </tbody> </table> <p>&lt;TRQ 이외 품목&gt;                      TRQ 증량 면제</p>	$\frac{TRQ}{Cons}$ 나 $\frac{Import}{Cons}$ 중 큰 값	조정계수(c)	< 5%	1	5% < 10%	0.8	10% < 30%	0.6	> 30%	0.4	관세 감축 구간	조정계수(d)	제1구간	0.1	제2구간	0.15	제3구간	0.2	제4구간	0.25
$\frac{TRQ}{Cons}$ 나 $\frac{Import}{Cons}$ 중 큰 값	조정계수(c)																					
< 5%	1																					
5% < 10%	0.8																					
10% < 30%	0.6																					
> 30%	0.4																					
관세 감축 구간	조정계수(d)																					
제1구간	0.1																					
제2구간	0.15																					
제3구간	0.2																					
제4구간	0.25																					
G20	<p>&lt;선진국&gt;                      TRQ 품목만 지정                      일반 감축률의 70% 이상</p> <p>&lt;개도국&gt;                      TRQ 품목의 경우 일반 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p>	<p>&lt;기준&gt;                      최근 3개년 국내 소비량</p> <p>&lt;산출 공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 최근 3개년 국내 소비량의 6%증량</li> <li>· 개도국(TRQ 품목): 최근 3개년 국내 소비량의 4%증량 (국내 소비량 산정 시 생계농 자가 소비량은 제외)</li> <li>· 개도국(TRQ 이외 품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li> <li>② 일반 감축률 대비 최대 45% 일탈+back-loading</li> <li>③ 이행 기간 연장</li> <li>④ TRQ 신설 등</li> </ol> </li> </ul>																				

주: WTO 협상 중에 제시된 주요국의 주장과 제안 내용을 정리한 것임.

자료: ICTSD(2005d)

- 민감품목은 일반 감축률보다 낮은 민감 감축률이 적용되는 대신에 TRQ 물량을 증량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함.
  - 덜 감축한 관세에 대한 보상으로 비관세 장벽(non-trade barriers)인 TRQ의 증량을 허용하는 것임.
- 민감품목의 대우는 민감 감축률의 범위와 TRQ 증량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에 대한 회원국 사이의 견해 차이가 큼<표 2-1>.
- 민감 감축률의 허용 수준에 관해 G20은 일반 감축률 대비 70%(선진국), 미국은 50%, EU는 33~66%, G10은 20~80% 등을 제시함.<sup>5)</sup>
- TRQ 증량 기준은 민감품목의 대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를 놓고 회원국 간 입장차가 크게 벌어짐.
  - 당초 미국과 G20은 소비량 기준에 따라 최대한 TRQ를 늘리려고 하는 반면, EU는 수입량, G10은 TRQ 양허수준에 기초한 기준 설정을 주장함.
- 미국은 당초 국내 소비량의 7.5%를 단순 증량토록 요구한 이후, 수입 점유율과 관세 감축 구간별 조정계수를 감안한 혼합 공식을 제시했음.
  - EU도 현행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내 소비량의 5%를 잠재 수입량으로 간주하는 공식을 내놓음.
  - G10은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한 TRQ 증량방식을 제시한 이후 EU와 공조하여 EU·G10 공동제안을 마련함.
- 최근에는 TRQ 증량 기준에 대해서 국내 소비량뿐만 아니라 현행 수입량, 양허세율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고 있음.

---

5)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마늘의 양허 관세율은 360%인데, 이를 일반 감축률 50%를 적용하면 관세율은 180%로 줄지만, 민감품목으로 마늘을 지정해 민감 감축률(일반 관세율의 50%: 미국 제안)을 적용하면 관세율은 270%가 됨.

### 2.1.3. 관세상한

- 관세상한은 관세 감축률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고율 관세에 직접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미국과 G20 등 수출국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임.
- 관세상한 수준으로 선진국에 대해 미국은 75%, EU와 G20은 각각 100%를 제시한 반면, G10과 ACP(Africa, the Caribbean and Pacific) 국가(71개국 연합)는 관세상한 설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음.
  - G10과 ACP 국가는 구간별 관세 감축 방식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시장 접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대응하고 있음.

### 2.1.4.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의 수와 대우

-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 등의 지표를 기초로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관세 감축과 TRQ 증량 등 시장개방 폭에 있어 최대한의 신축성이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음.
- 특별품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G33은 개도국이 지정하는 특별품목에 대해 최대한의 융통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함.
  - 특별품목의 수는 최소 전체 관세라인의 20%에 달하며, 이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을 면제하거나 최대 10% 감축률을 적용하되, TRQ 증량을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함.
- 반면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수출국들은 특별품목의 수를 소수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별품목도 관세 감축과 TRQ 증량 대상이어야 한다고 반박함.

- 농업위원회 팰코너 의장은 2006년 5월에 배포한 참고문서(reference papers)에서 관세라인의 20%가 전체 수입액의 98.4%에 해당하는 일부 회원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특별품목 수의 축소 의향을 거론함(WTO 2006a).
  - 이에 대응해 G33뿐만 아니라 ACP 국가, 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 등이 연합해 의장의 이러한 견해를 강하게 비난하는 등 회원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됨.

**2.1.5. 특별 수입제한 조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 SSM은 수입 급증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UR 협상에서 도입된 긴급 수입제한 조치(Special Safeguard: SSG)와 비슷한 개도국 우대조치임.
- G33이 제안한 SSM 발동요건과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제안 내용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음(ICTSD 2006a).

표 2-2. SSM의 발동 기준과 추가 관세: G33 제안

발동 기준	발동 요건		추가 관세
물량기준	당해연도 수입량	$\leq$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5%	없음
		$105\% \leq 110\%$	양허세율의 50% 또는 40%포인트 증가 중 높은 수준
		$110\% \leq 130\%$	양허세율의 75% 또는 50%포인트 증가 중 높은 수준
		$130\% <$	양허세율의 100% 또는 60%포인트 증가 중 높은 수준
가격기준	수입가격이 최근 3년간 월평균 수입가격(발동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선적기준: 선적분의 수입가격과 발동기준가격과의 차이보다 낮은 수준 중가세 기준: 해당 선적분의 수입가격과 발동기준가격과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보다 낮은 수준

자료: ICTSD(2006a)

- SSM 발동 요건으로 물량과 가격기준 모두 적용하며, SSM 적용 대상은 WTO 농업협정 대상 전체 품목임.

- G33의 SSM 제안에 대해 미국, EU 등 선진국과 G20은 빈번히 발동될 SSM 조치와 높은 수준의 보호 장치(추가관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SSM 대상 품목을 관세라인의 일부 품목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함<표 2-3>.

표 2-3. SSM에 관한 회원국 사이의 공방

항 목	선진국과 G20의 공세	G33의 대응
대상범위	대상 품목의 수 제한 (예: 전체 관세라인 x%)	수입 급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부당
	자국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품목만 대상	수입 급증은 해당 농산물뿐만 아니라 대체재 생산자에게도 영향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은 제외	SSM(임시조치)와 양허 관세(영구조치)의 연계 불가
	양허세율이 낮은 품목만 대상	현재의 양허세율이 모든 품목에 있어 적절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양허세율이 낮다고 해서 SSM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
	열대상품은 제외	특정 품목의 배제는 불가
발동요건	물량기준과 가격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발동 가능	홍콩 각료회의에서 물량기준과 가격기준을 모두 적용하기로 합의;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나머지 기준은 저절로 만족
	너무 낮은 발동요건	가격 기준은 과거 3년 평균 가격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가격 흐름 반영 물량 기준은 과거 3년 평균에 기초해 정상적인 수입 증가량을 이미 반영
	SSM 발동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와 피해 입증 필요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를 상대국에 통보하고 피해를 입증한 후 발동하는 것은 부당; 발동기준을 충족시키면 피해 입증 불필요
	최혜국 대우원칙(MFN)에 따른 수입에만 적용	지역무역협정(RTA)에 의한 수입에 SSM 적용 여부는 RTA 당사국 간 협의 사항
구제조치	추가관세는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평가	추가관세는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평가; 계산은 양허세율 기준
	추가관세는 UR 시의 관세 수준의 초과 불가	SSM 구제조치를 수입량이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와 연계 불가
	지나치게 높은 추가관세 수준	추가관세는 수입량과 추가관세의 계산근거가 되는 양허세율의 크기에 좌우
추가관세의 지속	추가관세는 부과된 연도(calendar year) 말까지만 지속	하반기에 SSM이 발동되는 경우는 추가관세의 효과가 거의 지속되지 못하는 제약임으로 반대
SSM의 지속	DDA 이행 기간 이후에 철폐	철폐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 2.2. 국내보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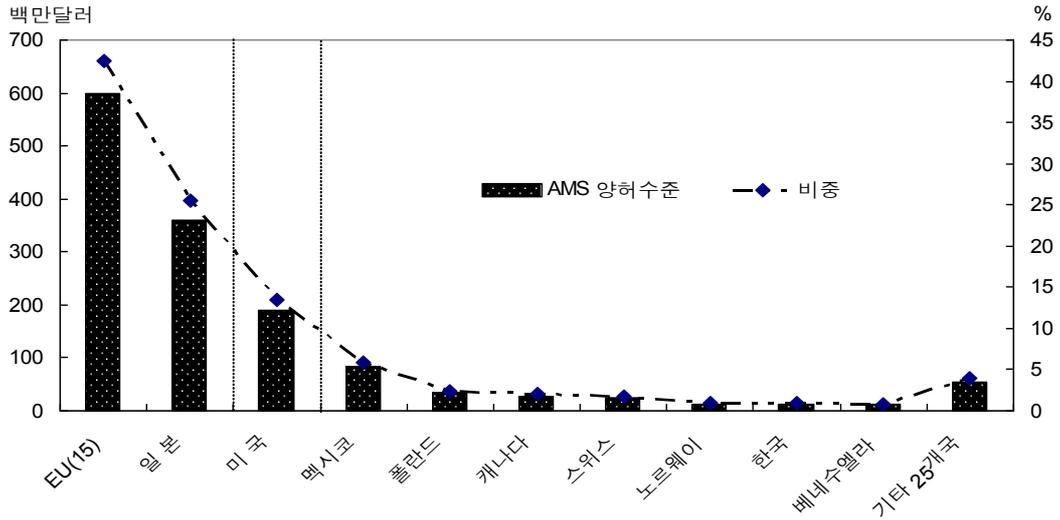
- 구간별 감축 방식과 조화의 원칙에 따라, 보조 규모가 클수록 감축률도 큰 방식이 채택됨.
  - 회원국의 장기 농정개혁에 맞추어 개별 보조 감축과 함께 전체 보조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됨.
- 국내보조 분야는 시장접근 분야와 달리 EU와 G20이 공세적인 입장인 반면, 미국은 수세적인 입장임.
  - EU와 G20은 미국을 겨냥하여 블루박스의 규율을 엄격히 강화해야 하며, 무역 왜곡보조 총액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함.

### 2.2.1.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 AMS 감축 협상 논의는 구간별 감축공식(tiered approach)<sup>6)</sup>에 따라 보조규모 설정, 구간 수와 범주, 구간별 감축률 등에 중점을 둠.
  - AMS는 조화원칙에 따라 보조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감축해야 함.
- 회원국들의 사용 가능 한도인 AMS 양허수준은 절대적 기준으로 구간별 감축공식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짐.
  - 상위 구간에 EU, 일본, 중위 구간에 미국, 하위 구간에 기타 회원국 등으로 구분됨<그림 2-4>.
- 우리나라의 AMS 양허수준은 전체의 1% 미만으로 9위를 차지하며, 하위 구간에 속함. 하위구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구간에 속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보조 감축률은 다르게 설정될 것임.

6) 관세와 마찬가지로 보조도 그 지급수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여,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임.

그림 2-4. WTO 회원국의 AMS 양허수준



주: 1) AMS 감축의무가 있는 회원국은 총 35개국임.  
 2) 최근 3개년 간의 회원국별 WTO 통보자료를 이용함.  
 자료: WTO(2005b)

- 상대적 기준으로 농업생산액 대비 AMS 비중이 높으면서 더 낮은 구간에 배치되는 선진국의 경우 추가로 감축해야 할 것임.
  - 이들 선진 회원국의 경우, G10에 속한 일본(45.4%), 스위스(55.9%), 노르웨이(63.5%), 아이슬란드(118.3%) 등은 추가 감축 의향을 밝힘 (ICTSD 2006b).
  
- EU, 미국, G20 등은 보조의 감축률과 관련해서 큰 견해 차이를 보임.
  - G20은 EU와 미국이 각각 제안한 수준보다 더 감축할 것을 요구함.
  - EU는 미국이 60% 이상 감축할 경우 자국도 7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EU가 83% 감축한다면 자국이 60% 감축하겠다고 대응함(WTD 2006).
  
- 지금까지 주요국이 제안한 내용을 종합하면, 감축률은 상위 구간이 70~83%, 중위 구간이 60~70%, 하위 구간이 37~60% 등임.

- EU는 2006년 2월에 열린 G6 고위급 회의(Senior Officer Meeting: SOM)에서 75%까지 감축할 의사를 시사함(농림부 2006).

## 2.2.2. 품목별 AMS 상한

- AMS의 총액에 대한 감축뿐만 아니라 지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상한이 설정됨.
  - 이러한 품목별 상한 설정은 보조 총액이 줄더라도 품목 사이의 보조규모를 조정함으로써 특정 품목에 대한 보조를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
  - 품목별 상한은 기준기간의 평균 지급수준을 기초로 설정될 것임.<sup>7)</sup>
-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을 위한 기준기간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 EU, G10, G20 등은 UR 이행 기간인 1995~2000년을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은 보조규모가 확대된 1999~2001년을 주장함.
- G10은 UR 이행 기간에 지급된 실적의 올림픽 평균(5개년 중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기준을 제시함.
  - UR 이후에 도입된 품목별 AMS는 최근연도의 실적도 인정하되, UR 이행 기간에 품목별 AMS가 없었거나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하일 경우 농업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상한을 설정하자고 제안함.
- G20은 UR 이행 기간의 평균지급 실적을 기초로 설정하되, 개도국은 ① 1995~2000년이나 1995~2004년, ② 품목별 최소허용보조 한도의 두 배, ③ AMS 한도의 20% 등의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안함.

7) 2003년 하빈슨 초안에서는 품목별 AMS 상한설정 기준기간으로 1999~2001년을 제시함(WTO 2003).

### 2.2.3.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 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축한다는 데 합의됨.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률에 관해서는 주요 회원국 간의 견해차이가 큰 실정임.<sup>8)</sup>
- 감축률과 관련하여, 미국은 현행 기준인 농업생산액 대비 5% 기준에서 50% 감축된 2.5%를 제안한 반면, EU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80% 감축된 1%를 제안함.
- 일부 개도국에 대해서는 감축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제시됨.
  - 개도국들이 대부분의 최소허용보조를 저소득 빈농을 대상으로 지급하거나, AMS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축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거론됨.

### 2.2.4. 블루박스(Blue Box: BB)

- UR 농업협정문 상의 기존 블루박스 이외에 생산제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새로운 블루박스 조치가 추가됨.
  - 새롭게 추가된 블루박스에 대한 세부 요건과 규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주요 협상 쟁점임.
- G20, EU 등은 미국의 CCP를 새로운 블루박스로 분류할 것을 견제하려고 엄격한 규율 설정을 주장함.<sup>9)</sup>

---

8) UR 농업협정문에 따르면,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은 해당 연도 특정품목 농업생산액의 5%(선진국),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해당 연도 농업생산액의 5%(선진국)임. 개도국의 경우 이 비율은 10%임.

9) 미국은 아직 CCP 지급실적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그 분류가 불확실함. 현행

- 새로운 블루박스는 미국이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서 도입한 가격보전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휴경과 같은 생산제한이 없는 대신에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불을 말함.
- G20은 새로운 블루박스가 AMS 감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루박스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함(World Trade Online. 2005).
  - 새로운 블루박스에 적용할 세부 규정으로 ① 기준 면적 및 생산량을 변동시키지 않을 것, ② 보조 지급이 생산 품목과 연계되지 않을 것, ③ 한 품목에 AMS와 블루박스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을 것, ④ 목표가격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 ⑤ 소득 감소로 인한 가격 격차에 따른 보상 수준을 제한할 것, ⑥ 품목별 상한을 설정할 것 등을 제안함.
  - 기존 블루박스의 경우에도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고 통보절차를 강화하면서 개도국이 블루박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 EU는 기존 블루박스에 품목별 상한을 설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새로운 블루박스의 규율 마련에 관심을 보임.
- 회원국들은 블루박스 상한기준과 관련하여, 기본 골격에서 제시한 농업생산액의 5%에서 50% 감축된 2.5% 이하로 감축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감축방식과 관련해서는 견해차이를 보임(WTO. 2006b).
  - EU와 G10은 DDA 이행 기간 5%에서 2.5%로 상한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제시한 반면, G20은 이행 첫해에 협상에서 결정될 상한을 적용하고, 이행 말에는 2.5% 이하로 감축하자고 제시함.

---

국내보조 분류 규정에 따르면, CCP는 AMS나 최소허용보조가 될 것임.

### 2.2.5. 허용보조(Green Box: GB)

- 감축대상에서 면제되는 허용보조 논의의 핵심은 그 본래 목적대로 무역 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발생하기 않거나 최소 수준이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임.
- 캐나다, 브라질 등 수출국인 케언스 그룹(Cairns Group)과 G20은 허용보조의 실제 무역 왜곡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남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추가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반면 G10, EU, 미국 등은 허용보조 규정을 일부 개선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으나 전면적인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로 대립하고 있음.
- 캐나다, G20, 미국 등의 개도국 우대 조치를 포함한 허용보조의 제안을 요약하면 <표 2-4>과 같음.
  - 캐나다와 G20이 제안한 개도국 우대 조치는 수용되는 분위기지만, 일부 기준기간을 고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부과한 요건에 대해서는 미국, EU, G10 등이 반대함.
- 2006년 4월에 펠코너 의장이 제시한 참고문서(Reference Paper)는 현행 허용보조 요건의 기본 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함.
  - 개도국을 위한 허용보조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고,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Direct payment to producers), 비연계 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 등의 기준기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협상 논의 방향이라고 지적함(WTO 2006c).

표 2-4. 주요국의 그린박스 제안 주요 내용

쟁점항목	G-20		캐나다	미국
일반규범	유지		유지	유지
정부 서비스	일반서비스	개도국 우대 조항 추가 · 농지·토지 제도 개혁 및 식량안보, 생계 보장, 농촌개발 사업 등 관련 서비스 항목을 추가	유지	· 농지·토지·제도개혁 서비스 추가 · G-20 제안보다 포괄 적용
	식량안보 공공비축	개도국 저소득/자원부족 생산자 지원을 위한 식량비축용 구매 허용	유지	유지
	국내식량 원조	개도국 기아/농촌빈곤 퇴치 목적으로 저소득/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관리가격의 식량구매 허용	유지	유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기준기간, 지불기준 통보의무 강화	신규 직불 도입 기준 삭제	추후 조정가능	
비연계 소득보조	· 수혜 기준강화: 통보된 고정·불변 기준 기간의 소득·토지·생산에 의해 결정 · 기본원칙 강화: 생산 이외 토지·노동도 농업용도에서 배제 · AMS와 블루박스를 연계한 상한 설정	추후 조정 가능	유지	
소득보험/소득안전망정책 및 정부재정지원	· 개도국 수혜기준 확대: 국내법에서 규정한 기준 적용 · 보상수준 조정: 소득손실의 70%미만을 소득의 70%로 조정 · 개도국 보상기준 추가: 국내법에 따른 생산자 소득의 일정비율	· 수혜대상 명시: 농업경영체 · 보상수준 조정: 좌동 · 수혜 기준기간 확대: 좌동		
자연재해구호지원	· 개도국 수혜기준 확대: 국내법에서 규정한 기준적용 · 보상기준 확대: 작물손실 추가	· 자연재해 지원요건 세분화 · 보상기준 확대: 좌동	유지	
탈농지원(구조조정)	유지	유지	유지	
휴경보상(구조조정)	유지	유지	유지	
투자보조(구조조정)	· 보상 기준 강화: 통보의무 강화 및 고정·불변 요건 추가 · 개도국 우대조항 추가: 기준기간의 융통성 부여	· 지급기준 강화: 생산 이외 생산요소, 생산 투입요소와 비연계 · 보상 기준 강화: 고정·불변	유지	
환경보전지원	유지	· 지급기준 강화: 의무이행에 따른 추가비용만 지급, 생산과 비연계	유지	
지역지원하의 직접지불	· 개도국 우대 조항 추가: 수혜자격 및 기준기간 완화 · 보상 기준 강화: 통보의무 강화 및 고정·불변 요건 추가	· 기준기간 강화: 고정·불변, 통보의무 강화	· 개도국 우대조항 추가 수혜자격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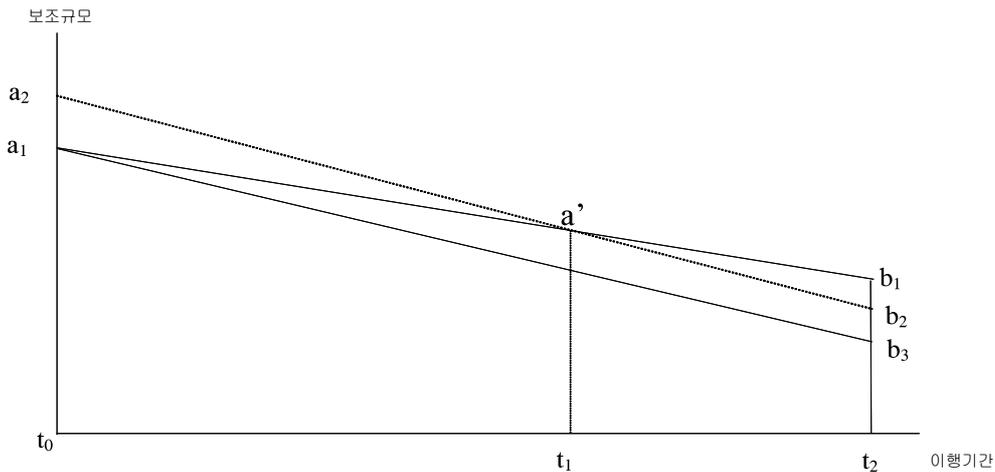
자료: ICTSD(2005e, 2005f, 2006c) <<http://www.agradepolicy.org/page/resource/wto.htm#Member>>

## 2.2.6. 무역왜곡보조 총액(Overall Trade-Distorting Support: OTDS)

- 국내보조의 감축은 개별 보조들의 감축뿐만 아니라 최종 양허수준 AMS, 허용된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 등 개별보조들로 구성된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을 설정하여 감축하는 이중적인 의무를 부과함.
  - OTDS는 구간별 감축공식에 따라 총액의 절대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감축하되 이행 첫해에 20%를 줄이기로 합의함.
- OTDS 감축은 개별 보조들의 구성이 회원국별로 다르고, 개별보조의 감축률이 다르게 결정되어 특정 회원국이 여전히 많은 보조를 사용할 여지가 발생하므로 전체 보조의 절대 규모에 대한 감축을 보장하며, 보조사이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됨.<sup>10)</sup>
  - 사용 비중이 매우 높은 특정 보조에 대한 감축률이 낮게 결정될 경우, 합의된 감축률 이상으로 감축하여 회원국 간 총보조액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별보조들의 감축과 OTDS 감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음.
  - OTDS가 구속력을 지니려면 이를 구성하는 보조별 감축결과의 합계보다 OTDS가 작아야 함.
- OTDS가  $a_1$ - $b_1$ 의 계획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음.
  - $t_0$ - $t_1$  기간처럼 각각의 상한이나 감축률을 적용한 개별 보조의 합계가 OTDS보다 클 경우( $a_2a' > a_1a'$ )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규모는 해당 기간 OTDS 수준으로 제약되어 개별 보조를 추가로 감축해야 함.
  - $t_1$ - $t_2$  기간처럼 OTDS가 개별 보조의 합계보다 클 경우( $a'b_1 > a'b_2$ )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규모는 개별 보조의 총액 수준으로 제약됨.

10) 임송수 등(2004); 이재욱(2005)

그림 2-5.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및 개별 보조의 감축효과 비교



주: 1)  $t_0$ - $a_2$ 는 AMS 최종 양허수준, 허용된 최소허용보조, 합의된 블루박스의 총액으로 구성된 기준 연도 OTDS이며,  $t_0$ - $a_1$ 은 이행 첫째 20%를 감축한 OTDS임.

2) OTDS는 감축률에 따라 이행 기간( $t_0$ - $t_2$ )에  $a_1$ - $b_1$ 이나  $a_1$ - $b_3$ 의 계획에 따라 감축되며, 이때 전자보다 후자의 감축률이 더 큰 것으로 가정함.

- OTDS가  $a_1$ - $b_3$ 의 계획으로 감소할 경우 이행 기간( $t_0$ - $t_2$ ) 내내 각각의 상한이나 감축률을 적용한 개별 보조의 합계가 OTDS보다 더 크기 때문에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규모는 OTDS 수준으로 제약되며, 이에 따라 개별 보조의 추가 감축이 필요함.
- OTDS의 감축 구간도 AMS와 마찬가지로 3개로 나뉘어 상위 구간에 EU, 중위 구간에 미국과 일본, 하위 구간에 기타 회원국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 구간별 감축률은 상위 구간이 70~80%, 중위 구간이 53~75%, 하위 구간이 31~70% 등으로 구간별 감축률이 상이함.
  - EU는 2006년 2월 말에 열린 G6 고위급 회의에서 OTDS를 75%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표명함.
- 국내보조 분야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음.

표 2-5. 주요국의 국내보조 감축 제안 내용

		주요국별 감축 제안 내용			
		EU	미국	G-20	G-10
AMS	EU·일본	70(75%)	83%	80%	70%
	미국	60(65%)	60%	70%	60%
	기타	50(55%)	37%	60%	45%
OTDS	EU	70(75%)	75%	80%	75%
	미국·일본	60(65%)	53%	75%	65%
	기타	50(55%)	31%	70%	45%
최소허용보조		80% 감축 (상한 5%→1%)	50%감축 (상한 5%→2.5%)	AMS 없는 개도국은 감축면제	AMS 없는 개도국은 감축면제
블루박스		새로운 블루박스 기준 강화	농업생산액의 2.5%	블루박스 기준강화	새로운 블루박스 추가논의 필요
허용보조		현행 규정 유지	현행 규정 유지	개도국 관련 규정 완화	현행 규정 유지

주: 1) 개도국에는 선진국보다 더 긴 이행 기간과 낮은 감축률이 적용됨.

2) EU의 괄호 수치는 비공식으로 제시된 내용임.

### 3. 협상 전망과 시사점

#### 3.1. 시장접근 분야

-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수출입국간, 선진·개도국간 입장차가 매우 커 협상 타결 방향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타결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음.

### 3.1.1. 관세 감축률과 구간의 설정

- 관세율이 가장 높은 제4구간의 관세율 범위와 구간 감축률의 설정이 주요 쟁점인데 이는 수출입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임.
- EU는 육류, 낙농품, 곡물 등 주요 품목이 관세율 60~90%에 놓여 있어 이 범위가 감축률이 가장 높은 제4구간에 배정되는 것을 경계하는 반면 미국, G20 등 수출국은 관세율 60% 이상의 수입국 고율 관세 품목을 겨냥해 이를 제4구간에 넣으려고 함<표 2-6>.

표 2-6. 수출국별 수출 품목과 수입국별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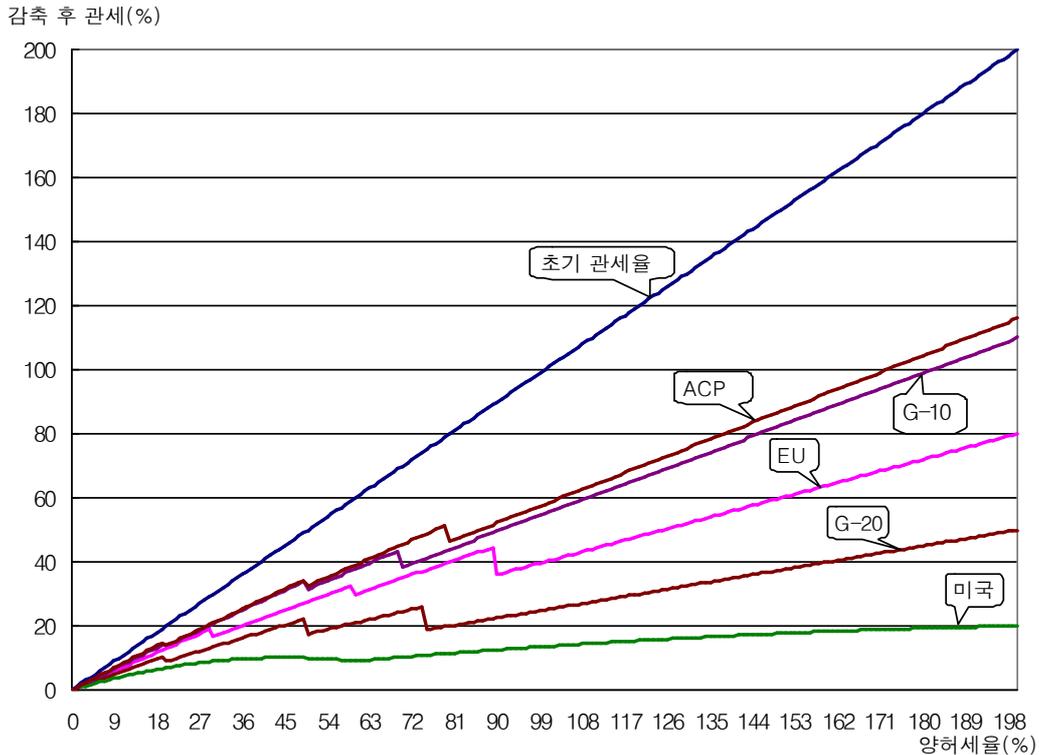
품목명 (HS번호)	주요 수출국	수입국 관세(%)			
		EU	일본	스위스	한국
쇠고기(0201;0202)	미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77~142	50	182~522	40
돼지고기(0203)	미국, 브라질	0~66	0~252	1~369	22.5~25
닭고기(020710)	미국, 브라질, 중국, 태국	6~65	3~12	146~1,019	18~20
탈지분유(040210)	호주, 뉴질랜드	57~80	218~226	-	20
전지분유(040221)	호주, 아르헨티나	45~87	109~365	152.5	40
차(0902)	중국, 인도	0~3	0~17	0	60.7~513
밀(100110)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인도	81.9	247.8	2~221	1.8~9
옥수수(1005)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0~73	0~87	0~157	328
쌀(1006)	태국, 중국, 인도	7~94	568~778	0~126	관세 유예
대두(1201)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0	0	7~139	487
설탕(1701)	호주, 태국, 인도, 브라질	114.9	311.4	-	18
엽연초(2401)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3~31	0	0~40	54

주: 품목은 '99-'03 평균 수출액의 상위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함.

자료: 1) FAOSTAT, 2) 국가별 이행계획서

- 구간별 관세 감축률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감축률을 제시하였으며, ACP 국가와 G10의 제안이 가장 낮은 수준임<그림 2-6>.
  - 초기 관세율 200%에 미국이 제안한 감축률을 적용할 경우 감축 후 관세율은 20%가 되며 ACP 국가의 제안을 적용하면 관세율은 116%로 나타남.
  - G20이 제안한 감축률은 미국과 EU의 중간 수준으로 절충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 관세 감축에 관한 협상에서 G10의 제안은 UR 협상 결과보다 후퇴한 수준이기 때문에 G10의 제안은 협상에서 유의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음.

그림 2-6. 주요국 제안별 관세 감축 효과의 비교: 선진국 적용



- 주요국들이 제시한 개도국의 관세 감축률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결과는 <표 2-7>과 같음.
  - 미국의 제안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2004년 당시 63%에서 28%로 감축되며, 평균 감축률은 UR 협상에서 결정된 24%(개도국 기준)보다 높은 수준인 47%에 이룸.
  - G20과 EU의 제안에 따르면 평균 관세율과 감축률은 각각 41%와 28%로 산출돼, 우리나라가 UR 수준보다 더 많이 양보해야 하는 상황임.
  - 우리나라가 속한 G10의 제안에 따를 경우 UR 수준보다 더 낮은 감축 결과를 얻게 됨.
  
- 미국은 관세 감축률이 최소한 G20 제안 수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최근에 밝히고 있으며, EU 또한 G20 제안과 절충할 수 있는 측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G20의 제안을 중심으로 관세 감축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sup>11)</sup>

표 2-7. 주요국의 관세 감축률 제안별 국내 효과 비교

구 분	초기 관세율 (2004년)	관세 감축 결과		
		미국	G20	G10
평균 관세율(%)	63.2	28.2	40.8	46.7
평균 감축률(%)	24	47.1	28.0	20.2
최고 관세율(%)	887.4	350	532.4	621.2

주: 1) 쌀은 계산에서 제외함.

2) 미국은 개도국 관세 감축률을 제안하지 않았으나 선진국의 2/3 수준을 적용함.

3) EU의 개도국 관세 감축률은 G20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므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4) 초기관세의 평균 감축률은 UR 협상에서 개도국의 평균 감축률임.

5)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의 대우는 산출시 반영하지 않음.

11) 2006년 2월에 주요 12개국(G12)의 시장접근분야 정책모의 실험에서 G20이 제안한 관세 감축률이 기준으로 적용된 점도 G20의 제안이 절충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관세 감축률은 관세상한,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기준과 대우 설정과 연계되므로 종합적인 결과를 기초로 회원국 사이에 타협이 시도될 것임.

### 3.1.2. 관세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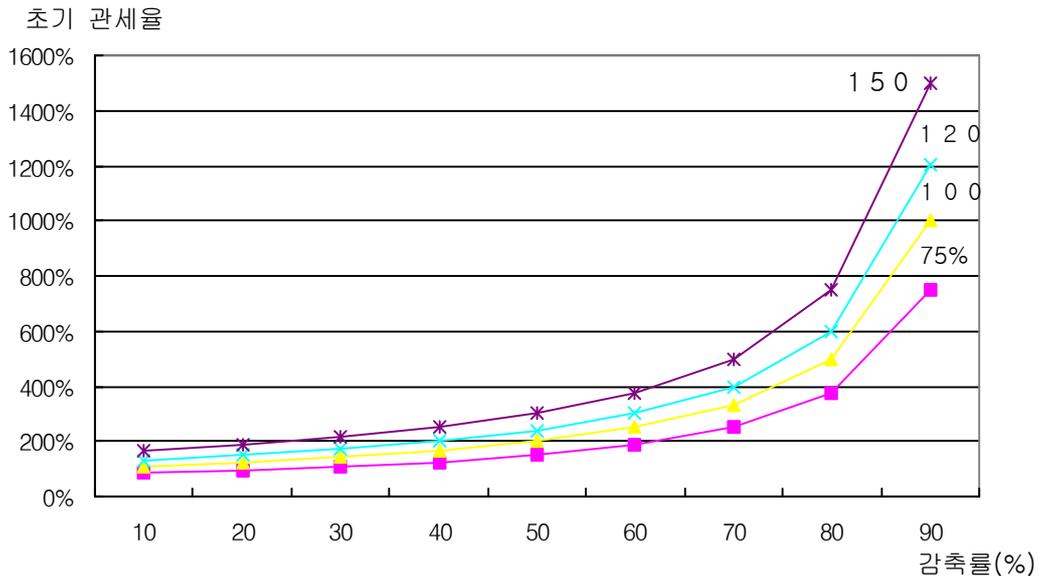
- 관세상한은 수출국이 수입국을 압박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제시됨.
  - 수입 선진국을 겨냥해 미국은 75%, EU와 G20은 각각 100%의 관세상한을 제안한 상태임.
- 고율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국들, 특히 G10은 관세상한 저지를 중요한 협상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함<표 2-8>.
  - 1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전체 관세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노르웨이와 스위스의 경우 각각 20% 이상이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9% 미만임.
- 관세 감축률을 적용한 후 최종 관세율이 관세상한보다 높을 경우 관세상한 수준으로 관세율을 추가 감축하므로 관세 감축률과 관세상한 사이에 등가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그림 2-7>.

표 2-8. 주요 수입국의 고율 관세 비중

회원국	고율 관세(100%<)의 수	고율 관세의 비중(%)
EU	74	3.4
일본	119	8.9
스위스	508	20.8
노르웨이	264	24.7
우리나라	126	8.8

주: 우리나라의 고율 관세에 쌀은 포함되지 않음.

그림 2-7. 관세 감축률과 관세상한의 등가곡선



- 미국이 제안한 대로 관세상한 75%를 적용하는 것은 초기 관세율 750%에 다 제4구간 관세 감축률 90%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냄.
  -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상한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초기 관세율이 750% 이상이어야 함.
  
- EU의 제안처럼 감축률 60% 아래에서 관세상한 100%가 구속력을 나타내려면 초기 관세율은 250% 이상이어야 함.
  - 이는 개도국의 경우를 상정해 감축률 40%와 관세상한 150%를 설정한 결과와 같음.
  
- 관세 감축률과 관세상한 사이의 등가곡선과 회원국의 반응을 감안할 때 미국 측의 제안에 가깝게 관세상한이 설정되려면 감축률을 낮추는 방향이어야 할 것임.
  - 미국의 관세상한 75% 제안은 관세상한에 동의하는 EU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EU나 G20의 제안처럼 100%에서 관세상한이 설정되더라도 스위스, 노르웨이 등 고율 관세의 비중이 높은 일부 수입국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표 2-9>.

-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경우 관세율 200%가 넘는 품목은 각각 215개와 117개에 달하며, 육류, 낙농제품 등 수출국의 관심 품목들이 이에 포함됨.

표 2-9. 주요 수입국의 고율 관세 품목

관세율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우리나라
100~200%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밀크와 크림, 조란, 감자, 일부 과채류, 포도, 사과, 배, 밀, 보리, 옥수수, 쌀, 기타 곡물, 맥아, 매니옥전분, 대두, 종실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 버터, 치즈, 조란, 천연꿀, 일부, 과채류, 보리, 옥수수, 밀, 감자, 대두, 종실유, 사탕무, 동식물성 유지	돼지고기, 밀크와 크림, 유장, 보리, 사탕수수당, 쌀 가공품, 조제분유	양파, 감귤, 분유
200~300%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절화류, 토마토, 일부 채소, 밀, 보리, 기타 곡물, 감자, 맥아, 종실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버터밀크, 유장, 조란, 일부채소, 옥수수, 감자, 기타 곡물	돼지고기,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 유장, 버터, 콩, 밀, 보리,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육가공품, 조제분유, 생사	밤, 백삼, 땅콩, 메밀, 꿀, 맥아, 고추, 쌀보리
300~400%	쇠고기, 돼지고기, 버터, 버터밀크, 수목류, 절화류, 일부채소, 호밀, 맥아, 사탕무, 식물성 유지, 담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조란, 상추, 무, 매니옥 전분, 빵류	돼지고기,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 유장, 버터, 기타 낙농품, 밀전분, 사탕수수	감자, 옥수수, 마늘, 고구마
400~500%	닭고기, 돼지고기, 버터, 수목류, 토마토, 양파, 무, 호밀, 옥수수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육가공품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 버터, 쌀, 밀, 누에고치	쌀, 감자전분, 대두
500%<	쇠고기, 닭고기, 버터, 수목류, 일부채소, 옥수수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밀크와 크림, 난황, 콩, 육/설육의 조분	버터밀크, 유장, 버터, 쌀, 보리, 매니옥 전분, 땅콩	녹차, 맥주맥, 귀리, 잣, 녹두, 대추, 팝콘용 옥수수, 참깨, 홍삼, 수수, 가공곡물, 매니옥

자료: 서진교 등(2005a).

- 우리나라도 개도국에 대해 관세상한 150%가 적용된다면, 관세율 250%가 넘는 고추, 마늘, 보리, 감자, 고구마, 녹차, 참깨, 홍삼, 대두, 옥수수 등의 고율 관세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쌀을 제외한 1,436개 품목(HS 10단위 기준) 가운데 관세율 250% 이상인 품목 수는 94개 또는 전체 관세라인의 6.3%에 이르기 때문에 100~150%의 관세상한 설정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일반품목뿐만 아니라 민감품목에도 관세상한이 설정된다면 수입국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일본은 650% 이상의 고율 관세율 품목인 쌀에 집중해 관세상한의 배제를 추진하고 있음.
  - 민감품목에도 관세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일부 수출국의 주장에 대해 G10과 ACP 국가는 관세상한이 민감품목의 설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 3.1.3. 민감품목 수

- 민감품목 수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EU가 제안한 전체 관세라인 수의 1~8%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EU는 주요국과 협상 중에 관세 감축 제1구간에 자국이 주장하는 피벗 방식이 적용된다면 민감품목 수를 4%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감안한다면 실제 민감품목 수에 대한 협상은 관세라인의 1~4% 사이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만약 선진국의 민감품목 수가 4%로 결정되면 개도국의 경우 6%(선진국의 2/3 규칙)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민감품목 수 6%는 우리나라의 관세율 높낮이로 정렬할 경우 관세율 270%에 해당하는 수준임.

- 민감품목 수와 대우(관세 감축률 축소 등)는 반비례의 관계, 즉 품목 수가 늘어날수록 대우는 감소하므로 품목 수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실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일부 저율 관세 품목도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적정한 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함.
- 서진교 등(2005a)에 따르면 민감품목 수는 민감품목 관련 가공품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관세라인의 10% 내외로 정할 수 있고, 수입 농산물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에 한정시킬 때에는 관세라인의 3%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음 <표 2-10>.

표 2-10. 9개 민감품목에 관한 예시

분류	민감품목	민감품목 수(HS 10단위)와 단계별 감축 예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곡물	쌀	16	16	16	10	10
채소류	고추	7	7	6	5	5
	마늘	6	6	6	4	4
과일류	사과	5	3	2	1	1
	포도	5	3	3	1	1
	감귤	9	7	7	5	3
축산	한우	20	16	16	11	6
	낙농	44	38	25	14	6
특용	인삼	31	19	15	10	5
민감품목 수		143 (127)	115 (99)	100 (84)	76 (66)	41 (31)
전체 관세라인 비중 (%)		9.8 (8.8)	7.9 (6.9)	6.9 (5.9)	5.2 (4.6)	2.8 (2.2)

주: 괄호는 쌀을 제외한 경우임.

자료: 서진교 등(2005a)

### 3.1.4. 민감품목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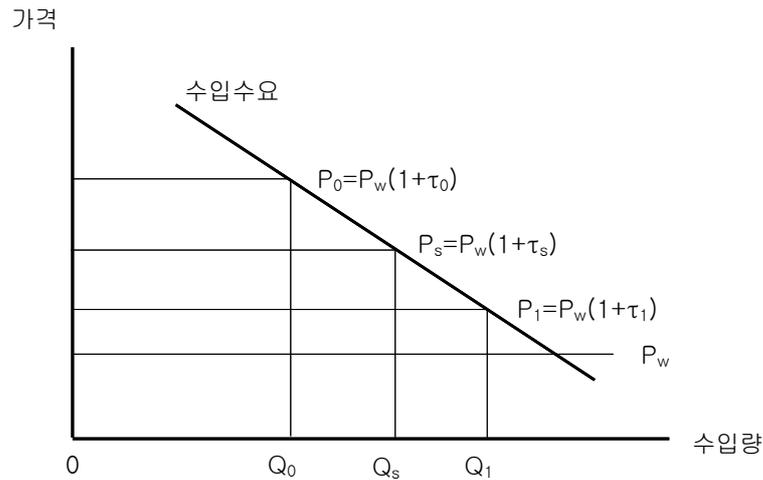
-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에 견주어 낮은 관세 감축률이 적용되는 대신에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 원칙에 따라 TRQ를 증량해야 함.
  - 2004년 7월에 합의된 협상골격(Framework)은 민감품목의 모든 관세라인에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밝힘.
- 관세 감축률과 동등한 TRQ를 산출하려면 수입량을 결정하는 일반 무역이론을 기초로 탄성치를 활용해야 함.

#### 가. 관세 감축률과 TRQ의 관계

- 민감품목에 대해 일반 관세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확대하게 됨<그림 2-8>.
- 일반품목의 관세는 구간별 감축률을 적용해 현재  $\tau_0$ 에서  $\tau_1$ 로 낮아지며, 이에 따라 수입량은  $Q_0$ 에서  $Q_1$ 로 늘어남.
  - 일반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이 적용되는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는  $\tau_s$ 가 되고( $\tau_0 < \tau_s < \tau_1$ ), 이때에 수입량은  $Q_s$ ( $Q_0 < Q_s < Q_1$ )로 결정됨.
- 민감 감축률이 일반 감축률보다 작을수록 일반품목과 민감품목 사이의 관세 격차( $\tau_1 - \tau_s$ )는 커지며 이에 상응하는 수입량의 차이( $Q_1 - Q_s$ )도 늘어남.
  -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에 서로 다른 관세 감축률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량 격차( $Q_1 - Q_s$ )는 가격기준의 감축률 격차와 동등한 물량기준의 TRQ로써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일반 감축률은 민감 감축률에다 TRQ 증량을 합한 수치와 동등함.
  - 일반 감축률과 민감 감축률이 차이가 클수록 이에 해당하는 TRQ 증량 폭은 커짐.

$$\text{일반 감축률} \simeq \text{민감 감축률} + \Delta \text{TRQ}$$

그림 2-8. 관세 감축과 TRQ 증량의 관계



주:  $P_w$ =국제가격;  $\tau_0$ =현행 관세율;  $\tau_1$ =일반품목 관세율;  $\tau_s$ =민감품목 관세율;  
 $Q_0$ =현행 수입량;  $Q_1$ = 일반품목 관세율 아래 수입량;  $Q_s$ =민감품목 관세율 아래 수입량

- 관세율과 동등한 TRQ를 실제로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TRQ는 비관세장벽으로서 관리와 운용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 수출 개도국들(G20)과 미국은 TRQ 품목이 아닌 민감품목에 대해 TRQ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임.
  - 반면 EU, G10 등 수입국들은 TRQ 신설에 반대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관세 감축에 대한 TRQ 동등치는 산출에 필요한 기술적인 한계(뒤에서 논할 탄성치 도출 등)와 더불어 TRQ에 의한 수입효과나 관리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실용 가치가 떨어지지만, 일반 무역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 협상을 진척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평가함.

#### 나. 민감품목의 TRQ 결정요인

- 하나의 상품만 존재하는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모형에서 수입수요

탄성치(import demand elasticities)는 국내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량의 변화로 나타남<식 1>.

$$\eta_Q = - \left( \frac{\Delta Q}{Q_0} \right) / \left( \frac{\Delta P}{P_0} \right) \dots\dots\dots <1>$$

$\eta_Q$ : 수입수요 탄성치;  $Q_0$ : 초기 수입량;  $P_0$ : 초기 국내가격;  $\Delta Q/Q_0$ : 수입량 변화율;  $\Delta P/P_0$ : 가격 변화율

- 국내가격을 세계가격과 관세율로 표현하여 정리하면 <식 2>와 같음.

$$\frac{\Delta P}{P_0} = \frac{\Delta \tau}{1 + \tau_0} \dots\dots\dots <2>$$

$\tau_0$ : 초기 관세율;  $\Delta P = P_1 - P_0$ ,  $P_0 < P_1$ ;  $\Delta \tau = \tau_1 - \tau_0$ ,  $\tau_0 < \tau_1$

- <식 2>를 <식 1>에 대입해 수입량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식 3>과 같음.

$$\Delta Q = -\eta_Q \cdot Q_0 \cdot \left( \frac{\Delta \tau}{1 + \tau_0} \right) \dots\dots\dots <3>$$

- <식 3>에서  $\Delta Q$ 를 민감 감축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TRQ로 정의하면 <식 4>와 같음.

- 수입수요 탄성치( $\eta_Q$ )가 클수록, 민감품목과 일반품목 사이의 관세율 격차( $\tau_S - \tau_1$ )가 클수록 TRQ<sub>S</sub>는 늘어남.

$$TRQ_S = \eta_Q \cdot Q_0 \cdot \left( \frac{\tau_S - \tau_1}{1 + \tau_0} \right) \dots\dots\dots <4>$$

TRQ<sub>S</sub>: 민감품목의 TRQ;  $\tau_S - \tau_1$ : 민감품목과 일반품목 사이의 관세율 격차

- TRQ<sub>S</sub>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수요 탄성치( $\eta_Q$ ), 관세율 격차( $\tau_S - \tau_1$ ), 초기 관세율( $\tau_0$ )이 필요한데, 수입수요 탄성치는 계측해야 함.
- 무역재의 경우 수입량은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의 차이로 결정되며, 수요와 공급은 각각 국내 가격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음<식 5>.

$$Q = D(P) - S(P) \dots\dots\dots <5>$$

- <식 5>를 가격에 대한 미분의 형태로 전환하고 양변에 P/Q를 곱하면 <식 6>을 얻게 됨.

- 식의 좌변은 수입수요 탄성치가 됨.

$$\frac{\Delta Q}{\Delta P} \cdot \frac{P}{Q} = \frac{\Delta D}{\Delta P} \cdot \frac{P}{Q} - \frac{\Delta S}{\Delta P} \cdot \frac{P}{Q} \dots\dots\dots <6>$$

- <식 6>의 우변에 각각 D/D와 S/S를 곱해 탄성치로 표시하면 <식 7>과 같음.

- 수요 탄성치와 공급 탄성치가 클수록 수입수요 탄성치도 높아짐.

- 국내 수요량과 공급량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율 곧 수입 침투율이 낮을수록 수입 탄성치는 커짐.

$$\eta_Q = \frac{\eta_d}{Q/D} - \frac{\epsilon_s}{Q/S} \dots\dots\dots <7>$$

$\eta_Q$ : 수입수요 탄성치;  $\eta_d$ : 수요 탄성치;  $\epsilon_s$ : 공급 탄성치; Q: 수입량; D: 국내 소비량;

S: 국내 생산량

$\eta_Q < 0$ ,  $\eta_d < 0$ ,  $\epsilon_s > 0$

- <식 3>과 <식 7>에서 주어진 관세 감축률 아래 국내 자급률의 수준에 따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냄.

- 주어진 관세 감축률 아래 국내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의 경우 <식 7>에 따라 수입수요 탄성치가 높게 산출될 것이며, 이는 <식 3>에서 수입량 변화( $\Delta Q$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상과 같은 민감품목의 TRQ 산출방법을 적용하는데 가장 민감한 변수는 수입수요 탄성치( $\eta_Q$ )임.

- 수입수요 탄성치는 수식을 통해 도출해야 하며, 그 크기에 따라 TRQ 수준이 민감하게 반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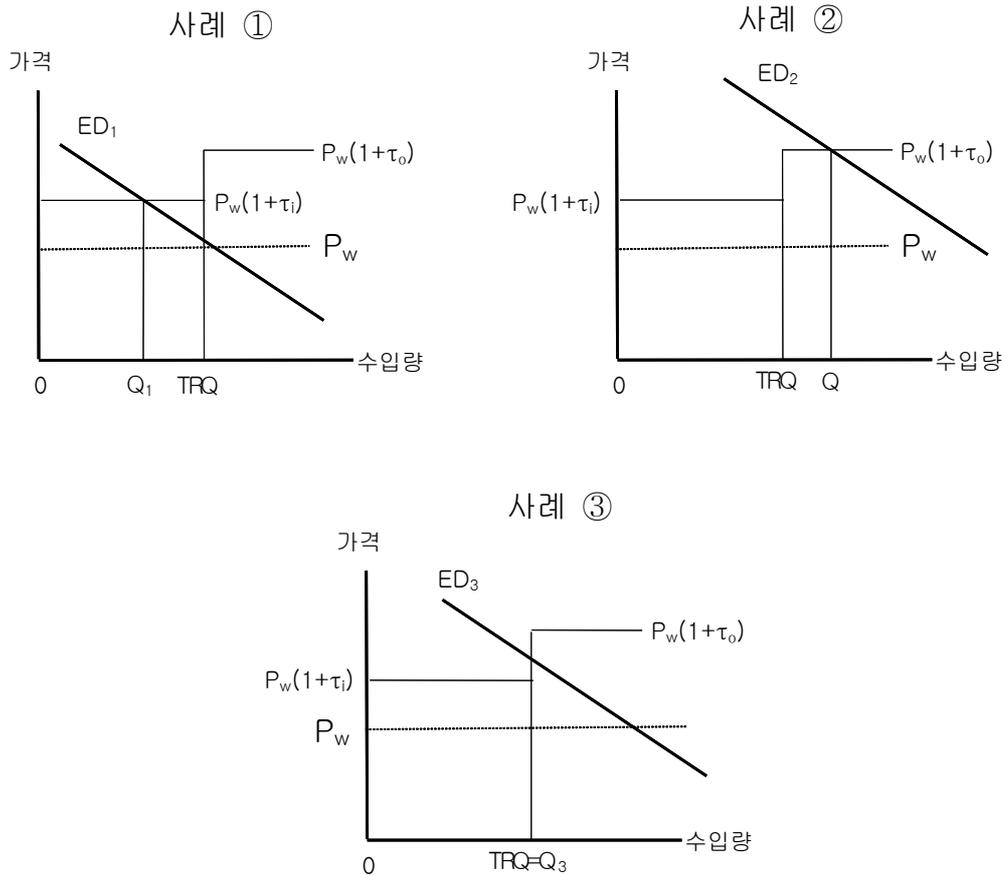
-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품목별 수입수요 탄성치는 연구에 따라 다른 값으

- 로 계측되는 게 보통이며, 탄성치가 전혀 제시된 적이 없는 품목도 있음.
- 다양한 수준의 탄성치 가운데 어떤 값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므로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한 평균이나 그 범위를 정해 활용하기도 함.

#### 다. TRQ 증량 기준

- 민감품목에 대한 TRQ 증량 기준으로 국내 소비량, TRQ 양허수준(UR 기준), 실제 수입량 등이 제안된 상태이나, 실제 수입량이 기준으로 타당함.
  - 일반 무역이론에 따라 도출한 <식 3>과 <식 4>에서 보듯이, 관세 감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는 총 수입량임.
-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 국내 소비량 사이에 직접 연계가 없으므로 소비량을 기준으로 TRQ를 증량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름.
- TRQ 양허수준은 UR 당시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의 경우 최소접근 방식으로 소비량 대비 일정 비율이 쿼터로 배정된 반면에 수입이 있는 경우 현행접근 방식이 쿼터 기준이 됨.
  - 특정 품목이 최소접근 쿼터와 현행접근 쿼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TRQ 양허수준과 실제 수입량은 차이가 나게 되며, 이에 따라 민감품목의 쿼터는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될 것임.
- 관세율의 변화는 총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총수입량은 쿼터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쿼터를 기준으로 민감품목의 TRQ 증량을 결정하는 것은 비대칭적인 결과를 낳게 됨<그림 2-9>.
- 사례 ①은 수입수요가 낮아 TRQ보다 수입량( $Q_1$ )이 적은 경우로 국내가격은 세계가격에다 쿼터 내 관세율(in-quota rate)을 더한 수준에서 형성됨.
  - 쿼터만을 증량한다면 수입량에는 변화가 없게 됨.

그림 2-9. 수입량과 TRQ의 관계



주: ED: 수입수요; Pw: 세계가격;  $\tau_i$ : 쿼터 내 관세율;  $\tau_o$ : 쿼터 밖 관세율; Q:수입량

- 사례 ②는 수입수요가 높아 쿼터 밖 관세율(out-of-quota rate)이 적용된 가격으로도 수입이 이루어져  $Q_2$ 가 TRQ보다 큰 경우임.
  - 쿼터가 현재 수입량  $Q_2$ 이상으로 증량돼야 수입량 증대 효과가 나타남.
- 사례 ③은 수입량과 쿼터가 일치함( $Q=TRQ$ )으로써 쿼터 충족률(fill rate)이 100%인 경우임.
  - 쿼터 증량은 수입량 증대와 연계됨.

- 따라서 TRQ 양허수준이나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민감품목의 TRQ를 증량하는 것은 공평함보다는 협상의 편리함이나 TRQ 증량 폭의 증감에 초점을 둔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라. 민감품목에 관한 TRQ 증량 시산

- 일반 감축률보다 낮은 민감 감축률을 적용하는 대가로 늘려야 하는 TRQ 물량을 무역이론에서 도출한 공식과 주요국에 제안한 공식을 활용해 산출함.
- 분석 대상은 모두 29개 품목으로 관세화 유예 대상인 쌀은 제외됨.
  - 이 품목들은 민감품목의 후보군으로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소비량과 현행 수입량은 1999~2001년 실적의 평균임.

##### ① 수입수요 탄성치별 TRQ 증량

- 무역이론을 기초로 도출한 <식 4>를 적용해 TRQ 증량 수준을 시산함.
  - TRQ 대상이 아닌 일부 품목은 TRQ가 설정되는 것으로 가정함.<sup>12)</sup>
- 품목별 수입수요 탄성치는 각각 0.8, 1.0, 1.2로 가정하고, 구간별 관세 감축률은 G20의 제안(개도국 기준)을 적용하되 민감 감축률은 일반 감축률의 50%를 적용해 TRQ 증량수준을 산출하면 <표 2-11>과 같음.
  - 관세상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12) 앞부분의 협상 동향에서 밝혔듯이 TRQ 신설에 관해서는 회원국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음.

표 2-11. 수입수요 탄성치별 TRQ 증량 수준

품 목	수입수요 탄성치별 TRQ 증량 수준(톤)		
	0.8	1.0	1.2
감귤	22	27	33
감자(기타)	1,336	1,670	2,004
감자(종자)	14	18	21
고구마	11	14	17
고추	889	1,111	1,333
닭고기	1,063	1,328	1,594
대두박용대두	148,991	186,239	223,486
돼지고기	2,399	2,999	3,599
마늘	1,867	2,333	2,800
맥주보리	-	-	-
무당연유	2	2	3
밥	18	22	27
배	1	2	2
버터	64	80	96
사과	3	3	4
쇠고기	6,812	8,515	10,218
양파	1,669	2,086	2,503
오렌지	2,965	3,706	4,447
옥수수	1,036,925	1,296,156	1,555,387
유당	560	700	840
유장분말	1,432	1,790	2,148
인삼	48	60	72
일반가공대두	40,768	50,959	61,151
일반보리	2,700	3,375	4,050
전지분유	95	119	143
참깨	9,594	11,992	14,391
천연꿀	42	53	64
탈지분유	374	468	561
포도	257	321	385

주:1) 현재 TRQ 대상이 아닌 품목도 TRQ가 설정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3) 맥주보리는 현행 수입량이 없기 때문에 증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TRQ 증량 수준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이론대로 수입수요 탄성치가 높을수록 TRQ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추의 경우 초기(2004년 양허) 관세율 360%에 제4구간의 감축률 40%가 적용되는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그 50%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으므로 민감 감축률은 20%가 됨에 따라 그 보상으로 늘려야 하는 TRQ는 889~1,333톤으로 산출됨.
  - 이는 2004년 양허 TRQ인 7,185톤에서 12~19% 늘어난 수준임.
- 제3구간의 감축률이 적용되는 오렌지의 경우 TRQ 증량은 2,965~4,447톤이 되는데 이는 양허 TRQ 대비 5~8% 늘어난 결과임.
- TRQ 증량 수준은 수입수요 탄성치가 클수록, 현행 수입량이 많을수록, 일반 감축률과 민감 감축률이 확대될수록 커지게 됨.

## ② G20 감축률에 기초한 TRQ 증량 수준

- G20이 제안한 관세 감축 구간과 구간별 감축률을 공통 기준으로 삼아 미국, EU, G20 등이 각각 내놓은 산출 공식에 적용해 TRQ 증량을 시산하면 <표 2-12>와 같음.
- TRQ 증량 수준은, 소비량 기준을 채택한 미국 공식 아래 가장 크게 나타남.
  - 대두, 오렌지, 옥수수, 유당, 유장분말, 참깨 등의 경우 이론(수입수요 탄성치 1.0)에 기초한 TRQ 증량 수준은 미국 공식의 산출 결과보다 높는데 이는 위 품목들의 소비량과 수입량이 비슷하기 때문임.
- G20은 감축률의 격차를 반영한 TRQ 증량 공식을 제시하지 않고, 개도국의 민감품목은 국내 소비량의 4%를 단순히 증량하도록 요구함.

표 2-12. G20 감축률에 기초한 TRQ 증량 수준

단위: 톤

품목	수입수요 탄성치=1.0	미국	EU · G10	G20
감귤	27	38,805	1,590	19,403
감자(기타)	1,670	53,862	1,795	26,931
감자(종자)	18	632	25	372
고구마	14	27,430	988	14,827
고추	1,111	10,765	406	5,819
닭고기	1,328	9,760	5,313	12,800
대두박용대두	186,239	69,589	59,862	44,896
돼지고기	2,999	23,817	9,596	31,236
마늘	2,333	29,349	978	14,675
맥주보리	0	11,284	4,041	7,280
무당연유	2	250	14	154
밥	22	5,191	173	2,596
배	2	17,068	1,345	13,004
버터	80	228	72	172
사과	3	24,059	1,896	18,331
쇠고기	8,515	13,560	17,030	15,722
양과	2,086	64,287	2,736	32,143
오렌지	3,706	2,557	5,929	2,965
옥수수	1,296,156	528,470	451,002	340,948
유당	700	486	1,132	564
유장분말	1,790	1,243	2,892	1,441
인삼	60	894	30	447
일반가공대두	50,959	19,041	16,380	12,285
일반보리	3,375	15,598	1,178	9,175
전지분유	119	358	54	210
참깨	11,992	6,090	3,706	3,929
천연꿀	53	1,372	46	686
탈지분유	468	1,521	213	895
포도	321	24,844	1,958	18,929

주: 1) 현재 TRQ 대상이 아닌 품목도 TRQ가 설정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3) 맥주보리는 현행 수입량이 없기 때문에 무역이론에 따를 경우 TRQ 물량이 증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EU와 G10의 TRQ 증량 공식은 이론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지니는데, 이는 공식이 수입수요 탄성치, 수입량, 관세 감축률의 격차 등을 감안하기 때문임.
  - 이론에서 도출한 공식과 EU·G10 제안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가 수입량을 기준으로 삼은 반면에 후자는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TRQ는 수입량 기준의 결과보다 큰 것이 보통이며 EU 공식에 의한 TRQ 증량 수준이 값이 이론 공식의 결과보다 큰 17개 품목은 이를 보여 주는 사례임.
- 결국 G20 감축률 아래 우리나라가 TRQ 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안은 EU·G10 제안임.

### ③ 주요국의 구간별 감축률과 산출 공식에 기초한 TRQ 증량 수준

- 각국이 제안한 관세 감축 구간과 구간별 감축률에 따라 각 산출 공식을 적용해 TRQ 증량 수준을 산출하면 <표 2-13>과 같음.
- G20의 TRQ 증량 결과는 위 ②의 수준과 같음.
  - G20의 공식은 소비량만을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감축률 변화와 관계없음.
- 오렌지, 유당, 유당분말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품목의 경우 미국 제안에 의한 TRQ 증량수준이 EU의 결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각 그룹별 관세 감축 제안에 따라 민감품목의 TRQ 증량폭을 계산했을 때 EU·G10의 공동 제안에 따르는 것이 TRQ 증량폭을 최소화하는 방법임.

표 2-13. 각국의 감축률에 기초한 TRQ 증량 수준

단위: 톤

품목	미국	EU · G10	G20
감귤	50,932	1,590	19,403
감자(기타)	70,694	1,795	26,931
감자(종자)	865	25	372
고구마	36,697	988	14,827
고추	14,402	406	5,819
닭고기	16,960	4,959	12,800
대두박용대두	97,649	59,862	44,896
돼지고기	41,387	8,957	31,236
마늘	38,521	978	14,675
맥주보리	15,833	4,041	7,280
무당연유	404	14	154
밤	6,814	173	2,596
배	27,093	1,345	13,004
버터	401	69	172
사과	38,190	1,896	18,331
쇠고기	25,679	17,030	15,722
양파	84,377	2,736	32,143
오렌지	4,842	5,929	2,965
옥수수	741,562	451,002	340,948
유당	921	1,132	564
유장분말	2,354	2,892	1,441
인삼	1,173	30	447
일반가공대두	26,719	16,380	12,285
일반보리	21,332	1,178	9,175
전지분유	489	54	210
참깨	8,545	3,706	3,929
천연꿀	1,800	46	686
탈지분유	2,080	213	895
포도	39,436	1,958	18,929

주: 1) 현재 TRQ 대상이 아닌 품목도 TRQ가 설정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마. 민감품목 대우에 관한 시사점

- 위의 산출 결과를 종합할 때, TRQ 증량을 최소화하는 제안은 EU·G10, G20, 미국 순임.
- TRQ 증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은 1999~2001년 이외의 기준 기간 설정, 일반 감축률과 민감 감축률 사이의 격차 허용 범위, 다양한 조정계수의 변화 등임.
- 관세 감축과 TRQ 증량의 관계에 관한 무역이론에 가장 근접한 공식은 EU·G10 제안이며, 이런 측면에서 EU·G10 공식을 근간으로 협상이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제는 공식에 사용되는 품목별 수입수요 탄성치가 계측되지 않거나 불안정한 추정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불완전하나마 EU의 제안처럼 고정된 값(예: 1.0)으로 가정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3.1.5. 특별품목의 수

- 특별품목은 개도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 대상이고, 일반품목과 견주어 가장 낮은 수준의 감축의무가 요구될 것이란 측면에서 개도국의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임.
- 민감품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품목 수와 그 대우 사이에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전체 관세라인의 20%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G33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특별품목의 대우는 그 신축성의 정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일반품목, 민감품목, 특별품목 순으로 감축의무가 경감될 것이고 일반품목의 예외조치로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특별품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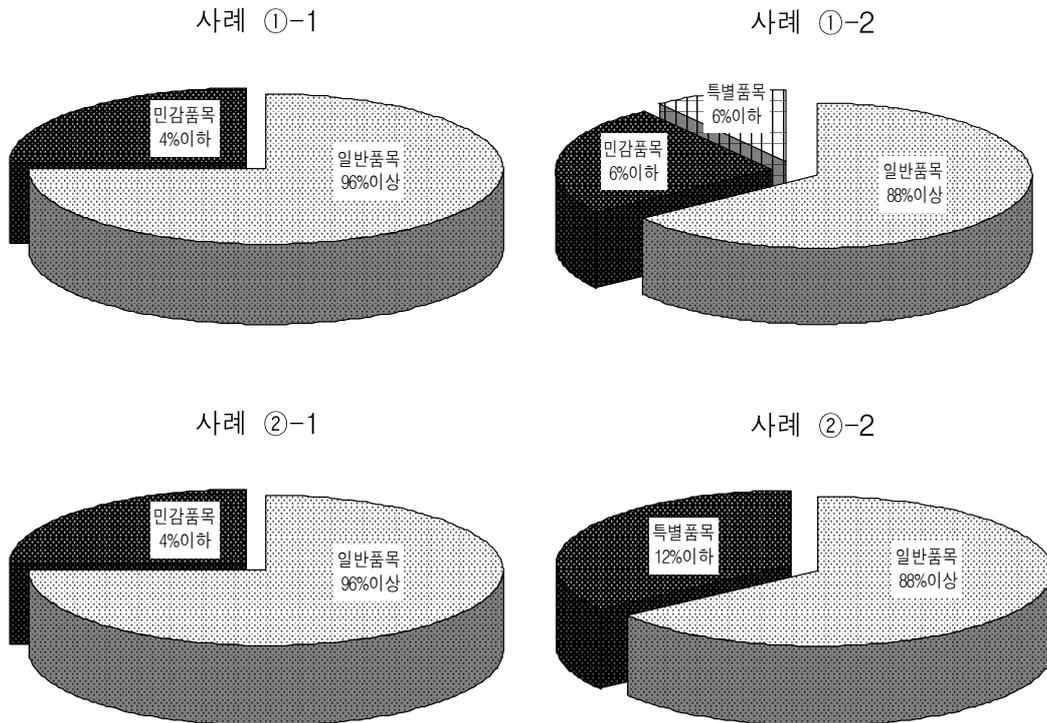
는 이 가운데 최소가 되는 것이 논리적임.

- 일반품목, 민감품목, 특별품목 사이의 관계는 신축성이 점점 커지는 것 (accumulation of flexibility)으로 묘사되기도 함.
  - 선진국의 경우 민감품목 수로 관세라인의 1%에서 4% 이하로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이 특별품목 수가 관세라인 5개로 제한돼야 함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음.
- 만약 선진국의 일반품목 수가 4%로 결정된다면 개도국의 경우 2/3 규칙을 적용해 6%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특별품목 수는 6% 미만일 가능성이 높음<그림 2-10>.
  - 사례 ①에서 개도국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모두 사용할 권한이 주어 진다면 특별품목 수는 민감품목의 경우보다 더 적을 가능성(예: 6% 이하)이 있음.
  - 사례 ②처럼 개도국이 민감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품목에 대한 권한만 주어진다면, 민감품목 수가 더해진 선(예: 12% 이하)에서 합의될 수도 있을 것임.<sup>13)</sup>
-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특별품목 수는 민감품목 수, 개도국의 민감품목 사용권한 여부, 특별품목의 대우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전체 관세라인의 12%에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67% 이상의 고율 관세 품목 또는 172개 품목의 관세 감축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13) 2006년 5월에 열린 WTO 농업위원회 논의에서 온두라스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이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위한 것이므로 이 둘을 연계해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다는 견해를 밝힘. 인도는 개도국이 민감품목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 특별품목 수를 늘려줘야 할 것임을 주장함.

그림 2-10. 일반품목, 민감품목, 특별품목 수의 관계



주: 해당 품목의 박스 크기는 품목별 비중 크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임.

### 3.1.6. 특별품목의 대우

- 농업협상에서 융통성의 수준은 일반품목, 민감품목, 특별품목 순으로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별품목은 개도국만이 사용 권한을 지님.
- 특별품목의 대우에 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관세 감축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됨.
  - 감축의무의 완전 면제는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WTO 체제의 근간인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임.

- 민감품목의 경우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대가로 TRQ를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원칙이 특별품목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에서 언급한 점증적인 신축성에 기초해 TRQ 증량이 배제된 낮은 관세 감축(예: 특별 감축률<민감 감축률<일반 감축률) 의무가 특별품목에 부여될 수 있을 것임.
- 만약 관세 감축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일반 감축률의 50%로 민감 감축률에 관한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 감축률은 일반 감축률의 50% 이상에서 결정될 것임.
  - 일반품목 또는 민감품목에 관세상한이 설정되더라도 특별품목에는 관세상한 의무가 배제될 것으로 예상됨.
- 관세상한과 TRQ 증량 의무가 배제되는 방향으로 특별품목의 대우가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는 중요한 일부 고율 관세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입피해 급증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민감품목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더 많은 특별품목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3.2. 국내보조 분야

### 3.2.1. AMS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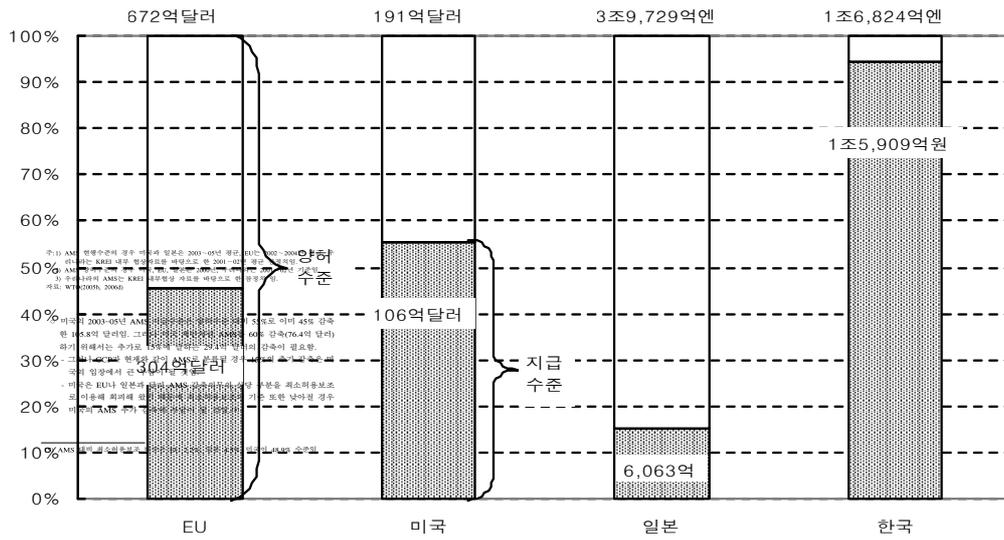
- 회원국들이 AMS 감축을 위한 구간 수, 구간 배치 문제 등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협상 쟁점은 해당 구간의 감축률에 대한 합의 도출임.

- AMS 감축수준은 보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EU, 미국, 일본 등이 제시한 감축 수준보다 추가로 얼마나 더 감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sup>14)</sup>
- 이들 회원국의 AMS 추가 감축 부담 여부는 현재 및 미래의 농정 방향뿐만 아니라 AMS의 양허수준과 실제 지급하는 AMS의 현행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전망해 볼 수 있음.
  - EU, 미국, 일본, 한국의 AMS 사용 현황을 보면 <그림 2-11>과 같음.
- 2002~04년 EU의 AMS 지급수준은 양허수준 대비 45%로 이미 55% 감축된 상황으로 추가 감축의 부담이 있음.
  - 지속적인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개혁에 따른 시장지지가격 인하, 블루박스 및 그린박스의 활용을 통해 AMS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DDA 이행 기간에 15~25% 정도의 AMS 추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1999년 쌀 관세화 전환에 이은 양정개편을 통해서 최근 3개년 AMS 지급수준이 양허수준 대비 15% 정도로 이미 85%를 감축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중위 구간의 감축률 60~70%를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AMS 감축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이나 EU와 같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님.
  - 미국의 AMS 감축 부담은 2002년 농업법에서 도입한 CCP를 기본 골격에서 도입한 새로운 블루박스에 통합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는가에 따라 달라짐.

---

14) 이들 회원국들은 국내보조에 대해 추가 감축 의사가 있을지라도 협상 쟁점(특히 국내보조와 시장접근)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시장접근 분야에서의 양보 없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률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임.

그림 2-11. 주요 회원국의 AMS 현황



- 미국의 CCP는 주로 면화, 옥수수, 쌀, 콩, 대두 등 주로 9개 품목에 대해 지급하고 있음<표 2-14>.
  - 2002~04년에 9개 품목에 연평균 12억 달러가 지급됐으며, 2005~06년에 41~42억 달러 이상 지급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어 보조 감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02~04년 3개년 평균으로 쌀, 면화, 땅콩 등에 대한 CCP 지불액이 해당 품목 농업생산액의 10%를 넘고 있기 때문에 EU와 G20의 주장처럼 CCP 지급에 품목별 상한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미국의 감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0~01년 기준 AMS 지급수준은 양허수준 대비 97%에 달함.
  - DDA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AMS의 대부분을 차지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를 도입함에 따라 추가감축의 여지가 생김.

표 2-14. 미국의 품목별 CCP 지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04년 품목별 평균 지급실적								
					면화	옥수수	쌀	땅콩	대두	밀	수수	보리	귀리
203	2,301	1,122	4,074	4,185	692 (14.2)	194 (0.8)	166 (11.6)	116 (15.5)	23 (0.1)	9.3 (0.1)	7.8 (0.9)	1.8 (0.3)	0.1 (0.02)

주: 1) 괄호는 품목별 생산액 대비 지급액 비중임.

2) 2006년은 전망치임.

3) 1995~2000년 농업생산액의 2.5%는 48.5억 달러, 1999-2001년 농업생산액의 2.5%는 47.7억 달러임.

자료: 1) Farm Subsidy database.

<[http://www.ewg.org:16080/farm/progdetail.php?fips=00000&progcode=total\\_cc](http://www.ewg.org:16080/farm/progdetail.php?fips=00000&progcode=total_cc)>

2) USDA. NASS. Agricultural Statistic 2005.

<<http://www.usda.gov/nass/pubs/agr05/acro05.htm>>

3) USDA. ERS. Farm Income and Cost.

<[http://www.ers.usda.gov/briefing/farmincome/data/GP\\_T7.htm](http://www.ers.usda.gov/briefing/farmincome/data/GP_T7.htm)>

- AMS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선진국의 감축률이 37~60%인 점을 감안할 때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25~40%(선진국의 2/3수준)의 감축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 2006년 당시 AMS에 해당하는 쌀 변동직불금이 9,015억원 지원된 점을 감안할 때 2004년 양허수준(1조 4,900억원) 대비 지급수준 비중은 61%로 이미 39%를 감안한 수준임.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감축률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임.
- 25~40%의 감축률을 적용할 때 이행 기간 말에 AMS 양허수준이 8천 940억원~1조 1,22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의 변동직불금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경우 양허수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변동직불금을 신규 블루박스로의 활동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3.2.2. 품목별 AMS 상한의 설정

- 상한 설정 기준금액은 기준기간의 사용 실적에 따라 설정될 것임.
- 품목별 상한 설정 기준 연도는 미국을 제외하고 UR 이행 기간으로 한다는 데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향후 미국의 입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표 2-15>.
  - 미국의 지급수준은 1995~2000년(104억 달러)보다 1999~2001년(160억 달러)이 크므로 후자가 유리한 반면에 EU의 경우 1995~2000년이 유리함.
  - 우리나라는 1999~2001년(1조 6,250억원)보다 1995~2000년(1조 7,980억 원) 기준이 유리함.
- 우리나라의 AMS 사용실적을 보면 AMS의 97% 정도를 쌀에 집중해 지급했으며, 그 나머지는 보리, 옥수수, 누에고치, 유채 등 4개 품목이 차지함.

- 과거 기준 연도에 지급된 수준을 근거로 품목별 AMS 상한이 설정된다면 우리나라의 AMS 활용 가능 품목은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등 5개 품목으로 한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품목에 대한 정책조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임.
- 품목별 AMS의 상한 설정은 결국 AMS의 대부분을 쌀에 대한 활용으로 고착시키는 제약을 우리나라에 부과하게 될 것임.

표 2-15. 주요국의 품목별 AMS 현황

단위: 억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995~2000 평균	1999~2001 평균
미국(10억달러)	6.2	5.9	6.2	10.4	16.9	16.8	14.4	9.7	10.4	16.0
EU(10억유로)	50.0	51.0	50.2	46.7	47.9	43.7	39.3	28.5	48.2	43.6
한국(10억원)(A)	2,075	1,967	1,937	1,563	1,552	1,691	1,631	1,550	1,798	1,625
쌀(B)	2,016	1,910	1,884	1,510	1,503	1,647	1,583	1,504	1,745	1,578
보리	52	51	46	47	49	42	47	46	48	46
옥수수	6	6	6	6					4	
유채	2	1	1			2	1	0.6	1	1
누에고치			0.0		0.1					0
B/A(%)	97.2	97.1	97.3	96.6	96.8	97.4	97.1	97.0	-	-

자료: WTO(2005b), 농림부(2006)

### 3.2.3.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

-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은 50~80% 정도 감축돼 선진국의 경우 현행 기준인 5%에서 1~2.5%로 감축될 전망이다. 또한 AMS 지급 실적이 없는 개도국은 감축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 미국은 2001년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조가 농업생산액 대비 3.4%로 EU, 일본보다 높은 수준임<표 2-16>.
  - 논의되고 있는 최소허용보조의 감축률을 수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존 보조를 새로운 블루박스 등 다른 조치로 전환하는 것임.
-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에 적용될 감축률은 선진국의 감축률(50%~80%)의 2/3 수준을 감안하면, 30~50% 또는 생산액 대비 5~7%가 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품목특정 보조는 옥수수, 마늘, 소, 콩 등 3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급됨<표 2-17>.
  - 이행 기간에 소, 옥수수, 마늘, 유자, 맥주보리, 콩 등이 해당 생산액의 5%를 초과한 적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보조 활용 정도는 품목 생산액의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도 1995~2002년 평균 농업생산액 대비 1.3%로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서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보조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상한에 비해 활용도가 낮아 지금 상황이라면 생산액 대비 5~7%로 상한이 줄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 그러나 시장개방이 가속됨에 따라 지난 1997년과 1998년의 소 수매(각각 9.3%와 8.7% 활용), 2000년에 맥주보리와 마늘 수매(각각 7.5%와 8.2% 활용) 등과 같은 특수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큰 폭의 감축률은 우리나라 농정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표 2-16. 주요국의 최소허용보조 지급 현황

	미국 (백만 달러)	EU (백만 유로)	일본 (10억 엔)	우리나라 (10억 원)
최소 허용보조(A)	7,045	863	32	790
품목특정	217	290	11	287
품목불특정(B)	6,828	574	21	503
농업 생산액(C)	198,503	246,418	9,130	33,428
A/B(%)	3.4	0.2	0.2	1.5
A/C(%)	3.5	0.4	0.4	2.4

주: 미국과 EU 2001년, 일본 2000년, 우리나라는 2002년(잠정치) 기준임.

자료: WTO(2005c)

표 2-17.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실적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품목 특정	1% 미만	맥주보리, 마늘, 사과, 배, 감귤, 밤, 인삼, 소, 돼지, 닭, 계란, 감자, 고구마, 양파, 파, 생강, 기타채소, 당근, 복숭아, 포도, 감, 유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콩, 맥주보리, 마늘, 사과, 배, 감귤, 돼지, 감자, 고구마, 양파, 고추, 기타채소, 당근, 복숭아, 포도, 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맥주보리, 마늘, 사과, 배, 감귤, 돼지, 감자, 고구마, 양파, 고추, 파, 생강, 기타채소, 복숭아, 포도, 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맥주보리, 마늘, 사과, 배, 감귤, 돼지, 감자, 고구마, 고추, 파, 생강, 기타채소, 당근, 복숭아, 포도, 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사과, 배, 감귤, 소, 돼지, 닭, 계란, 감자, 고구마, 고추, 파, 생강, 기타채소, 당근, 복숭아, 포도, 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사과, 배, 소, 돼지, 계란, 감자, 고구마, 고추, 파, 기타채소, 당근, 복숭아, 포도, 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맥주보리, 사과, 배, 돼지, 고구마, 기타채소, 당근, 참다래, 대추, 화훼류, 버섯류	맥주보리, 사과, 인삼, 돼지, 고구마, 기타채소, 당근, 참다래,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1~3% 미만	콩, 참다래	밤, 인삼, 소	콩, 밤, 참다래	밤, 양파, 유자, 참다래	콩, 마늘, 밤, 인삼, 양파, 유자, 참다래	콩, 밤, 인삼, 양파, 참다래	마늘, 밤, 양파	마늘, 배, 밤, 소, 양파
	3~5% 미만			인삼	콩, 인삼			콩, 소	옥수수
	5~10% 미만			소, 유자	소	옥수수	옥수수, 마늘, 맥주보리	옥수수	콩
품목불특정		0.96	1.03	1.34	1.77	1.27	1.3	1.22	1.51

주: 품목특정인 경우 품목별 생산액 대비 비중이며, 품목불특정인 경우 농업생산액 대비 비중임.

자료: 1) 농림부(2006).

2) WTO 국내보조 통보자료<www.wto.org>.

### 3.2.4. 블루박스에 관한 추가 규율

- 새로운 블루박스의 사용을 기대하는 미국이 그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 특히 가격차에 대한 보전 제한에 반대하면서 협상 진척이 어려운 상태임.
  - 블루박스의 기준 강화는 AMS와 최소 허용보조 감축 등과 연계돼 복잡한 양상을 나타냄.
  - 미국은 기존 블루박스의 경우 품목별 상한 설정을 수용할 수 있으며, 특정 품목에 집중해서 새로운 블루박스 조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관심을 보임.
- 블루박스에 관한 협상은 미국이 제안한 AMS 감축률 60%가 CCP의 새로운 블루박스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이니만큼 미국의 수용 가능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관측됨.
  - <표 2-14>에서 보듯이 미국의 2005~06년 CCP가 41~42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블루박스 상한인 48억 달러(농업 생산액의 2.5%)에 포함되는 금액임.
- 블루박스는 WTO 149개 회원국 가운데 9개국만이 사용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은 조치임.
  - 이번 DDA 협상에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회원국들도 기존 연도 농업 생산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블루박스로 활용할 여지가 생김<표 2-18>.<sup>16)</sup>

---

16) 일부 회원국들만이 블루박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정부의 예산부담이 큼. 즉 블루박스의 대상조치는 직접지불이므로 정부의 공공재정에 의한 지출임. 둘째, 생산과잉에 직면한 국가만이 블루박스 사용에 관심을 갖게 됨. 블루박스는 생산과잉에 따른 생산제한 조치이며 이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는 주로 선진국에 한함. 개도국은 블루박스가 선진국의 국내보조 감축약속에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함. 셋째, 지급에 따른 행정절차, 심사, 감시 감독 절차가 까다로움(UNCTAD 2003).

- 블루박스 사용실적이 없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05년부터 시행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아래 변동직불 부분을 새로운 블루박스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3.2.5. 허용보조 기준의 보완

- 현행 허용보조 요건의 기본적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 반면, 일부 요건의 경우 개도국 우대조항이 추가되거나 또는 일부 그린 박스의 기준기간에 관한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설정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농정의 중심을 차지하는 허용보조는 보조 규모 면에서 가장 크며, 농정개혁 과정에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표 2-19>.
  - 1995년 4조 110억원에서 2002년 당시 6조 930억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하고 있음.

표 2-18. 회원국들의 블루박스 활용현황

국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체코(백만 코루나)							613	788	
에스토니아(백만 크룬)						214	196	191	
EU(백만 유로)	20,846	21,521	20,443	20,504	19,792	22,223	23,726		
아이슬란드(백만 크로나)	1,455								
일본(10억엔)				50	93	93			
노르웨이(백만 크로네)	7,117	7,246	7,375	7,880	7,674	7,669	7,330		
슬로바키아(백만 코루나)	43	36	44			69	129	530	
슬로베이나(1,000유로)						24,569	31,110	53,690	46,364
미국(백만 달러)	7,030								

자료: WTO(2005d)

표 2-19. 우리나라의 허용보조 지급 동향

단위: 10억원,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정부의 일반 서비스	2,479 (61.8)	3,385 (64.9)	3,855 (66.1)	3,581 (66.2)	3,680 (66.7)	3,304 (64.7)	3,495 (60.9)	3,408 (55.9)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511 (37.7)	1,798 (34.5)	1,742 (29.9)	1,784 (33.0)	1,776 (32.2)	1,750 (34.3)	2,173 (37.9)	2,628 (43.1)
개도국 우대보조	20 (0.5)	31 (0.6)	38 (0.7)	42 (0.8)	62 (1.1)	51 (1.0)	66 (1.2)	57 (0.9)
합계	4,011 (100.0)	5,214 (100.0)	5,834 (100.0)	5,406 (100.0)	5,518 (100.0)	5,105 (100.0)	5,735 (100.0)	6,093 (100.0)

자료: 1) 농림부(2006)  
2) WTO 통보자료.

- 허용보조 지급 내역을 세분화하면 정부의 일반 서비스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 개도국 우대보조 등으로 구분됨.<sup>17)</sup>
  - 정부의 일반 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의 56~67%를 차지하며, 생산자에 대한 지불 비율은 30~43%임.
  - 1995년~2002년에 정부의 일반 서비스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에 경영이양 지불, 2005년에 쌀 소득보전 지불제의 고정형 지불 도입 등으로 비연계 소득보조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 우대 조항이 추가된다면 우리나라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음.
  - 개도국에 대한 농업농촌 개발 측면에서 정부의 일반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식량 원조 수혜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정부의 일반 서비스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국내 식량구호 등의 정책 조치 운용에 신축성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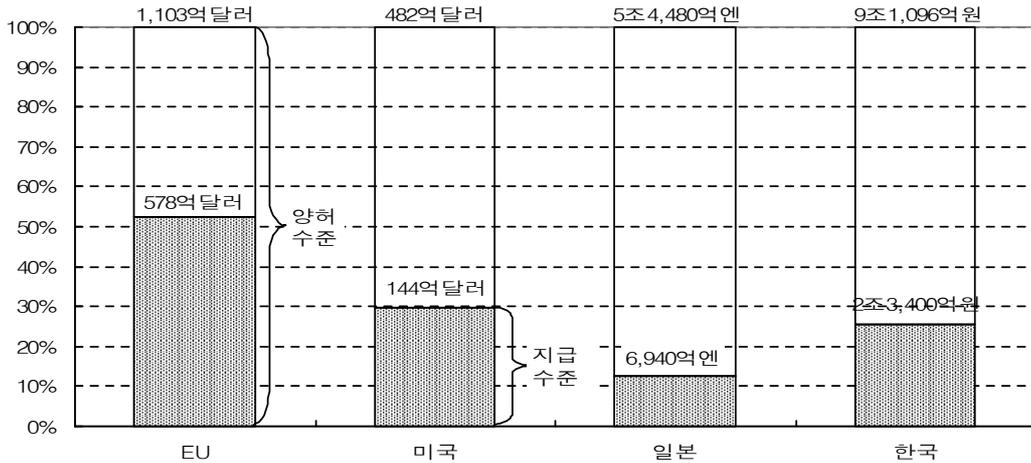
17) 정부의 일반 서비스는 조사연구, 검역 및 방제, 교육훈련, 농업하부구조사업 등과 같은 일반 서비스사업과 공공비축 및 국내식량구호 등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되며,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비연계소득지원과 자연재해구호, 구조조정투자원, 환경보전지원, 휴경지원 등과 같은 정책사업으로 구분됨. 한편 개도국 우대보조란 개도국 특혜에 기초하여 허용된 투입재 보조금을 말함.

- 그러나 일부 허용보조 조치에 대해서는 기준기간, 지불요건 등을 강화함에 따라 정책 운용에 제약을 받게 될 것임.
  - 비연계 소득지불이나 투자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 지불 등에 대한 기준기간이 고정되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생산 여건,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정책 조치가 제약받을 수 있음.
- 쌀에 대해 고정형 직불(허용보조)과 변동형 직불(AMS)이 함께 지급됨에 따라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AMS나 블루박스 관련 규정이 도입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됨.

### 3.2.6.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의 감축

- OTDS의 상위구간 감축률은 75%에 달할 전망이다.
  - 최근 EU는 G6 고위급회의(SOM)에서 기존 제안보다 양보하여 미국의 주장대로 75%까지 감축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함.
  - 미국도 시장접근 개선을 조건으로 기존 53%에서 70%까지 감축할 용의가 있음을 제안함(WTD 2006a).
-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OTDS 양허수준과 지급수준을 비교하면 <그림 2-12>와 같음.
  - OTDS 양허수준 대비 지급수준은 EU가 52%, 미국이 30%, 일본이 13%, 우리나라가 32% 수준이므로 감축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쟁점은 미국이 자국이 제안한 227억 달러(53% 감축 적용)에서 EU와 G20 등이 주장하는 145억 달러(70% 감축률 적용)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임.
  - 미국이 2005년 10월에 제시한 OTDS 감축률 53%는 AMS 60%, 최소 허용보조 50%, 블루박스 50% 감축을 전제한 것임.

그림 2-12. 주요 회원국의 OTDS 현황



주: 1) AMS 양허수준은 EU, 미국, 일본이 2000년, 우리나라가 2004년 기준이며, 지급수준은 EU 2004년, 미국과 일본이 2005년, 우리나라가 2002년 기준임.

2) 최소허용보조와 블루박스는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 모두 1995~2000년 기준이며, 각각의 허용수준은 EU, 미국, 일본이 농업생산액의 5%, 우리나라가 농업생산액의 10% 기준임.

자료: WTO(2005b, 2006d)

- 미국이 OTDS를 70% 감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허용보조 80% 감축(EU의 제안), AMS 추가 감축, 새로운 블루박스에 대한 추가 규율 등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표 2-20>.

표 2-20. 미국의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 시나리오

단위: 백만 달러

개별 보조	현행수준	허용수준	감축률	상한	최종 이행연도	
AMS	12,482	19,103	60%		7,641	
최소허용보조	품목불특정	1,900	9,707	50%	2.5%	4,853
	품목특정	60	9,707	50%	2.5%	4,853
블루박스	-	9,707	50%	2.5%	4,853	
OTDS	14,442	48,224	53%		22,665	
개별 보조 감축의 합					22,202	

주: 1) 현행수준은 2005년 기준임.

2) 양허수준의 경우 AMS는 2000년, 최소허용보조와 블루박스는 1995~2000년 기준임.

자료: 농림부(2006). WTO(2006d)

- 우리나라의 OTDS를 산출하면 <표 2-21>과 같음.
  - OTDS 규모는 1999~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큼.
  - 개도국 가정 아래 OTDS는 9조 7,926억원~9조 1,096억 원이며, 선진국 가정 아래 6조 617억원~6조 4,715억 원임.
  - 선진국 기준일 경우 개도국 기준보다 보조가 60~70% 감소함.

표 2-21.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 총액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1995~2000	1999~2001	1995~2004
2004년 AMS 최종 양허수준(A)		14,900	14,900	14,900
최소허용보조(B)		60,957 (30,478)	66,421 (33,210)	64,037
	품목특정 (농업생산액의 10%)	30,478 (15,239)	33,210 (16,605)	32,019
	품목불특정 (농업생산액의 10%)	30,478 (15,239)	33,210 (16,605)	32,019
블루박스(생산액의 5%)(C)		15,239 (15,239)	16,605 (16,605)	16,009
무역 왜곡보조 총액(A+B+C=D)		91,096 (60,617)	97,926 (64,715)	94,947
무역 왜곡보조 총액 실적치(E)		23,102	21,553	-
D/E(%)		394.3	454.3	-

- 주: 1) 괄호는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 기준인 5%를 적용했을 때의 산출액임.  
 2) 최소 허용보조의 기준은 품목 특정이면 품목별 생산액의 5%(선진국)와 10%(개도국), 품목 불특정이면 전체 농업생산액의 5%(선진국)와 10%(개도국)임.  
 3) 블루박스는 농업생산액의 5%임.  
 4) 무역 왜곡보조 총액의 실적치에서 블루박스는 실적이 없으므로 배제됨

## 4. 협상 중단 의 원인과 시사점

### 4.1. 협상이 중단된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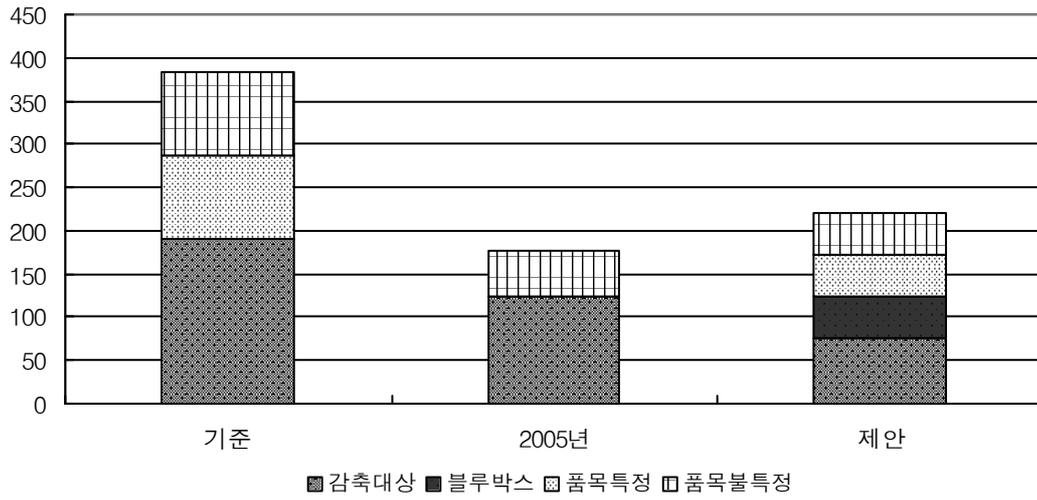
- 2006년 7월 24일 WTO 라미 사무총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G6 회의에서 회원국 사이에 큰 견해차이가 드러나자 협상 중단을 전격 선언함. 이런 협상이 중단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주요 회원국 사이에 주고받기식의 타협이 실패한 것임. 이른바 삼각 문제(triangular issues)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임.<sup>18)</sup> 개도국들을 이끄는 G20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EU가 추가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U는 쇠고기, 가금육, 낙농제품 등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여 관세 감축 수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보임.
- 국내보조 분야에서 G20, EU, 농산물 수출국 등은 미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요구함.<sup>19)</sup> 그러나 미국은 2005년에 집행한 177억 달러보다 많은 220억 달러를 OTDS 상한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보조 감축 의지를 의심케 함 <그림 2-13>.

18) 삼각 문제는 EU의 시장접근, 미국의 국내보조, 개도국의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등 세 분야에서 추가로 양보가 이루어져야 도하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관측에서 비롯됨.

19) 미국의 보조가 수출 덤핑(dumping)으로 이어져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며, 많은 개도국들의 수출과 국내농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이 지적됨(Oxfam 2005). 특히 브라질은 1999~2002년에 미국이 지급한 면화 보조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해 승소했음(WTO 2004, 2005e). 면화 제소는 선진국의 주요 농업보조 수단에 대한 첫 번째 WTO 제소사건으로 주목을 받았음. WTO 평결은 WTO 협상에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농업보조 감축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계기를 마련함.

그림 2-13. 미국의 OTDS 집행액과 감축제안의 비교

단위: 10억 달러



- 개도국들(특히 G33)이 SP와 SSM에서 신축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도 협상 진척을 어렵게 한 원인임. 관세라인의 20%까지 SP를 설정한다, SP에 대한 관세 감축은 최대 10%로 한다는 G33 제안은 선진국들과 수출 개도국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임.
  - 앞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가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개도국 시장에서 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임. 또한 개도국간(South-South) 무역 확대가 개발에 기여할 것이므로 개도국이 무역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됨.
  - 개도국간 무역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2005년에 3%에서 6%로 늘었으며, 연평균 상품무역 성장률은 12.5%로, 선진국간(North-North) 7%와 선진국과 개도국간(North-South) 9.8% 성장률보다 높았음(OECD 2006).
- 그러나 개도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UR) 규정과 이행 결과에 대한 불만 속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형평성 회복,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 등에 협상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반면에 선진국의 농정개혁으로 무역장벽이 줄면 최빈개도국(LDC),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등이 누리던 특혜가 줄어드는 우려도 개도국 사이에서 제기됐음(Alexandraki and Lankes 2004).<sup>20)</sup>
- 둘째, 미국의 정치일정과 국내사정이 협상 진척의 걸림돌로 작용함.
  - 2005년 홍콩 각료회의가 DDA 협상 시한을 2006년 12월로 설정한 것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협상권(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2007년 6월로 끝나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임.<sup>21)</sup>

20) 개도국 특혜감소(preference erosion)에 직면한 품목은 면화, 설탕, 섬유 등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이 거론되고 있음(Lawrence and Rosito 2006).

21) TPA는 정부가 대외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타결안에 대한 가감 없이 그 채택 여부만을 결정하는 조치임.

- 시한 설정은 긴장감을 높여 집중된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함. 그러나 제한된 시간으로 주요 회원국만 참여하는 밀실협상(green room) 위주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개도국들은 이러한 배타적 논의 과정을 비판함(Kwa 2006).
- 무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 TPA 연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나쁜 타협보다 타협하지 않는 편이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는 의회와 농민단체의 요구는 미국의 협상입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미국은 농업보조의 감축이 2007년에 제정될 농업법의 근본적인 수정을 뜻하기 때문에 2006년 11월의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은 큰 폭으로 농업보조를 줄이는데 동의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sup>22)</sup>
- 미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1994~2004년에 212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줄어들음(EC 2006).
  -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의 자리를 1999년부터 EU에 내준 한편, 브라질(콩, 쇠고기, 가금육), 아르헨티나(밀, 쇠고기, 콩), 호주(밀, 쇠고기) 등 수출경쟁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미국을 압박하고 있음.
- 전체 무역수지가 연간 8,00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DDA 협상에서 수출 확대의 교두보 마련은 미국에 중요한 과제임.
  - 협상에서 가장 큰 폭의 시장접근 개선안을 내놓고 타협하지 않는 미국의 행태(maximalist)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22) 미국 농민단체들은 2002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보조수단들을 선호하며, 2007년 농업법에도 같은 조치들이 지속되길 바라고 있음(Young 2005).

## 4.2. 협상 중단 의 시사점

- 회원국들은 협상 중단으로 2006년 12월로 설정된 DDA 타결 시한은 지키지 못하게 됨. 이러한 협상중단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협상 중단은 UR 협정이 연장되거나 계속 적용됨을 의미함.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행 의무는 각각 2000년과 2004년 수준에 고정됨. 그러나 협상이 지연될수록 내재된 감축수준(shadow reduction) 또한 커지게 됨.
- 지금까지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도 회원국들은 이행할 의무가 없음. 예를 들면, 홍콩 각료회의가 확정한 LDC에 대한 선진국의 무관세 및 무쿼터 수입 허용, 2013년까지 농산물 수출보조 폐지 등은 구속력이 없음.
  - UR 때와 마찬가지로 DDA 협상도 일괄타결 방식(single undertaking) 아래 진행되기 때문임. 이에 따라 모든 의제가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님.
  - 협상 중단은 또한 회원국들이 협상 과정에서 내놓은 자국 제안과 양보안을 거둬들인다는 의미임.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각국이 양보한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음.<sup>23)</sup>
- DDA 협상 지연으로 미국의 2007년 농업법 향방이 DDA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됨.
  - 2007년 초반부터 활발하게 논의될 새 농업법이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보조 개혁을 담지 못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짐. 2007년 농업법에서 미국이 보조를 개혁할 것이란 관측은, ① 면화 보조사건에서 WTO 패널(panel)이 미국의 농업보조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결한 점<sup>24)</sup>, ② 농업협정 13조 평화조항(peace clause)이 이미 2003년에 종료되

23) 그러나 신의(good faith)를 감안하면 이미 합의된 사항을 회원국이 번복할 가능성은 낮음.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감축 폭이 더 커지는 것이 보통임.

어 미국을 상대로 보조 관련 제소가 늘 수 있다는 점(Steinberg and Josling 2003),<sup>25)</sup> ③ 예산이 부족하고 농업구조가 변해 농정 수단에 대한 일반인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함.

- 다음으로 미국은 농정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음. DDA 협상에서 모델리티가 제시될 때까지 2002년 농업법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임.
  - 미국의 협상제안이 관철된다면 현재 농정 수단의 유지도 어느 정도 가능함. 이를 위해 융자율(loan rates)과 목표가격(target prices)의 감축, 우유와 설탕에 대한 가격지지 수준 축소, 새로운 블루박스로 CCP 분류 등이 필요함(Westhoff 2005).
- 셋째, 양자 간 무역자유화(Regional Trade Agreements: RTA 또는 Free Trade Agreements: FTA)가 DDA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협상 중단 후 주요 회원국들은 RTA/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는 RTA/FTA가 효율 증대, 무역 확장, 외국의 직접투자(FDI) 유치, 정치적 신뢰구축, 손쉬운 접근성 등의 장점을 지니기 때문임. 2006년 7월 현재 GATT와 WTO에 통보된 RTA/FTA는 각각 50개와 147개로 WTO 출범 이후 빠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외교통상부 2006).
  - 우리나라도 3개국(그룹)과 RTA/FTA를 체결했으며, 2006년 2월부터 미국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음<표 2-22>.

24) 패널은 면화에 대한 가격보조뿐만 아니라, 직접 지불(direct decoupled payments)도 허용보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함. 보조대상 농지에 과일과 채소를 심지 못하도록 제한한 요건 때문임. 패널이 직접 지불 자체를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패널의 해석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제소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음(Inside US Trade 2005).

25) 브라질은 면화보조에 대한 WTO 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면서, 쌀, 콩, 옥수수 보조에 관해서도 제소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Inside US Trade 2006).

- 그러나 RTA/FTA가 DDA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는데, 이는 ① 수출 확대 효과가 양자 간으로 제한되고, ② 선진국에 견주어 협상력이 취약한 개도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③ 보조를 규율하는 효율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임.
- 끝으로, 협상 지연에 따라 우리나라가 고려할 두 가지 사항이 있음. 먼저, 쌀 관세화 유예와 개도국 지위에 관한 사항임.
- 2004년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고, DDA 협상 결과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에 추가 부담 없이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음(정영일 2006).<sup>26)</sup>

표 2-22. 주요국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국가	FTA 체결국	FTA 협상국(공동연구)
미국	칠레, 싱가포르, 중앙아메리카, 호주, 요르단, 바레인, 이스라엘, 모로코, 페루, 오만	우리나라,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파나마,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에콰도르, FTAA(아메리카), 아세안(ASEAN)
EU	ACP	중앙아메리카, Mercosur, Gulf Cooperation Council(GCC)
인도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Mercosur	아세안, GCC, 방글라데시, 모리셔스,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UAE, 아세안, 이집트
중국	태국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칠레, SACU, GCC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우리나라, 태국, 필리핀, 아세안,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EU, Mercosur, 중국

자료: 1)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

2) Mehta et. al(2006)

26) 관세화 유예의 대가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으로 2014년까지 408,700톤(기준 소비량의 7.96%)을 수입하는 것임.

- 문제는 DDA 협상 지연(모델리티 부재)으로 관세 감축률이나 TRQ 증량 수준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도 관세화의 실익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임.<sup>27)</sup> 늘어나는 MMA를 관세화 권한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로 본다면 DDA 협상 지연은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함.
- 개도국 지위 유지는 점진적인 농업개혁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협상 수단일 수 있음.
  - UN의 개도국 정의를 빌려 쓰는 WTO가 스스로 개도국 재분류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모델리티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개도국에 대한 차별된 규율 설정도 예견할 수 있음. 이행계획서(C/S)에 관한 양자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UN이 자기선언 방식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왔더라도 객관적인 경제지표가 감안됨.
  - 예를 들면, UN 경제사회 이사회의 개발정책위원회(ECOSOC/CDP)는 LCD 졸업 기준으로 1인당 GDP, 삶의 질 지수(Augmented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APQLI), 경제취약성 지수(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 등을 사용함(임송수, 김상현 2003).<sup>28)</sup>
-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지표는 개선됨. DDA가 출범한 2001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명목 기준으로 10,160달러였으나, 2005년에는 16,291달러로 세계 29위를 기록함(통계청 2006).

27) 관세화로 전환할 때에 DDA 협상 결과가 반영됨. 먼저, 관세율은 UR 협정에 따라 산출하고, DDA 감축률을 적용함. TRQ는 DDA 협상 결과와 전환 당시 물량 가운데 더 높은 수준을 채택함.

28) APQLI는 어린이 사망률, 칼로리 섭취량, 초중등교육 등록률, 성인 문맹률 등으로 산출됨. EVI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GDP 비중, 공산품 수출집약 지수, 농업생산 불안정지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불안정 지수 등으로 구성됨(UNCTAD 2006).

- 경제지표의 개선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논리 개발에 보탬이 되지 않음. 개도국으로서 경제(GDP) 규모가 큰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과 함께 우리나라도 농정개혁에 대한 더 큰 책임과 의무 분담을 WTO로부터 요구받을 수 있음.<sup>29)</sup>
- 개도국 세분화에 대한 WTO 논의가 없더라도 이미 선진국들은 거대 개도국인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이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29) 2005년에 세계 GDP 순위에서 중국은 6위, 인도 10위, 브라질 11위, 우리나라 12위, 멕시코 13위 등을 기록함(통계청 2006).

## 제 3 장

### 모델리티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 1. 모델리티 분야별 시나리오 분석

##### 1.1. 시장접근 분야

- 미국, EU, G20 등 협상 그룹별 제안을 바탕으로 DDA 협상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해 시나리오를 설정·분석하였음.
- 일반품목의 관세 감축 뿐만 아니라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관세상한의 유무가 우리나라의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임.

##### 1.1.1. 시나리오 설정

- 개도국 가정 아래 일반품목의 시장 개방 폭과 민감품목, 특별품목의 수를 다르게 하여 설정한 시나리오는 <표 3-1>과 같음.
- 일반품목의 관세 감축률은 그룹별 제안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 감축률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상한은 설정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표 3-1. 시나리오 구분: 개도국 가정

협상 그룹	민감품목 수	특별품목 수	시나리오
US	전체 세번의 1.5%	5개 세번	=> 시나리오 1-1-1
		전체 세번의 10%	=> 시나리오 1-1-2
		전체 세번의 20%	=> 시나리오 1-1-3
	전체 세번의 10%	5개 세번	=> 시나리오 1-2-1
		전체 세번의 10%	=> 시나리오 1-2-2
		전체 세번의 20%	=> 시나리오 1-2-3
EU	전체 세번의 6%	5개 세번	=> 시나리오 2-1-1
		전체 세번의 10%	=> 시나리오 2-1-2
		전체 세번의 20%	=> 시나리오 2-1-3
	전체 세번의 10%	5개 세번	=> 시나리오 2-2-1
		전체 세번의 10%	=> 시나리오 2-2-2
		전체 세번의 20%	=> 시나리오 2-2-3
G20	전체 세번의 1.5%	5개 세번	=> 시나리오 3-1-1
		전체 세번의 10%	=> 시나리오 3-1-2
		전체 세번의 20%	=> 시나리오 3-1-3
	전체 세번의 10%	5개 세번	=> 시나리오 3-2-1
		전체 세번의 10%	=> 시나리오 3-2-2
		전체 세번의 20%	=> 시나리오 3-2-3

### 가. 일반품목

- 시나리오는 크게 미국, EU, G20의 개도국 제안을 바탕으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음<표 3-2>.
- 미국은 개도국의 관세구간과 감축률 등 일반품목의 시장 개방 폭과 민감품목의 수 및 대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선진국 제안에 2/3 규칙을 적용하였음.
  - 관세구간 경계는 선진국과 동일한 20/40/60%이며 관세 감축률은 60/70/80/90%의 2/3 수준인 40/47/53/60%임.

- 시나리오 2는 EU가 2005년 10월에 제시한 제안서와 최근 G-6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도국 우대조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은 선진국의 2/3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EU는 당초 2005년 10월 제안에서 구간별 평균 35/45/50/60%의 감축률을 제시하였으나 최근 G-20의 제안 수준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구간별 감축률을 45/50/55/60%로 제안하였음(WTD 2006d).
  - 시나리오 2에서는 EU가 제시한 45/50/55/60%의 2/3 수준인 30/33/37/40%를 적용함.
  
- 시나리오 3은 G20이 2005년 10월에 제시한 제안서와 G-6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관세구간 경계 및 구간별 감축률, 민감품목의 수 등에 대해서는 G20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표 3-2. 시나리오별 관세구간 및 감축률

구 분	관세구간	구간별 관세감축률
시나리오 1-○-○(미국)	1구간: 0~20% 2구간: 20~40% 3구간: 40~60% 4구간: 60% 이상	1구간: 40% 2구간: 47% 3구간: 53% 4구간: 60%
시나리오 2-○-○(EU)	1구간: 0~30% 2구간: 30~80% 3구간: 80~130% 4구간: 130% 이상	1구간: 30% 2구간: 33% 3구간: 37% 4구간: 40%
시나리오 3-○-○(G20)	1구간: 0~30% 2구간: 30~80% 3구간: 80~130% 4구간: 130% 이상	1구간: 25% 2구간: 30% 3구간: 35% 4구간: 40%

## 나. 민감품목 수 및 대우

- 그룹별 제안에 따라 설정된 시나리오는 민감품목의 수를 다르게 하여 세분되었음.
  - 미국, EU, G20의 제안에 따라 민감품목을 각각 전체 세번의 1.5%, 6%를 설정한 시나리오와 G10이 제안하였던 전체 세번의 10%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음.
- 시나리오 ○-1-○는 전체 세번의 1.5%를 민감품목으로 설정함.
  - 미국이 제시한 전체 세번의 1%에 2/3 규칙을 적용하여 1.5%로 민감품목의 수를 설정하였음.
  - G20은 제안서에서 개도국들은 전체 세번의 1.5%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시나리오 ○-2-○는 민감품목의 수를 전체 세번의 6%로 설정함.
  - EU는 본래 전체 세번의 8%까지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4%까지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고, 이에 따라 선진국의 민감품목 수가 전체 세번의 4%라면 개도국은 2/3 규칙이 적용되어 6%까지 민감품목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률에 대해서 협상 그룹별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일반 감축률의 50%로 가정하였음.
  -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 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를 증량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TRQ 증량 결과는 고려하지 않음.

## 다. 특별품목 수 및 대우

- 개도국은 일반품목, 민감품목 뿐만 아니라 특별품목을 지정하여 보다 큰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미국의 제안과 G33의 제안을 바탕으로 각각 특별품목 5개, 전체 세번의 20%, 미국 제안과 G33 제안의

중간선인 전체 세번의 10%를 특별품목으로 선정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표 3-3. 특별품목 시장개방 시나리오

시나리오	특별품목 수	관세감축
시나리오 ○-○-1	5개 세번	일반 관세 감축 폭의 30%
시나리오 ○-○-2	전체 세번의 10%	<p>① 특별품목으로 지정된 세번 중 최소한 50%는 관세 감축 면제. 또한 양허세율이 낮거나, 높은 수준의 한도양허를 하였거나, 해당 국가의 농업 부문에서 매우 취약한 품목이거나 관세구조로 인해 정책적으로 제약을 받는 등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품목인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품목으로 지정된 세번의 15%는 관세 감축을 면제받을 수 있음.</p> <p>② 위의 i)그룹에 속하지 않는 전체 관세라인의 25%는 10%의 관세 감축</p> <p>③ 위의 그룹 i)과 ii)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특별품목들은 15% 이하의 관세 감축률을 적용</p>
시나리오 ○-○-3	전체 세번의 20%	<p>① 특별품목으로 지정된 세번 중 최소한 50%는 관세 감축 면제. 또한 양허세율이 낮거나, 높은 수준의 한도양허를 하였거나, 해당 국가의 농업 부문에서 매우 취약한 품목이거나 관세구조로 인해 정책적으로 제약을 받는 등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품목인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품목으로 지정된 세번의 15%는 관세 감축을 면제받을 수 있음.</p> <p>② 위의 i)그룹에 속하지 않는 전체 관세라인의 25%는 5%의 관세 감축</p> <p>③ 위의 그룹 i)과 ii)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특별품목들은 10% 이하의 관세 감축률을 적용</p>

## 라.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 시나리오 분석 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은 초기 관세율이 해당되는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감축률이 다르므로 어떤 품목을 민감 또는 특별품목으로 선정했는가에 따라 관세율의 평균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짐.
-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은 이재욱(2005), 서진교(2005)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품목들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생산액과 관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품목을 선정하였음.
- 미국의 제안에 따라 민감품목은 전체 세번의 1.5%까지, 특별품목은 다섯 개에서 전체 세번의 20%까지 선정한 시나리오의 특별/민감품목은 아래 <표 3-4>와 같음.

표 3-4. 시나리오 1-1-1 ~ 1-1-3의 특별/민감품목

단위: 개

품목	시나리오 1-1-1		시나리오 1-1-2		시나리오 1-1-3	
	민감	특별	민감	특별	민감	특별
쌀		5		16		16
쇠고기	11			20		20
낙농제품	6			44		44
고추	5			7		7
인삼				31		31
마늘				6		6
감귤				9		9
사과				5		6
양파						4
참깨					4	
콩						5
포도				5		25
돼지고기			22	2		
기타					18	118
합계	22(1.5)	5	22(1.5)	145(10)	22(1.5)	291(20)

주: 괄호는 전체 세번 대비 비중임.

- EU가 제시하였던 시장 개방 폭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는 시나리오에서 선정된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은 아래 <표 3-5>와 같음.
- G20의 제안대로 전체 세번의 1.5%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품목을 다섯 개 세번, 전체 세번의 10%, 전체 세번의 20%까지 설정했을 때의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은 <표 3-6>과 같음.

표 3-5. 시나리오 2-1-1~2-1-3의 특별/민감품목

단위: 개

품목	시나리오 2-1-1		시나리오 2-1-2		시나리오 2-1-3	
	민감	특별	민감	특별	민감	특별
쌀		5		16		16
쇠고기	20			20		20
낙농제품	44			44		44
고추	6			7		7
인삼	4			31		31
마늘	4			6		6
감귤	8			9		9
사과	1			5		5
양파						4
참깨					4	
콩						5
포도				5		5
돼지고기			23	2		25
기타			64		83	114
합계	87(6)	5	87(6)	145(10)	87(6)	291(20)

주: 괄호는 전체 세번 대비 비중임.

- 시나리오 1-2-1부터 시나리오 3-2-3까지는 관세 감축 제안에 상관없이 민감품목을 전체 세번의 10%까지 지정하였으며, 특별품목의 수는 각각 다섯개 세번, 전체 세번의 10%, 전체 세번의 20%임.
- 시나리오 1-2-3, 시나리오 2-2-3, 시나리오 3-2-3은 민감품목이 전체 세번의 10%를 차지하며 특별품목의 수도 전체 세번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민감품목의 신축성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나리오임.

표 3-6. 시나리오 3-1-1~3-1-3의 특별/민감품목

단위: 개

품목	시나리오 3-1-1		시나리오 3-1-2		시나리오 3-1-3	
	민감	특별	민감	특별	민감	특별
쌀		5		16		16
쇠고기	11			20		20
낙농제품	6			44		44
고추	5			7		7
인삼				31		31
마늘				6		6
감귤				9		9
사과				5		6
양파						4
참깨					4	
콩						5
포도				5		25
돼지고기			22	2		
기타					18	118
합계	22(1.5)	5	22(1.5)	145(10)	22(1.5)	291(20)

주: 괄호는 전체 세번 대비 비중임.

표 3-7. 시나리오 1-2-1 ~ 3-2-3의 특별/민감품목

단위: 개

품목	시나리오 1-2-1 시나리오 2-2-1 시나리오 3-2-1		시나리오 1-2-2 시나리오 2-2-2 시나리오 3-2-2		시나리오 1-2-3 시나리오 2-2-3 시나리오 3-2-3	
	민감	특별	민감	특별	민감	특별
쌀	11	5		16		16
쇠고기	20			20		20
낙농제품	44			44		44
고추	7			7		7
인삼	31			31		31
마늘	6			6		6
감귤	9			9		9
사과	5			5		5
양파			4			4
참깨					4	
콩			5			5
포도	5			5		5
돼지고기	7		23	2		25
기타			113		141	114
합계	145(10)	5	145(10)	145(10)	145(10)	291(20)

주: 괄호는 전체 세번 대비 비중임.

## 1.1.2. 시나리오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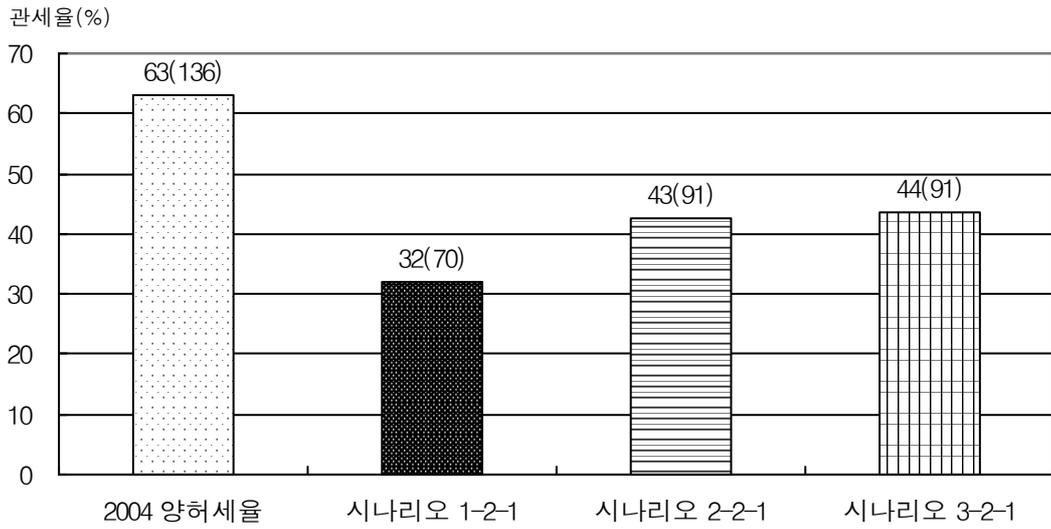
### 가. 관세 감축률의 파급 효과

- 그룹별 감축 제안이 우리나라의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민감품목의 수가 전체 세번의 10%이고 특별품목의 수가 전체 세번의 다섯 개인 시나리오의 결과를 살펴보았음.
- 미국, EU, G20의 제안 중 관세 감축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제안임.
  - 미국의 제안에 따라 감축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2004년 평균 양허세율의 절반 수준인 32%로 감축됨.
  - EU와 G20의 제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했을 때에는 평균 관세율이 2004년 평균 관세율의 2/3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
- 미국 제안과 EU 및 G20 제안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미국 제안에 따른 경우의 평균 관세율에 비해 EU, G20의 제안에 따른 감축 후 평균 관세율은 11~1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기 전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의 표준편차는 136이었으나 관세를 감축한 뒤에는 표준편차가 급격히 감소함.
  - 미국의 제안에 따라 감축할 때에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감소함.
  - 이는 구간을 나누어 높은 구간에 해당되는 품목에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기 때문임.

### 나. 민감품목 수 확대의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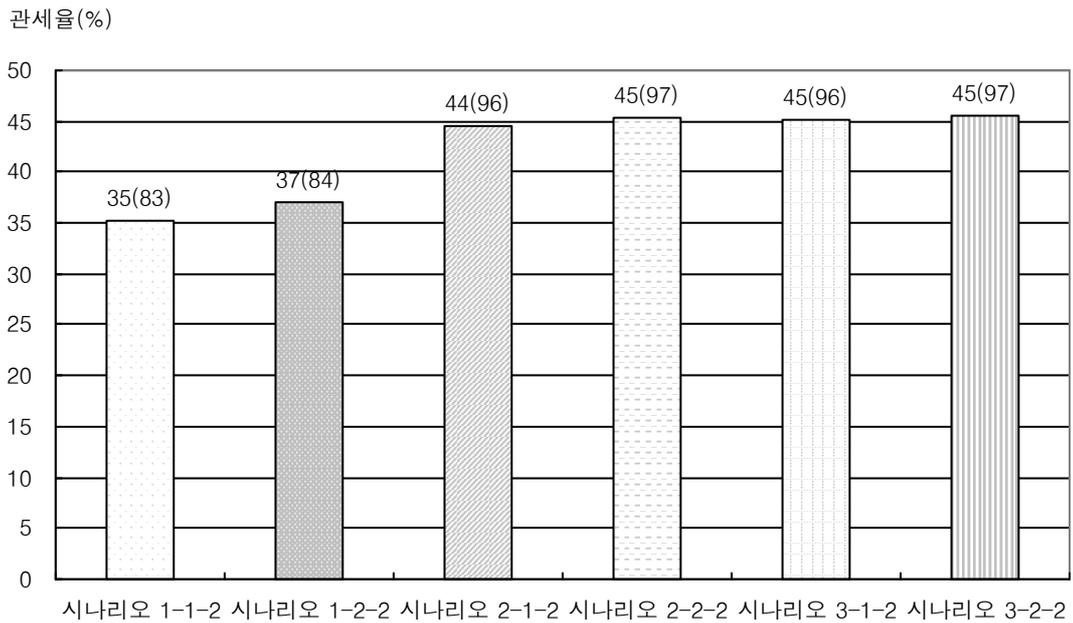
- 민감품목의 수가 우리나라의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민감품목이 전체 세번의 1.5% 또는 6%와 전체 세번의 10%인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였음.
  - 단 특별품목의 수는 전체 세번의 10%로 일정함.

그림 3-1. 관세 감축률 변화에 따른 관세구조 변화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평균 관세율은 쌀을 제외한 수치임.

그림 3-2. 민감품목의 수 변화에 따른 관세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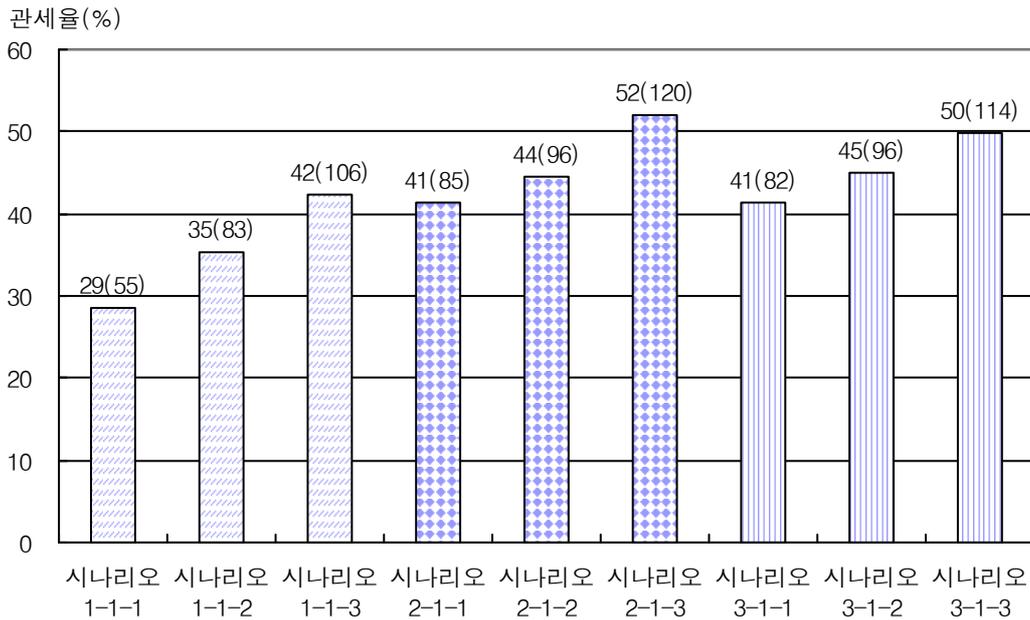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평균 관세율은 쌀을 제외한 수치임.

- 그림 3-2에서 시나리오 1-1-2와 1-2-2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고 민감품목을 각각 전체 세번의 1.5%와 10%로 설정했을 때의 평균 관세율임.
- 시나리오 2-1-2와 2-2-2는 EU의 제안을 기준으로 관세 감축률이 적용되었으며, 민감품목의 수는 전체 세번의 6%, 10%인 경우를 나타냄.
- 시나리오 3-1-2와 3-2-2는 G20의 제안을 기초로, 민감품목이 전체 세번의 1.5%와 10%인 경우임.
-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일반품목의 관세 감축률이 같다면 민감품목의 수를 확대하더라도 평균 관세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할 경우 민감품목을 전체 세번의 10%까지 확대하더라도 평균 관세율은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침.
- 민감품목의 수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을 줄이는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반 감축률이나 특별품목 등 다른 요소에 비해 파급 효과가 약한 것으로 판단됨.

#### 다. 특별품목 수 확대의 파급효과

- 특별품목의 수가 우리나라의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품목의 감축률과 민감품목의 수를 고정시켰을 때 특별품목의 수를 각각 다섯 개 세번, 전체 세번의 10%, 전체 세번의 20%인 경우로 나누어 비교하였음.
- 관세 감축 결과, 미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했을 때 특별품목의 수가 증가할 때마다 평균 관세율은 29%에서 35%, 35%에서 4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6~7%포인트 상승).

그림 3-3. 특별품목의 수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평균 관세율은 쌀을 제외한 수치임.

- EU의 제안에 따를 때에도 특별품목의 수가 증가하면 평균 관세율은 44%에서 52%까지 8% 포인트 상승하였음.
- G20의 제안에 따라 관세 감축을 할 경우에도 특별품목의 수가 전체 세번의 20%까지 늘어나면 평균 관세율은 최대 9%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감품목의 수 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서 특별품목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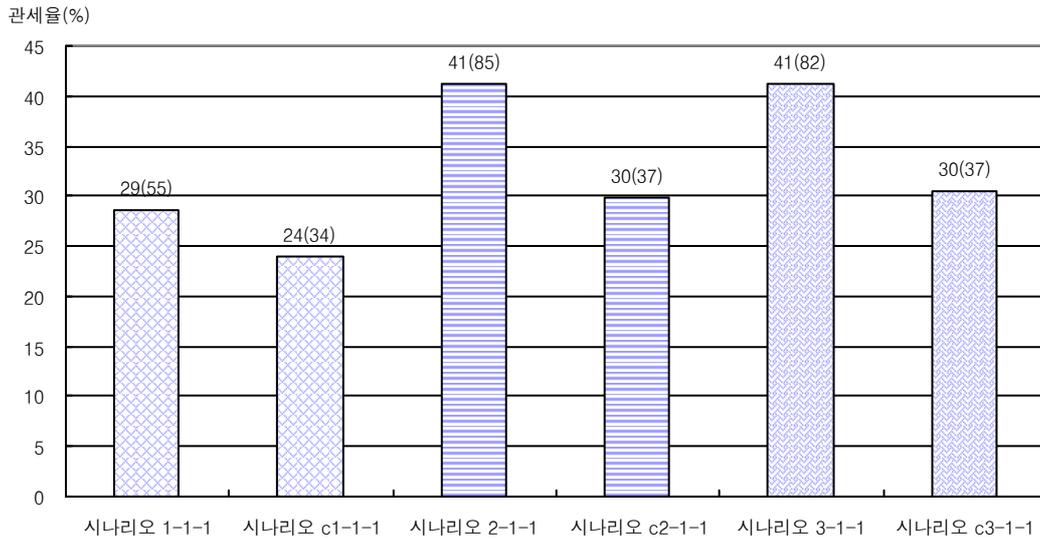
#### 라. 관세상한의 파급 효과

- 관세상한은 관세를 감축하고도 여전히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출국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
  - G10, ACP 국가들은 관세상한의 설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수출

국들의 입장이 강경하여 관세상한의 설정을 완전히 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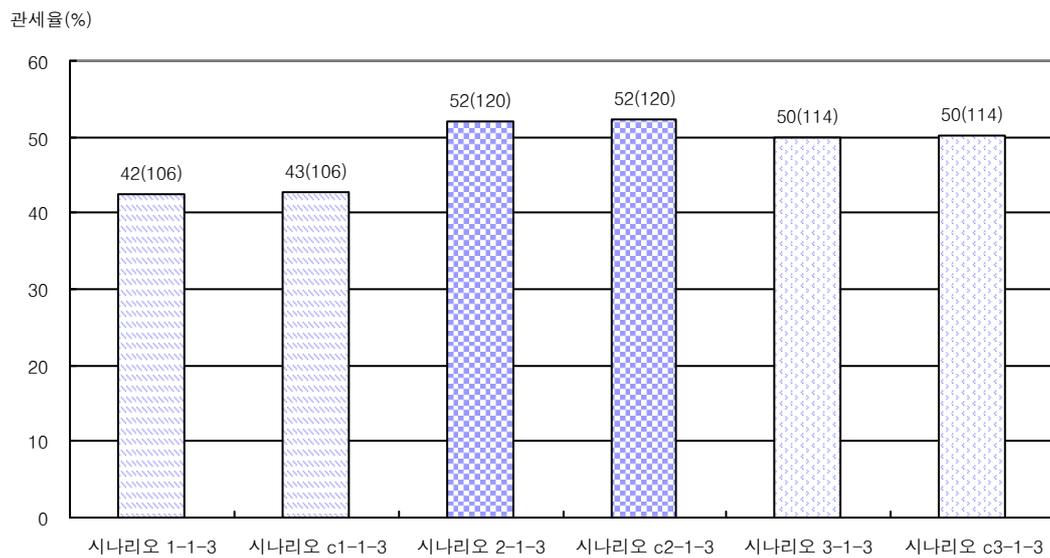
- 개도국 우대 조치의 일환인 특별품목에는 관세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지금까지는 관세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관세 감축률 및 민감품목, 특별품목의 설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협상 동향을 감안하여 관세상한이 설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구조 변화를 살펴보았음.
  - 관세상한은 EU, G20이 제시하였던 150%로 설정하였으며,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시나리오 c1-1-1, 시나리오 c2-1-1, 시나리오 c3-1-1은 특별품목의 수를 다섯 개로 제한했을 때 150%의 관세상한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시나리오임.
  - 관세 감축 결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관세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 5~11% 포인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4>.
  - 미국의 제안은 관세 감축률이 이미 높기 때문에 관세상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시나리오 c1-1-3, 시나리오 c2-1-3, 시나리오 c3-1-3은 특별품목이 전체 세번의 20%인 경우를 가정한 것임.
  - 특별품목의 수를 전체 세번의 20%까지 확대한다면 관세상한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5>.
- 따라서 관세상한이 적용될 때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특별품목의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관세상한이 설정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고율 관세 품목을 최대한 특별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상한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3-4. 관세상한의 설정에 따른 파급 효과: 특별품목 5개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평균 관세율은 쌀을 제외한 수치임.

그림 3-5. 관세상한의 설정에 따른 파급 효과: 특별품목 20%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평균 관세율은 쌀을 제외한 수치임.

- DDA 협상에서 관세상한이 불가피하게 설정되더라도 최소한 특별품목에 관세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특별품목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협상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 이 연구는 시나리오별 관세 감축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그룹별 관세 감축 제안과 민감품목, 특별품목의 수, 관세상한의 역할 등을 평가하였음.
  -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TRQ증량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파급 효과를 종합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1.2. 국내보조 분야

### 1.2.1. 시나리오 설정

- 국내보조 감축 시나리오는 시장접근 분야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모델리티가 없기 때문에 DDA 농업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회원국과 그룹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설정함<표 3-8>.

표 3-8. 국내보조 분야의 시나리오 설정

구분	개도국			선진국		
	시나리오 I (미국제안)	시나리오 II (EU제안)	시나리오 III (G20제안)	시나리오 I (미국제안)	시나리오 II (EU제안)	시나리오 III (G20제안)
AMS	25%	33%	40%	37%	50%	60%
DM	7%	5%	5%	2.5%	1%	1%
BB	2.5%	2.5%	2.5%	2.5%	2.5%	2.5%
OTDS	20%	33%	47%	31%	5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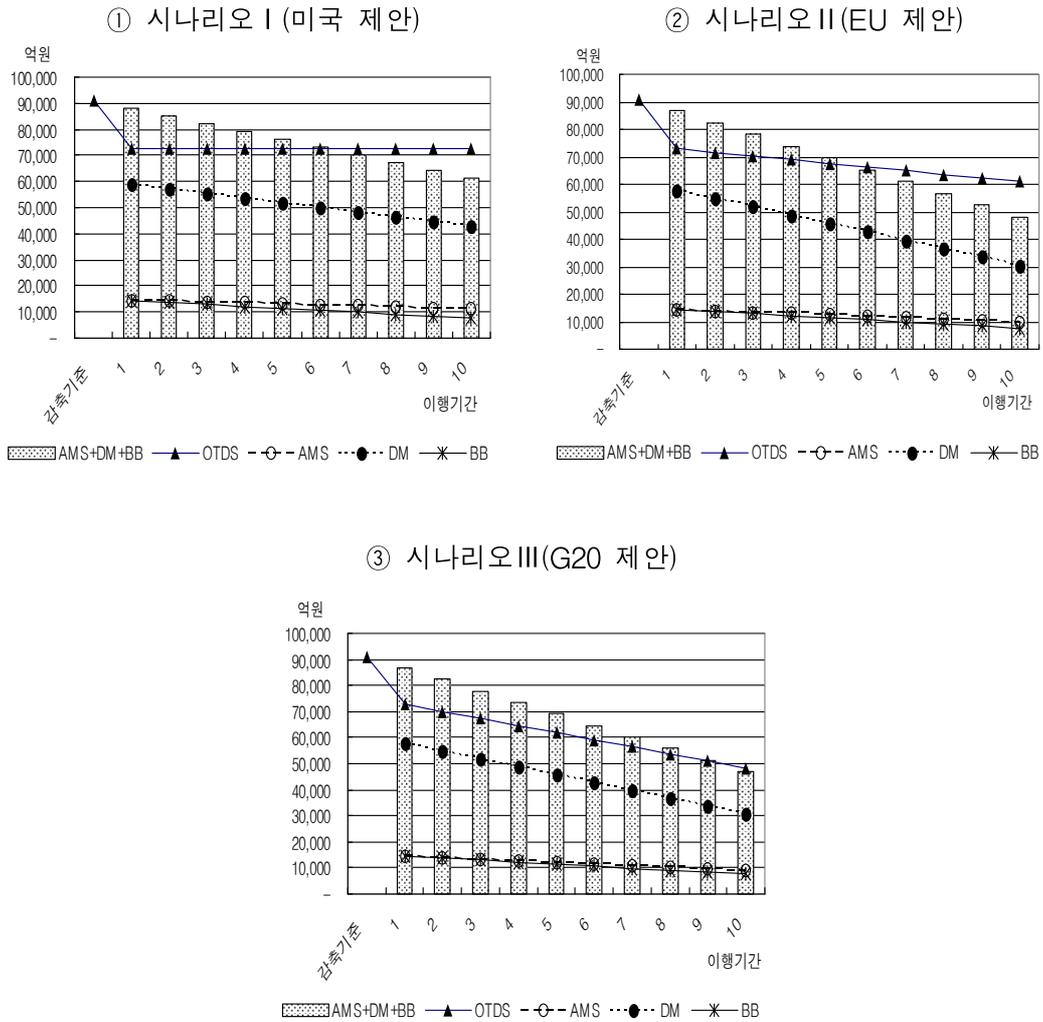
- 시나리오는 개도국과 선진국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미국, EU, G20 제안서를 바탕으로 각각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함.
  - 국내보조의 산출 기준 연도는 UR 이행 기간인 1995~2000년, 1995~2004년과 1999~2001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이행 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으로 설정함.
- 선진국 시나리오인 경우 AMS와 OTDS 감축률은 하위 구간의 감축률을 적용함.
  - 개도국 시나리오인 경우, 개도국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률이 따로 제시된 바 없지만, 선진국의 하위구간 감축률의 2/3 수준을 적용함.
- 최소허용보조는 선진국 시나리오인 경우 50~80%의 감축률을 적용하여 농업생산액 대비 10%가 이행 기간 1~2.5%로 감축되는 것으로 설정함.
  - 개도국 시나리오인 경우 선진국 시나리오 감축률의 2/3 수준을 감안하여 30~50%의 감축률을 적용하여 농업생산액의 10%가 5~7%로 감축되는 것으로 설정함.
- 블루박스의 한도는 농업생산액의 5%에서 이행 기간 2.5%로 낮아지는 것으로 설정하며,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시나리오에 동일하게 적용함.
- 무역 왜곡보조 총액은 기본 골격에서 이행 첫째 20% 감축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이를 시나리오에 적용함.

#### 가. 1995~2000년 기준 시나리오 분석결과

- 개도국 시나리오 아래 OTDS의 감축 기준은 9조 1,096억 원에 달함.<sup>30)</sup>
  - 이는 AMS 양허수준 1조 4,900억 원, 최소 허용보조 6조 957억 원, 블루박스 1조 5,239억 원 등의 총액임<그림 3-6>.

30) 자세한 기준 연도 별 감축 기준은 제2장 참조할 것.

그림 3-6. 개도국 시나리오 분석 결과: 1995~200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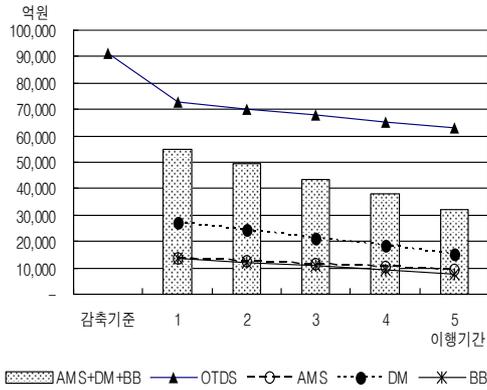


-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OTDS는 최종 이행연도 말에 4조 8,281억 원~7조 2,877억 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개별보조의 감축 후 합계는 4조 8,081억 원~6조 1,464억 원으로 감소함.
- 최종 이행연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OTDS가 개별보조들의 합계보다 크기 때문에 OTDS는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활용 가능한 보조 규모는 감축 후의 개별보조들에 의해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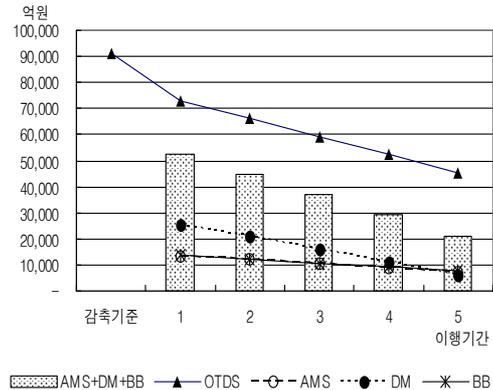
- OTDS와 개별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의 크기는 이행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조조치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음.
- 미국 제안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I의 경우, 이행연도 6년차까지 OTDS가 개별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보다 작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개별보조들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부담이 생김.
- EU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II의 경우는 5년차까지, G20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III의 경우는 9년차까지 OTDS가 개별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보다 작게 나타나므로 이 이행 기간에 개별보조들을 추가 감축해야 함.
- 개도국 시나리오별로 나타나는 이행연도 말의 개별보조 합계의 감축효과는 시나리오 I이 33%, 시나리오 II가 47%, 시나리오 III가 48%에 달함.
  - G20의 제안이 가장 큰 감축효과를 가지지만, EU의 제안과의 차이는 1%(1,043억 원)에 불과함.
- 개도국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보조를 감축할 경우 이행 기간 OTDS는 개별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보조조치를 운영하는데 OTDS가 구속력을 가지게 됨.
  - 즉 이 기간에 활용 가능한 보조 규모는 OTDS로 제약됨.
- 선진국 시나리오의 경우 OTDS의 감축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 시나리오와 같은 9조 1,096억 원으로 설정함<그림 3-7>
- 선진국 시나리오의 경우 큰 폭의 국내보조 감축이 예상됨. 최종 이행연도 말 OTDS는 2조 7,329억 원~6조 2,856억 원으로 개도국 시나리오의 결과보다 최대 267%(4조 5,548억 원)의 차이가 남.

그림 3-7. 선진국 시나리오 분석 결과: 1995~200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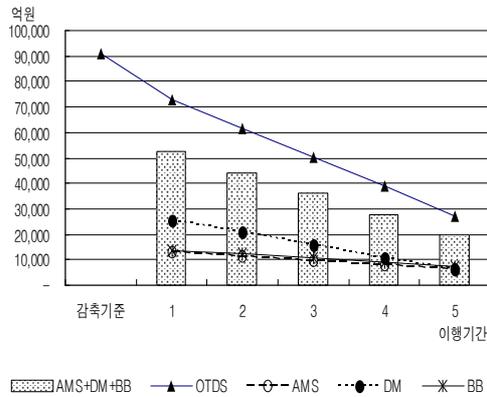
① 시나리오 I (미국 제안)



② 시나리오 II (EU 제안)



③ 시나리오 III (G20 제안)



- 개별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는 1조 9,675억 원~3조 2,246억 원으로 개도국 시나리오의 결과보다 최대 312%(4조 1,798억 원)의 차이가 발생함.
- 개별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는 전체 이행 기간 OTDS보다 작기 때문에 개도국 시나리오와는 달리 OTDS는 구속력이 없음.
- 결국 이행 기간 활용 가능한 보조 규모는 개별보조들의 합계로 제약됨.

- 선진국 시나리오의 이행연도 말 개별보조 합계의 감축효과는 개도국 시나리오와 같이 G20의 제안이 가장 큰 폭으로 국내보조를 감축함.
- 개별보조 합계의 감축 효과는 시나리오 I 이 65%, 시나리오Ⅱ가 77%, 시나리오Ⅲ이 78%에 달함.

#### 나. 기준 연도 변경 시나리오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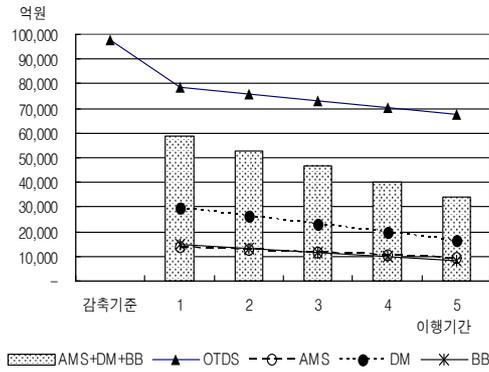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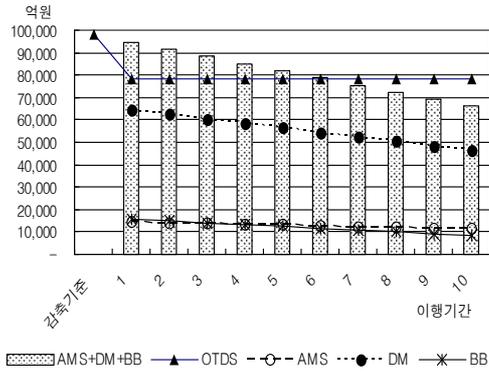
- 무역 왜곡보조 총액을 비롯하여 개별보조들의 산출을 위한 기준 연도는 1995~2000년 이외에 1999~2001년과 1995~2004년이 제시되고 있음.
  - 기준 연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1995~2000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시나리오의 결과와 감축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고 보조 규모상의 차이가 발생함.
- 기준연도 및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는 <그림 3-8>, <그림 3-9>와 같음.
- OTDS 감축 기준은 농업생산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준 연도에 따라 다르게 산출됨. 1999~2001년 기준일 경우 다른 기준 연도에 비해 가장 크며, 9조 7,926억 원에 달함<그림 3-8>.
- 기준 연도가 1991~2001년일 경우, 이행첫해 OTDS의 규모는 개도국과 선진국 시나리오 모두 감축 기준액의 20%가 삭감된 7조 8,341억 원에 달함.
  - 개도국 시나리오의 경우, 최종 이행연도 말에 OTDS는 5조 1,901억 원~7조 8,341억 원으로 감소함. 한편, 개별보조의 감축 후 합계는 5조 1,496억 원~6조 5,972억 원으로 줄어듦.
  - 선진국 시나리오의 경우, 최종 이행연도 말 OTDS는 2조 9,378억 원~6조 7,569억 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개별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는 2조 2,395억 원~3조 4,295억 원으로 감소하여 큰 폭의 감축이 예상됨.
- 개도국과 선진국 시나리오 모두, 경우 최종 이행연도 말 OTDS가 개별보조의 합계보다 크기 때문에 개별보조들은 추가 감축의 부담이 없음.

그림 3-8. 1999~2001년 기준 시나리오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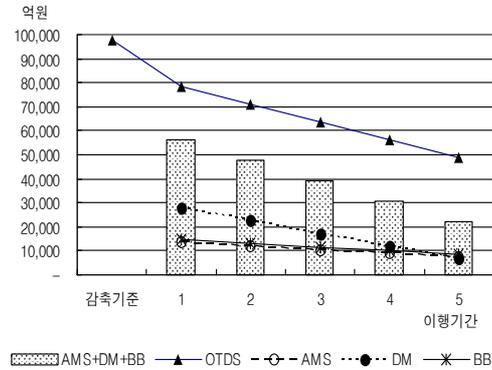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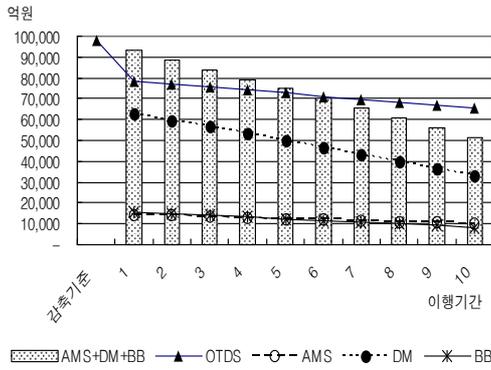
<개도국 시나리오>

<선진국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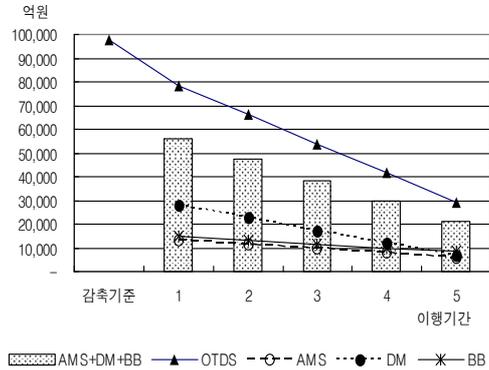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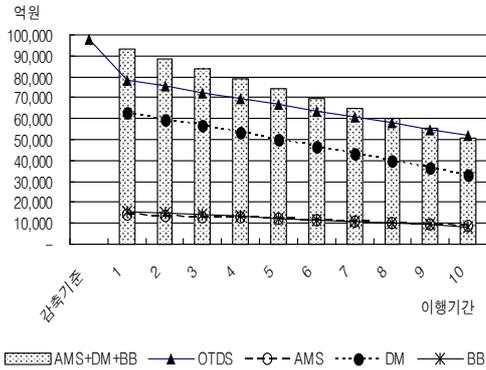
① 시나리오 I (미국 제안)



② 시나리오 II (EU 제안)



③ 시나리오 III (G20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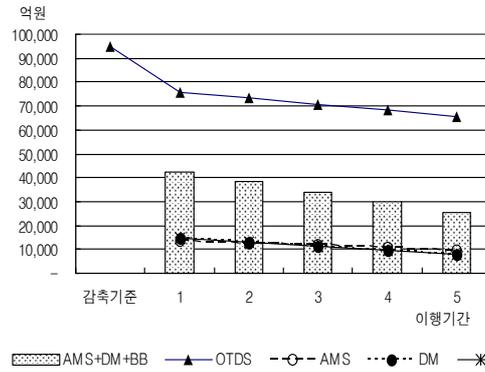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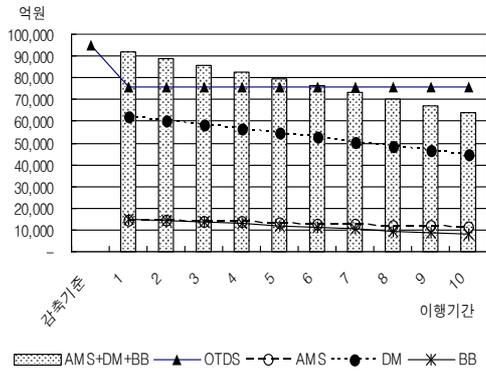
- 따라서 이행연도 말 이후 활용 가능한 보조 규모는 감축 후의 개별보조들의 수준으로 제약됨.
- 이행 기간 중 OTDS가 개별보조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개별보조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함. 즉, 이 기간의 활용 가능한 보조 규모는 OTDS 수준으로 제약됨.
  -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시나리오 I 은 이행연도 6년 차, 시나리오 II는 5년 차, 시나리오III은 9년차까지 OTDS가 개별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보다 작기 때문에 개별보조들에 대한 추가 감축 부담이 생김.
  - 따라서 이 이행 기간 활용 가능한 보조 규모는 OTDS 수준이 됨.
- 기준 연도가 1995~2004년 기준일 경우, OTDS의 감축 기준은 두 번째로 큰 9조 4,947억 원에 달함<그림 3-9>.
- OTDS와 개별보조의 감축 후 합계의 비교는 앞에서 살펴본 1999~2001년 기준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와 비슷한 추세를 보임.
  - 이행 첫해 OTDS는 최종 이행연도 말에 개도국(선진국) 시나리오의 경우 5조 322억 원(2조 8,484억 원)~7조 5,957억 원(6조 5,513억 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개별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는 4조 8,963억 원(17167억 원)~6조 4006억 원(2조 5,396억 원)으로 감소함.
  - 최종 이행연도 말 활용 가능한 보조조치의 규모는 감축 후 개별보조에 의해서 결정됨.
-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이행 기간 보조조치의 활용 가능한 규모는 시나리오 I 은 이행연도 6년 차, 시나리오II는 5년 차, 시나리오III은 9년차까지 OTDS에 의해서 결정됨.
  - 반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이행 기간 OTDS는 개별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이행 기간 활용 가능한 보조규모는 개별보조들의 감축률에 제약을 받음.

그림 3-9. 1995~2004년 기준 시나리오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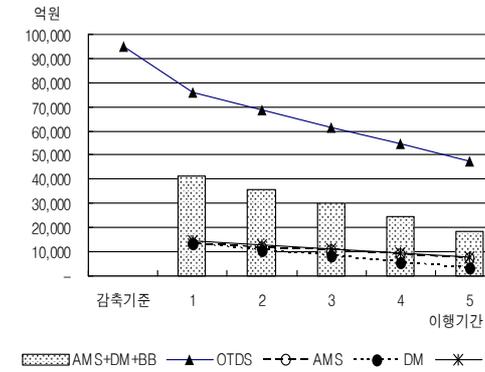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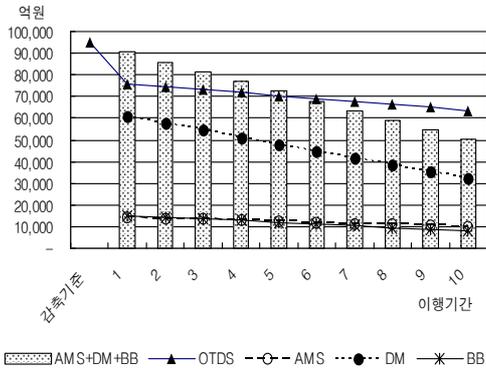
<개도국 시나리오>

<선진국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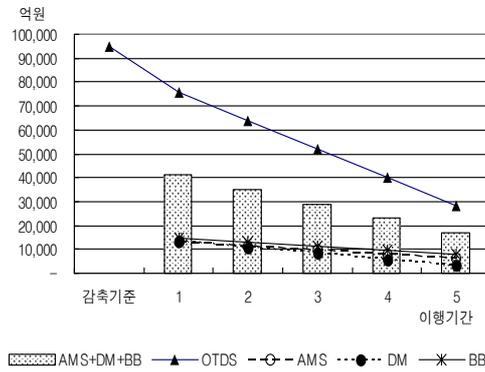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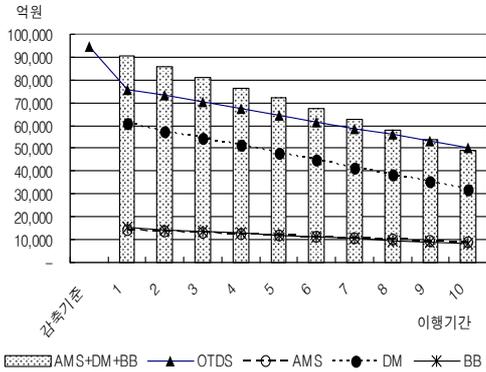
① 시나리오 I (미국 제안)



② 시나리오 II (EU 제안)



③ 시나리오 III (G20 제안)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기준 연도를 적용할 수 있는 신축성을 확보하면서 개도국 지위 유지에 전념해야 할 것임.
  - 또한 1995~2000년과 1995~2004년 이외에 보조의 규모가 가장 큰 1999~2001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 시장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협상 논의 동향을 기초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모델리티 협상 결과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농업총소득, 총 재배면적 등 거시적인 변수는 총량 모형인 KREI-ASM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품목별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부분균형 모형 결과를 기초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음.

### 2.1. KREI-ASMO를 활용한 분석

#### 2.1.1. 시나리오 설정, 추정방법

- 기준 시나리오(baseline)를 설정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함.
  - 기준시나리오는 관세율과 TRQ 등의 2004년 시장개방 조건이 지속된다고 가정함.
- 시나리오 설정은 <표 3-9>과 같음.
  - 관세 감축률, TRQ 증량, 관세상한 등은 G20의 제안을 근거로 함.
  - 쌀은 관세화 유예 조치에 따라 MMA 물량을 2005~2014년에 22

5,575~408,700톤으로 균등 증량하며, 밥쌀용 물량은 2005~2010년에 10~30%로 증량하여 2010년 후 30%로 유지함.

- 사과, 배, 감귤 등의 과일은 현재 식물 검역상 수입 금지 품목이지만, 2012년 후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함.
- 이행 기간은 개도국 10년(2009~2018년), 선진국 5년(2009~2013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선진국은 2014년부터 기존 시장개방 폭을 유지함.

표 3-9. 선진국, 개도국 시나리오 설정

시장 개방폭	선진국	개도국 I	개도국 II
<b>일반품목</b>			
관세구간	20/50/75%	30/80/130%	30/80/130%
관세감축	45/55/65/75%	25/30/35/40%	25/30/35/40%
관세상한	100%	150%	150%
<b>민감품목</b>			
TRQ 품목	고추, 마늘, 유제품, 감귤	마늘, 감귤, 사과, 포도	고추, 마늘, 유제품, 감귤, 쇠고기, 사과, 포도
관세감축	일반감축률의 70%	50%	50%
관세상한	100% (쌀은 2015년 이후 적용)	150%	150%
TRQ 증량	2002~04년 평균 소비량의 6% (쌀은 2014년까지 408,000톤 증량 이후 유지)	4% 증량 및 신설	4% 증량 및 신설
<b>특별품목</b>	-	쌀, 고추, 쇠고기, 유제품	쌀
관세감축	-	10%(쌀 제외)	제외
TRQ 증량	-	증량없음	증량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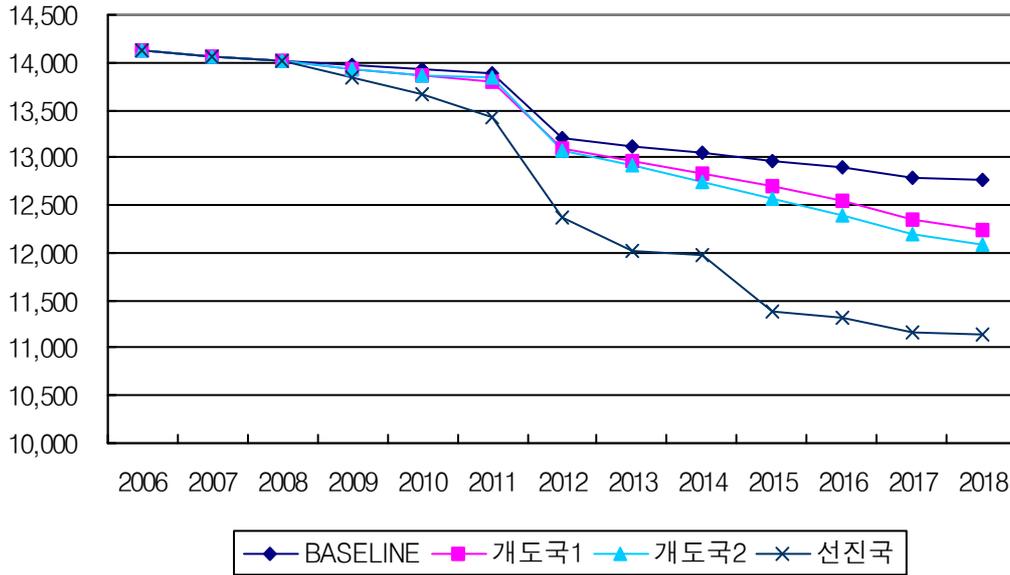
## 2.1.2. 모형 추정 결과

### 가. 농업소득(명목가격 기준) 전망

- 기준 시나리오 아래 농업소득은 논 농업 직불을 포함하여 12조 7,650억 원으로 연평균 0.9% 감소함<그림 3-10>.
  - 선진국 시나리오 아래 농업소득은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1조 6,230억 원이 적은 11조 1,420억 원으로 연평균 2.3% 감소함.
  - 개도국 시나리오 아래 농업소득은 12조 808억 원~12조 2,490억 원으로 연평균 1.34%~1.48% 감소함.
  
- 직불금을 제외했을 때 기준 시나리오하에서 농업총소득은 10조 4,557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도국 시나리오하에서는 2018년 농업총소득이 약 9조 원이 되고, 선진국 시나리오하에서는 농업총소득이 급격히 하락하여 2018년 6조 2,514억 원이 되는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제외했을 때의 농업총소득은 직불금을 포함했을 때에 비해 2,309억 원~4,891억 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직불금을 제외했을 때의 농업총소득 연평균 감소율은 1.6~6.5%로서 직불금을 포함했을 때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직불금이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10. 시나리오별 농업소득 전망(직불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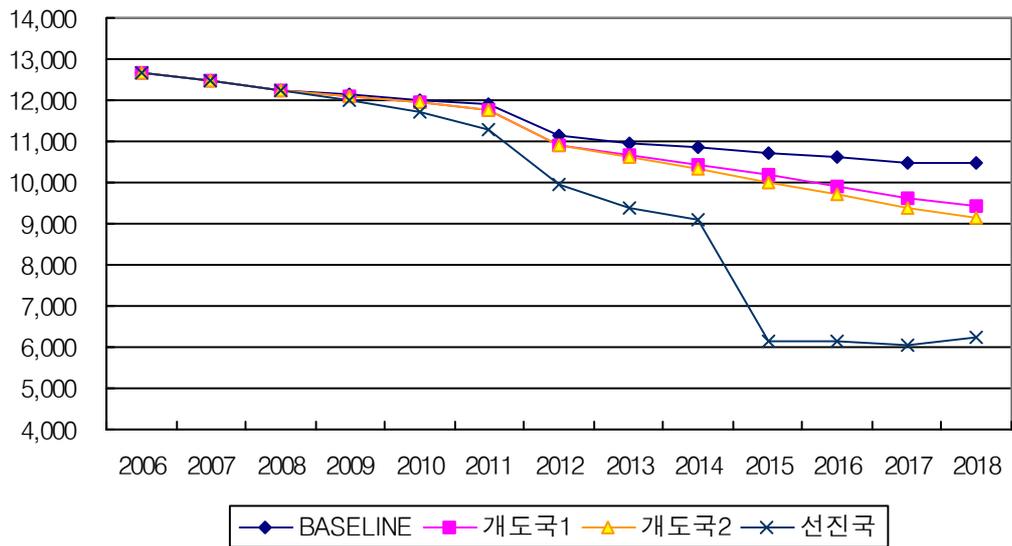
단위: 10억원



자료: KREI-ASMO

그림 3-11. 시나리오별 농업소득 전망(직불금 제외)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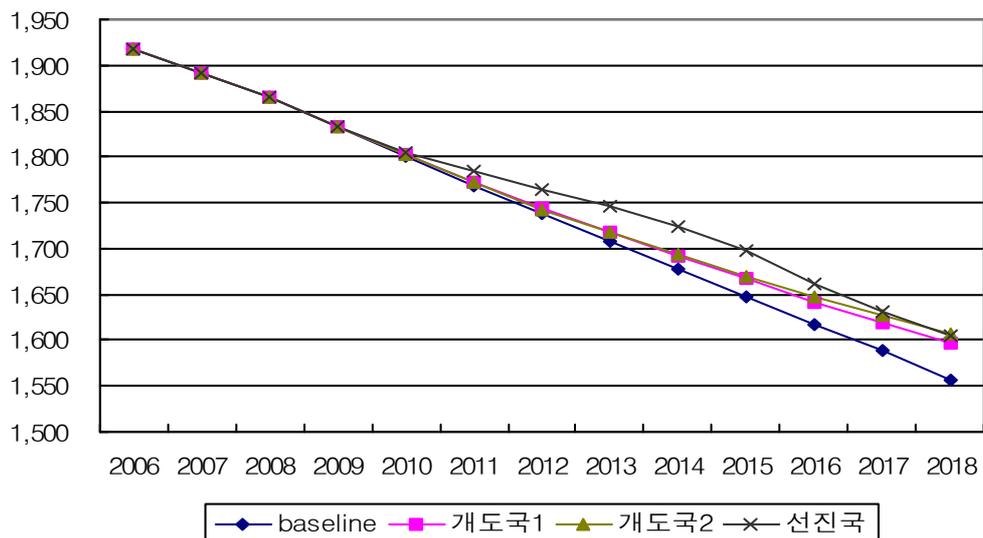
자료: KREI-ASMO

## 나. 총 재배면적 전망

-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재배면적은 2006년 120만 ha에서 연평균 1.7%씩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156만 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 및 개도국 시나리오에 따라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될 때에는 총 재배면적이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을 기준으로 기준 시나리오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개도국 1 시나리오의 경우 재배면적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3만 9,457ha 더 많으며, 개도국 2 시나리오의 경우 4만 8,955ha, 선진국 시나리오 경우는 4만 7,557ha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개도국 1 시나리오의 경우 연평균 감소율은 1.6%이며, 개도국 2는 1.5%, 선진국은 1.5%임.

그림 3-12. 시나리오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ha



## 2.2. 부분균형 모형을 활용한 분석

### 2.2.1. 모형의 설정, 자료, 추정 방법

- 모형 설정을 위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음.
  - 관세 감축률은 G20 제안을 근거로 함.
  - 관세율만 변하고 다른 변수들은 일정함.
- 모형은 김윤식(2006)에 근거함<부록 1>.
- 분석 대상 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딸기, 토마토, 감귤,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인삼, 땅콩,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콩, 감자, 보리, 팥, 밤 등 21개 품목임.
  - 쌀은 관세화 유예 대상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빠졌고, 낙농제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품목 사이에 관세율 차이도 커 분석에서 제외함. 그 밖의 품목들은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주된 관심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됨.
- 관세 감축은 ① 일반품목 가정 아래 관세상한 적용, ② 민감품목 가정 아래 관세상한 적용, ③ 민감품목 가정 아래 관세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등으로 나눠 분석함<표 3-10>.
- 모형 분석에 사용된 품목별 교차탄성치, 공급탄성치, 수요탄성치는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되, 선행 연구가 없는 경우엔 적절한 범위로 가정함<표 3-11>.
- 탄성치 값인 ‘최저’, ‘평균’, ‘최고’를 삼각형(triangle) 확률분포로 가정한 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방법을 적용해 모형을 추정함.
  - 시뮬레이션은 MS 엑셀(Excel) 환경에서 10,000회 반복하도록 설정함.

표 3-10. 관세 감축률 가정

품 목	양허 관세 (%)	감축 후 관세(%)					
		개도국			선진국		
		일반품목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일반감축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고추	270	150	150	216	68	100	128
마늘	360	150	150	288	90	100	171
양파	135	81	108	108	34	64	64
딸기	45	32	36	36	20	28	28
토마토	45	32	36	36	20	28	28
감귤	144	86	115	115	36	68	68
사과	45	32	36	36	20	28	28
포도	45	32	36	36	20	28	28
배	45	32	36	36	20	28	28
복숭아	45	32	36	36	20	28	28
인삼	754	150	150	603	189	100	358
땅콩	231	138	150	184	58	100	109
참깨	630	150	150	504	158	100	299
쇠고기	40	28	32	32	18	25	25
돼지고기	25	19	20	20	11	15	15
닭고기	20	15	16	16	9	12	12
콩	487	150	150	390	122	100	231
감자	304	150	150	243	76	100	144
보리	324	150	150	259	81	100	154
팥	421	150	150	337	105	100	200
밤	270	132	150	176	68	100	128

주:1) 관세상한은 선진국 100%, 개도국 150%로 가정함.

2) 관세율은 주로 신선 품목 기준임.

표 3-11. 모형에 사용된 탄성치

품목	교차탄성치			공급탄성치			수요탄성치		
	최저	중간	최고	최저	중간	최고	최저	중간	최고
고추	0.1	0.15	0.2	0.31	0.39	0.64	0.08	0.17	0.22
마늘	0.25	0.30	0.35	0.12	0.35	0.73	0.16	0.26	0.30
양파	0.25	0.30	0.35	0.28	0.51	0.72	0.44	0.45	0.46
딸기	0.05	0.10	0.15		0.44			0.14	
토마토	0.1	0.15	0.2		0.56			0.18	
감귤	0.25	0.3	0.35	0.08	0.7	1.3	0.75	0.90	1.06
사과	0.2	0.3	0.4	0.08	0.7	1.3	0.25	0.35	0.45
포도	0.15	0.2	0.25	0.06	1.13	2.2	0.15	0.45	0.64
배	0.1	0.2	0.3	0.08	0.8	1.4	0.32	0.76	0.56
복숭아	0.1	0.2	0.3	0.7	1	1.3	0.3	0.4	0.5
인삼	0.1	0.15	0.2		1.02			0.72	
망콩	0.1	0.15	0.2		0.44			0.13	
참깨	0.1	0.2	0.3	0.21	0.31	0.4		0.3	
쇠고기	0.4	0.5	0.6	0.50	0.91	1.25	0.67	0.83	0.97
돼지고기	0.1	0.2	0.3		0.28		0.35	0.37	0.38
닭고기	0.1	0.2	0.3	0.2	0.3	0.4	0.29	0.35	0.41
대두	0.1	0.2	0.3		0.44			0.35	
감자	0.1	0.2	0.3		0.32			0.35	
보리	0.1	0.2	0.3		1.39			0.30	
팥	0.1	0.2	0.3		0.18			0.35	
밤	0.3	0.5	0.7		0.33			0.86	

주: 1) '최저', '중간', '최고'는 선행 연구가 제시한 탄성치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 것임.

2) 선행 연구가 하나이면 '중간'에 포함시켰고, 선행 연구가 없을 때(특히 교차탄성치)에는 일정한 범위(주로 탄성치 크기 0.1만큼)로 가정함.

자료: <부록 2> 참조

## 2.2.2. 모형 추정 결과

### 가. 선진국

#### ① 일반품목

- G20이 제시한 일반품목 관세 감축 제안에 따라 품목별 생산액 감소 규모를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3-12>와 같음.<sup>31)</sup>
  - 선진국의 관세구간과 감축률을 적용하고 100%의 관세상한을 부과한 시나리오임.
- 95% 신뢰구간에서 21개 품목의 농업 총생산액은 1조 484억원~1조 8,70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2003~05년 농업생산액(기준)에서 7.5~13.3% 감소된 결과임.
- 절대액을 기준으로 감소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쇠고기로서 평균 2,439억원이고, 땅콩은 평균 32억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작음.
- 기준 생산액 대비 평균 감소율은 마늘이 36%로 가장 크고, 참깨는 30%, 팔과 밤이 27%로 뒤를 잇고 있음.
  - 최근 생산액 대비 감소 폭이 가장 낮은 품목은 딸기, 돼지고기, 닭고기로써 생산액의 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율이 5% 이하인 품목은 딸기, 토마토, 포도, 배, 복숭아, 돼지고기, 닭고기 등임.

---

31) 생산량과 가격 변화는 부록 3에 실음. 수요량과 수입량 변화도 추정되었으나, 보고서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표 3-12. 일반품목과 관세상한을 적용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선진국

품목	농업생산액(억원)	일반품목(억원)			
	2003-05년 평균(A)	최저	중간(B)	최고	B/A
고추	8,769	1,193	1,675	2,201	19%
마늘	5,752	1,634	2,094	2,784	36%
양파	2,572	432	502	579	20%
딸기	6,604	172	277	383	4%
토마토	5,196	208	275	348	5%
감귤	5,408	633	735	854	14%
사과	4,539	268	381	545	8%
포도	6,392	230	307	435	5%
배	3,401	102	170	252	5%
복숭아	1,942	58	93	130	5%
인삼	5,756	558	743	927	13%
땅콩	167	24	32	39	19%
참깨	1,963	365	583	797	30%
쇠고기	28,696	2,037	2,439	2,870	9%
돼지고기	33,688	910	1,449	2,021	4%
닭고기	9,007	207	333	477	4%
콩	3,992	567	910	1,242	23%
감자	2,220	297	477	650	22%
보리	2,206	216	344	470	16%
팥	214	35	57	78	27%
밤	1,779	338	484	626	27%
합 계	140,263	10,484	14,360	18,708	-
비 율	100.0%	7.5%	10.2%	13.3%	-

주: 1) '최저'와 '최고' 값의 사이는 95% 신뢰구간에 해당하고, '중간'은 그 평균임.

2) 밤에는 하나의 탄성치만 사용했으므로 점 추정 결과로 나타남.

## ② 민감품목: 관세상한

- 품목별로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률과 100%의 관세상한을 적용하여 생산액 감소 규모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3>과 같음.

표 3-13. 민감품목과 관세상한을 적용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선진국

품목	농업생산액(억원)	민감품목(억원)			
	2003-05년 평균(A)	최저	중간(B)	최고	B/A
고추	8,769	1,008	1,412	1,868	16%
마늘	5,752	1,576	2,025	2,692	35%
양파	2,572	303	358	412	14%
딸기	6,604	119	198	271	3%
토마토	5,196	145	192	244	4%
감귤	5,408	443	525	606	10%
사과	4,539	186	268	381	6%
포도	6,392	160	217	313	3%
배	3,401	71	119	177	4%
복숭아	1,942	41	66	93	3%
인삼	5,756	553	743	927	13%
땅콩	167	18	24	30	15%
참깨	1,963	357	579	793	30%
쇠고기	28,696	1,435	1,722	2,009	6%
돼지고기	33,688	606	1,011	1,415	3%
닭고기	9,007	144	234	333	3%
콩	3,992	575	910	1,238	23%
감자	2,220	266	428	588	19%
보리	2,206	196	318	435	14%
팥	214	35	57	78	27%
밤	1,779	249	358	463	20%
합 계	140,263	8,489	11,762	15,364	-
비 율	100.0%	6.1%	8.4%	11.0%	-

주: 1) '최저'와 '최고' 값의 사이는 95% 신뢰구간에 해당하고, '중간'은 그 평균임.

2) 밤에는 하나의 탄성치만 사용했으므로 점 추정 결과로 나타남.

- 일반품목에 적용되는 감축률의 70%에 해당하는 감축률을 적용했을 때 21개 품목의 총 생산액은 95% 신뢰구간에서 8,489억원~1조 5,364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3개년 평균 생산액에 비해 6.1~11.0% 감소한 수준임.
- 최근 3년 평균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품목은 마늘이며, 참깨와 팥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절대적인 생산액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품목은 마늘로서 평균적으로 2,02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다음으로는 쇠고기가 1,722억원, 고추가 1,41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품목의 관세 감축률을 적용했을 때와 결과를 비교해 보면, 밤의 생산액 감소 폭은 일반품목일 때에 비해 평균적으로 7% 포인트 낮아 민감품목 지정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③ 민감품목: 관세상한 비적용

-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고 관세상한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생산액 변화를 모의 분석한 결과는 <표 3-14>과 같음.
- 21개 품목의 총 생산액 감소 폭은 일반품목 가정이나 민감품목에 관세상한을 적용한 가정 아래의 결과보다 낮은 수준인 7,314억원~1조 3,0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절대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품목은 쇠고기(1,722억원)이며 마늘, 고추, 돼지고기가 각각 1,507억원, 1,184억원, 1,011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액 대비 감소 폭이 가장 큰 품목은 마늘이며 평균적으로 2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감품목의 감축률과 관세상한을 동시에 적용한 결과와 비교하며, 관세상한의 설정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참깨로 나타남.
  - 참깨의 생산액 감소 폭은 관세상한을 적용했을 때 최근 생산액 대비 30%였으나 관세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소 폭이 19%로서 11% 포인트 감소하였음.
  - 마늘과 콩, 밤도 관세상한 적용 여부에 따라 생산액 감소 폭은 8~9%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4. 민감품목과 관세상한을 비적용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선진국

품목	농업생산액(억원)	민감품목(억원)			
	2003-05년 평균(A)	최저	중간(B)	최고	B/A
고추	8,769	851	1,184	1,561	14%
마늘	5,752	1,168	1,507	1,996	26%
양파	2,572	309	358	409	14%
딸기	6,604	119	198	271	3%
토마토	5,196	145	192	244	4%
감귤	5,408	449	525	606	10%
사과	4,539	186	268	377	6%
포도	6,392	160	217	307	3%
배	3,401	71	122	177	4%
복숭아	1,942	41	66	91	3%
인삼	5,756	340	455	570	8%
땅콩	167	17	23	28	14%
참깨	1,963	232	369	512	19%
쇠고기	28,696	1,435	1,722	2,009	6%
돼지고기	33,688	640	1,011	1,415	3%
닭고기	9,007	144	234	333	3%
콩	3,992	383	615	842	15%
감자	2,220	211	337	466	15%
보리	2,206	152	245	335	11%
팥	214	25	40	55	19%
밤	1,779	238	345	447	19%
합 계	140,263	7,314	10,032	13,050	-
비 율	100.0%	5.2%	7.2%	9.3%	-

주: 1) '최저'와 '최고' 값의 사이는 95% 신뢰구간에 해당하고, '중간'은 그 평균임.

2) 밤에는 하나의 탄성치만 사용했으므로 점 추정 결과로 나타남.

## 나. 개도국

### ① 일반품목

- 품목별 생산액 감소 규모를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3-15>와 같음.
  - 일반품목의 관세 감축률에 관세상한을 부과한 시나리오임.

표 3-15. 일반품목을 가정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개도국

품목	농업생산액(억원)	일반품목(억원)			
	2003-05년 평균(A)	최저	중간(B)	최고	B/A
고추	8,769	702	965	1,315	11%
마늘	5,752	1,265	1,668	2,186	29%
양파	2,572	231	283	309	11%
딸기	6,604	66	132	198	2%
토마토	5,196	104	156	208	3%
감귤	5,408	324	379	487	7%
사과	4,539	136	227	272	5%
포도	6,392	128	192	256	3%
배	3,401	68	102	136	3%
복숭아	1,942	39	58	78	3%
인삼	5,756	518	691	863	12%
땅콩	167	13	17	22	10%
참깨	1,963	334	530	726	27%
쇠고기	28,696	1,148	1,435	1,435	5%
돼지고기	33,688	337	674	1,011	2%
닭고기	9,007	90	180	180	2%
콩	3,992	519	798	1,078	20%
감자	2,220	200	333	444	15%
보리	2,206	154	243	331	11%
팥	214	30	49	66	23%
밤	1,779	178	267	338	15%
합 계	140,263	6,585	9,377	11,938	-
비 율	100.0%	4.7%	6.7%	8.5%	-

주: 1) '최저'와 '최고' 값의 사이는 95% 신뢰구간에 해당하고, '중간'은 그 평균임.

2) 밤에는 하나의 탄성치만 사용했으므로 점 추정 결과로 나타남.

- 95% 신뢰구간에서 21개 품목의 농업 총생산액은 6,585억원~1조 1,93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2003~05년 농업생산액(기준)에서 4.7~8.5% 감소된 결과임.
- 절대 규모로 감소 폭이 가장 큰 품목은 마늘로서 평균 1,668억원이고, 땅콩은 평균 17억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작음.
- 기준 생산액 대비 평균 감소율은 마늘이 29%로 가장 크고, 참깨와 팥이 각각 27%와 23%를 나타냄.
  - 딸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감소 폭은 생산액 대비 2%로 가장 낮고, 감소율이 5% 이하인 품목은 딸기, 토마토,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임.

## ② 민감품목: 관세상한

- 품목별 생산액 감소 규모를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3-16>과 같음.
  -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률에 관세상한을 부과한 시나리오임.
- 절대액 평균 기준으로 감소 폭이 큰 품목은 마늘, 고추, 쇠고기, 콩 순임.
- 일반품목의 결과와 견주어 감소 폭이 줄어든 품목은 양파가 6% 포인트로 가장 크고, 밤과 감귤이 3% 포인트임.
  - 감소 폭이 줄어든 것은 이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함으로써 관세 감축 폭이 상대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임.
  - 고추, 마늘, 인삼, 참깨, 콩, 감자, 보리, 팥처럼 감소 폭의 변화가 없는 품목들은 일반품목이나 민감품목의 가정 아래 모두 관세상한 150%에 제약받기 때문임.<sup>32)</sup>

32)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의 평균 추정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반복된 시뮬레이션에 따른 결과임.

표 3-16. 민감품목을 가정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개도국

품목	농업생산액(억원)	민감품목(억원)			
	2003-05년 평균(A)	최저	중간(B)	최고	B/A
고추	8,769	702	965	1,315	11%
마늘	5,752	1,265	1,668	2,186	29%
양파	2,572	129	129	154	5%
딸기	6,604	66	132	132	2%
토마토	5,196	52	104	104	2%
감귤	5,408	162	216	216	4%
사과	4,539	91	136	182	3%
포도	6,392	64	128	192	2%
배	3,401	34	68	102	2%
복숭아	1,942	19	39	39	2%
인삼	5,756	518	691	863	12%
땅콩	167	12	15	18	9%
참깨	1,963	334	530	726	27%
쇠고기	28,696	861	861	1,148	3%
돼지고기	33,688	337	674	674	2%
닭고기	9,007	90	90	180	1%
콩	3,992	479	798	1,078	20%
감자	2,220	200	333	444	15%
보리	2,206	154	243	353	11%
팥	214	30	49	66	23%
밤	1,779	142	213	267	12%
합 계	140,263	5,741	8,082	10,440	-
비 율	100.0%	4.1%	5.8%	7.4%	-

주: 1) '최저'와 '최고' 값의 사이는 95% 신뢰구간에 해당하고, '중간'은 그 평균임.

2) 밤에는 하나의 탄성치만 사용했으므로 점 추정 결과로 나타남.

## ③ 민감품목: 관세상한 비적용

- 품목별 생산액 감소 규모를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3-17>과 같음.
-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률에 관세상한의 제약을 해지한 시나리오임.

표 3-17. 민감품목과 관세상한을 비적용하는 경우 생산액 감소 규모: 개도국

품목	농업생산액(억원)	민감품목(억원)			
	2003-05년 평균(A)	최저	중간(B)	최고	B/A
고추	8,769	351	438	614	5%
마늘	5,752	460	575	805	10%
양파	2,572	129	129	154	5%
딸기	6,604	66	132	132	2%
토마토	5,196	52	104	104	2%
감귤	5,408	162	216	216	4%
사과	4,539	91	136	182	3%
포도	6,392	64	128	128	2%
배	3,401	34	68	102	2%
복숭아	1,942	19	39	39	2%
인삼	5,756	115	173	230	3%
땅콩	167	7	8	12	5%
참깨	1,963	98	137	196	7%
쇠고기	28,696	861	861	1,148	3%
돼지고기	33,688	337	674	674	2%
닭고기	9,007	90	90	180	1%
콩	3,992	160	240	319	6%
감자	2,220	89	133	178	6%
보리	2,206	66	88	132	4%
팥	214	9	15	21	7%
밤	1,779	89	142	178	8%
합 계	140,263	3,348	4,527	5,745	
비 율	100.0%	2.4%	3.2%	4.1%	

주: 1) '최저'와 '최고' 값의 사이는 95% 신뢰구간에 해당하고, '중간'은 그 평균임.

2) 밤에는 하나의 탄성치만 사용했으므로 점 추정 결과로 나타남.

- 관세상한의 제약이 풀림에 따라 이에 구속됐던 품목들의 농업생산액 감축 폭이 크게 줄어들음.
  - 참깨 평균 20% 포인트 덜 감축되어 감축액이 530억원에서 137억원으로 떨어졌고, 마늘과 팔은 각각 19% 포인트와 16% 포인트만큼 감소함.
  
- 반면에 관세율이 낮아 관세상한과 무관한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에 대한 영향은 관세상한 아래 민감품목으로 가정한 결과와 같음.
  
- 관세상한의 설정은 고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의 시장접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민감품목의 수(관세라인의 비율)와 대우(관세 감축률과 TRQ 증량)를 근거로 그 파급 영향을 살펴보고, 민감품목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 4 장

###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 모델리티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C/S 작성 방향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C/S 작성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위주로 논의함.

#### 1. 민감품목의 선정

##### 1.1. 민감품목의 선정 기준

- 많은 선행 연구가 민감품목의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논하므로 이 연구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로 함.<sup>33)</sup>
- 민감품목의 기준으로 면제조항(Escape Clause)의 내용을 응용하는 방법을 고려함.

---

33) 주요 선행 연구로 서진교 등(2005), 성진근(2006), 이상준 등(2006), 임송수 등(2003), 최세균(2006), 한두봉(2006) 등을 꼽을 수 있음. 선행 연구와 달리 최적화 모형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분석함.

- 면제조항은 GATT 19조에 근거하는데,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받은 산업에 임시로 구제조치(safeguard)를 허용하는 것임.<sup>34)</sup>
  - 구제조치를 위한 요건은 ①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 ②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피해 위협(threat), ③ 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causation) 등임(산업자원부 2001).
  - 피해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는 국내 생산량과 실업임(Kelly 1988).
- 국내 생산량 감소와 실업 증가를 피해의 지표로 간주하고 구제조치를 발동하는 것처럼, 농산물 수입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설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논리가 타당할 것임.

## 1.2. 최적화(Optimization) 모형의 설정

- 부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된 생산액의 감소에다 농가 수의 감소를 민감품목의 기준으로 설정함<표 4-1>.
- 일반품목과 민감품목 사이의 생산액 감소 격차를 민감품목으로 선정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덜 주는 생산액)’으로 보고, 이를 극대화(maximization) 하도록 최적화 모형의 목적(objective) 함수를 설정함.
- 제약요인은 민감품목의 수(1~7개)와 재배 농가 수의 감소 폭임.
  - 민감품목으로 선정되는 품목들에 대한 총 재배 농가 수의 감소 폭이 최소한 5만 호 이상이 되도록 설정함.<sup>35)</sup>

34) GATT 19조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tc.go.kr/blog/blog.jsp?blog\\_seq=129](http://www.ktc.go.kr/blog/blog.jsp?blog_seq=129))를 참조함.

35) 재배 농가 수에 관한 전망(모형)이 없으므로 이전 자료를 근거로 그 감소 폭이 컸던 품목이 수입에 더 민감하다고 가정함.

표 4-1. 최적화 모형의 설정

	생산액(억원)			재배 농가 수 감소(호)	민감품목 결정
	일반품목(A)	민감품목(B)	이득(A-B)	2000~05년	
고추	1,007	460	546	163,072	1
마늘	1,743	621	1,122	159,051	1
양파	285	145	141	10,229	1
딸기	160	106	53	2,345	1
토마토	152	102	50	146,084	1
감귤	373	187	186	11,340	1
사과	124	83	41	3,286	1
포도	117	78	39	7,063	1
배	74	49	25	10,467	1
복숭아	27	18	9	1,528	1
인삼	2,809	791	2,017	-2,111	1
땅콩	18	9	9	0	1
참깨	529	145	384	140,600	1
쇠고기	1,297	867	430	101,063	1
돼지고기	627	502	125	12,007	1
닭고기	333	273	60	134,496	1
콩	800	240	560	21,413	1
감자	327	131	196	35,659	1
보리	249	94	154	41,987	1
팥	49	15	33	78,894	1
밤	431	431	1	0	1

농가 수 감소	915,401
---------	---------

총 이득	6,181
------	-------

주:1) 인삼 재배 농가 수는 증가했으며, 땅콩 농가 수는 변화가 없고, 밤 농가 수는 2003년 기준 자료만을 반영했으므로 그 수가 변하지 않음.

2) 민감품목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관세상한이 면제된 결과임<표 3-5>.

3) '민감품목 결정'은 '1'이 민감품목, '0'이 일반품목으로 선정됨을 나타내는 이진수(binary) 결정계수임.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0년,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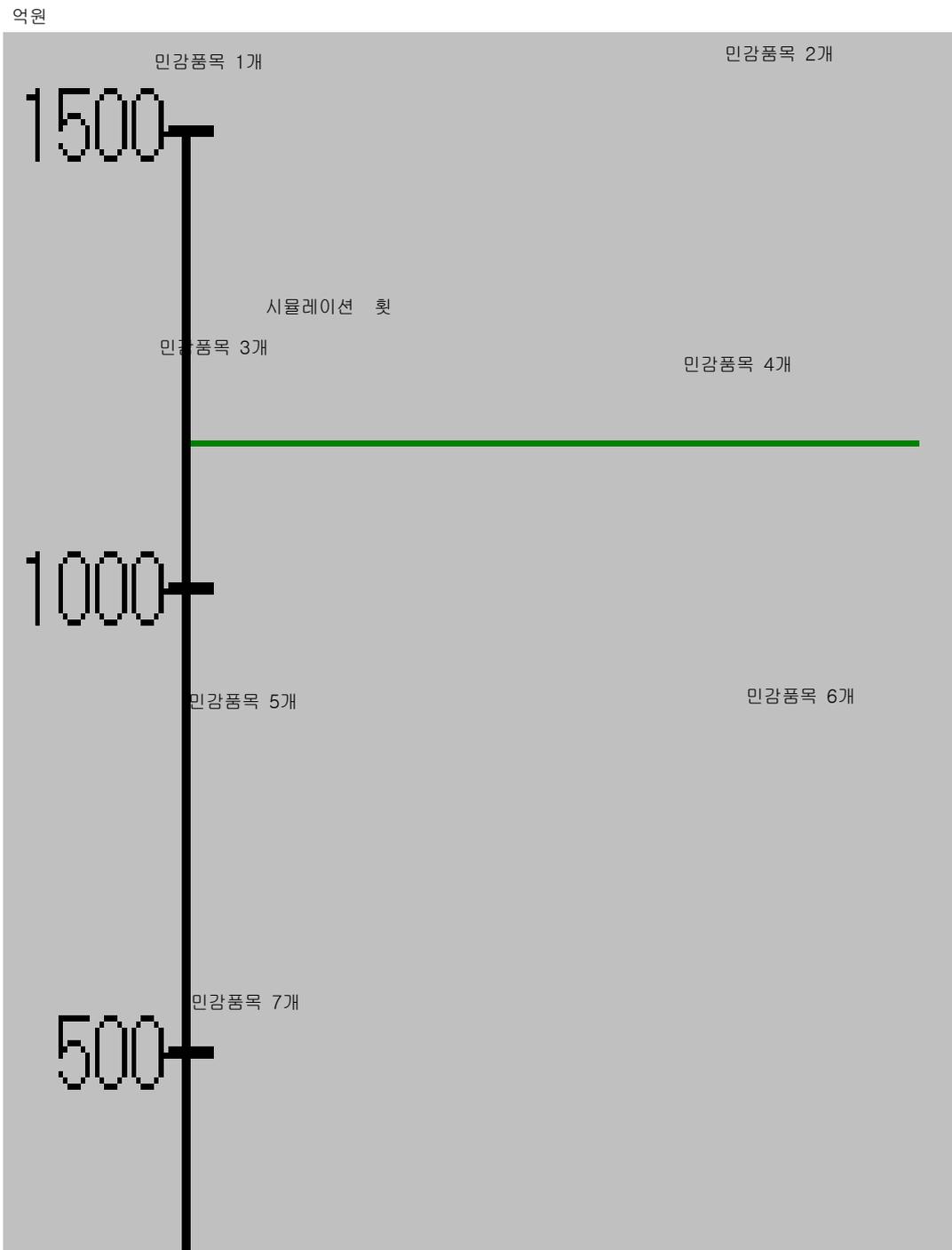
### 1.3. 민감품목의 선정 결과

- 최적화 모형을 통해 1~7개의 민감품목을 선정하는데, 각각 500회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도출한 결과는 <표 4-2>임.
  - 최적화 도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음.
- 21개 품목 가운데 민감품목을 1개 선정한다면 마늘로 정하는 것이 총 이득을 극대화하는 선택이며, 이때 총 이득은 1,160억원으로 추정됨.
- 민감품목 수를 7개까지 확대하면서 선정되는 품목은 마늘, 인삼, 콩, 고추, 쇠고기, 참깨, 감귤 등의 순서대로 늘어나며, 이때 총 이득은 5,292억원에 이름.
  - 민감품목의 수가 늘수록 총 이득의 증액 폭은 감소하는데, 특히 민감품목 수가 1개에서 2개로 늘 때에 한계효과는 2,008억원으로 가장 큼.
- 민감품목 수와 연계한 한계효과 계측은 민감품목 수와 특별품목 또는 일반품목 사이의 상쇄효과를 가늠하는데 유용해, 우리나라가 협상 이득을 극대화하는 최적 조합(mix)을 찾는 데 기여할 것임.

표 4-2. 최적화 모형의 결과: 민감품목의 선정

민감품목 수	총 이득(억원)	품목
1	1,160	마늘
2	3,168	마늘, 인삼
3	3,727	마늘, 인삼, 콩
4	4,282	마늘, 인삼, 콩, 고추
5	4,708	마늘, 인삼, 콩, 고추, 쇠고기
6	5,090	마늘, 인삼, 콩, 고추, 쇠고기, 참깨
7	5,292	마늘, 인삼, 콩, 고추, 쇠고기, 참깨, 감귤

그림 4-1. 최적화 과정: 민감품목의 선정



## 2. 특별품목의 선정

- 특별품목의 선정 기준은 아직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어, C/S 작성 방향을 논하는 데 한계가 따름.
- G33 제안대로 식량안보, 농촌개발, 생계보전의 일반기준 아래 예시된 18개 지표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특별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면, 주요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먼저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재욱 등 2005).
  - 특별품목의 포괄적 기준을 적용해 선정·제시한 품목들은 민감품목과 비슷함.<sup>36)</sup>
- 이에 따라 선정된 주요 민감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우선 분류하고, 그 나머지를 민감품목으로 선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특별품목에 관한 대우(관세 감축률)가 민감품목의 대우보다 유리하므로, 특별품목에 우선순위가 있음.
- 특별품목은 관세상한이나 TRQ 증량 의무를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활용을 통해 개도국의 지위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가 선발 개도국으로서 다른 개도국만큼 특별품목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함.<sup>37)</sup>

36) 이재욱 등(2005)이 제시한 특별품목은 쌀, 고추, 낙농(우유), 쇠고기, 감귤 등임.

37) 협상 관련 논의에서 브라질, 중국 등 선발 개도국의 특별품목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3. TRQ 대상과 증량 방식

- 민감품목의 선정과 대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시된 공식에 맞춰 TRQ 증량을 산출하게 됨.
  - EU · G10이 제안한 공식이, 관세 감축과 TRQ 증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역이론과 가장 근접하므로, 모델리티 협상에서 이 공식의 채택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임(제2장 참조).
  - EU · G10이 제안한 공식 아래 민감품목을 설정하는 게 G20나 미국 제안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함.
- 어떤 형태의 TRQ 공식이 채택될지 불투명하지만, 공식에 따라 예측되는 수입 영향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 민감품목 여부를 선정해야 할 것임.
- 일반품목 아래 수입량과 민감품목 아래 TRQ 증량 공식에 따라 수입량을 산출한 결과를 비교하면 <표 4-3>과 같음.
- 민감품목에 대한 TRQ 증량은 EU · G10 공식 아래 가장 적은 반면에 미국 공식에 따른 증량이 가장 큼.
- EU · G10 공식 아래 TRQ 증량이 일반품목 가정 아래의 수입량보다 큰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땅콩 등임.
  -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는 효과는 수입량 측면에서 없게 됨. 미국 공식 아래에서는 마늘, 양파, 감귤만이 민감품목의 효과를 나타냄.
- 수입량만을 고려하면, 세 공식 아래에서 민감품목의 TRQ 증량이 일반품목의 수입량보다 크게 산출된 쇠고기, 돼지고기, 땅콩은 민감품목의 수입 완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표 4-3. 민감품목의 TRQ와 일반품목의 수입량 비교

단위: 톤

품목	구 분	미국	EU · G10	G20
고추	민감품목 TRQ 증량(A)	14,402	406	5,819
	일반품목 수입량 증가(B)	11,907	8,820	8,820
	차이(A-B)	2,495	-8,414	-3,001
마늘	민감품목 TRQ 증량(A)	38,521	978	14,675
	일반품목 수입량 증가(B)	61,639	59,927	59,927
	차이(A-B)	-23,118	-58,948	-45,252
양파	민감품목 TRQ 증량(A)	84,377	2,736	32,143
	일반품목 수입량 증가(B)	109,605	73,070	73,070
	차이(A-B)	-25,229	-70,335	-40,927
쇠고기	민감품목 TRQ 증량(A)	25,679	17,030	15,722
	일반품목 수입량 증가(B)	15,543	10,913	9,921
	차이(A-B)	10,137	6,117	5,801
돼지고기	민감품목 TRQ 증량(A)	41,387	8,957	31,236
	일반품목 수입량 증가(B)	16,313	7,983	8,677
	차이(A-B)	25,075	974	22,559
닭고기	민감품목 TRQ 증량(A)	16,960	4,959	12,800
	일반품목 수입량 증가(B)	11,072	6,366	6,920
	차이(A-B)	5,888	-1,407	5,880
사과	민감품목 TRQ 증량(A)	38,190	1,896	18,331
	일반품목 수입량 증가(B)	17,755	11,055	10,050
	차이(A-B)	20,435	-9,158	8,281
배	민감품목 TRQ 증량(A)	27,093	1,345	13,004
	일반품목 수입량 증가(B)	13,983	8,706	7,915
	차이(A-B)	13,110	-7,361	5,090
감귤	민감품목 TRQ 증량(A)	50,932	1,590	19,403
	일반품목 수입량 증가(B)	67,770	45,180	45,180
	차이(A-B)	-16,838	-43,590	-25,778
포도	민감품목 TRQ 증량(A)	39,436	1,958	18,929
	일반품목 수입량 증가(B)	11,562	7,199	6,545
	차이(A-B)	27,873	-5,241	12,384
땅콩	민감품목 TRQ 증량(A)	3,249	1,454	1,494
	일반품목 수입량 증가(B)	1,118	745	745
	차이(A-B)	2,131	709	749

주: 일반품목의 수입량 증가는 제3장의 부분균형 모형에서 도출한 결과임.

- 이 비교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사전에 민감품목을 선정하기보다, TRQ 증량과 관세 감축 공식이 합의되면 이에 근거한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의 수입 영향을 비교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함.
  - 최근 연도의 소비량이 아닌 수입량 기준으로 TRQ 증량을 산출하는 E·U·G10 공식이 채택되도록 협상해야 할 것임.

#### 4. 특별 수입구제조치(SSM)의 선정

- 특별품목처럼 SSM의 선정 기준도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어, C/S 작성 방향을 논하는 데 한계가 따름.
- 다만 G33의 제안에 따라 수입량 기준으로 품목별 SSM 발동 여부를 2018년까지 연도별로 추정하면 <표 4-4>, <표 4-5>와 같음.<sup>38)</sup>
- 모두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개도국 시나리오의 경우 SSM 발동 빈도가 가장 큰 품목은 마늘로, 2007~18년에 해마다 SSM이 발동되며, 2011년부터는 그해 수입량이 3개년 이동평균(moving average) 수입량보다 10% 이상 30% 이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발동 빈도가 높은 품목은 육계 8회, 사과, 배, 감, 감귤이 각각 7회, 한육우, 양돈, 포도가 각각 5회임.
  - 사과, 배, 감, 감귤 등 주로 과일류에서 그해 수입량이 이동평균 수입량보다 30% 이상 큰 연도가 많이 발생함.<sup>39)</sup>
  - SSM 발동 총 빈도는 77회임.

38) G33은 최근 3개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도 SSM이 발동되도록 제안했으나, KREI-ASMO 모형이 월별 수입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가격기준 SSM 발동은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함.

39) 2012년부터 과일류의 SSM이 발동되는 것은 이 해부터 검역 해제를 가정했기 때문임.

표 4-4. 수입량 기준 SSM의 발동 가능성: 개도국 시나리오

연도	두류	기타 곡물	고추	배추	맥류	마늘	양파	사과	배	포도	감	감귤	복숭아	한우우	낙농	양돈	육계
2004	0	0	2	3	0	2	0	0	3	1	0	0	0	0	2	3	0
2005	0	0	0	3	0	0	0	0	3	2	0	0	0	0	2	3	0
2006	1	0	0	3	1	0	0	0	3	0	0	0	0	2	1	2	2
2007	0	0	0	2	0	1	0	0	0	0	0	0	0	2	0	1	2
2008	0	0	0	0	0	1	0	0	0	0	0	0	0	2	0	1	1
2009	0	0	0	0	0	1	0	0	0	0	0	0	0	2	0	0	1
201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1
2011	0	0	0	0	0	2	0	0	0	0	0	0	0	1	0	0	1
2012	0	0	0	0	0	2	0	3	0	0	3	3	0	0	0	0	1
2013	0	0	0	0	0	2	0	3	0	0	3	3	0	0	0	0	1
2014	0	0	0	0	0	2	0	3	0	0	3	3	0	0	0	0	0
2015	0	0	0	0	0	2	0	3	3	0	3	2	3	0	0	0	0
2016	0	0	0	0	0	2	0	3	3	1	2	2	0	0	0	0	0
2017	0	0	0	0	0	2	0	2	3	2	2	2	0	0	0	0	0
2018	0	0	0	0	0	2	0	2	3	2	2	2	1	0	0	0	0
총빈도	1	0	1	4	1	13	0	7	7	5	7	7	2	6	3	5	8

주: 1) 숫자 1은 105% ≤ 110% 구간, 2는 110% ≤ 130% 구간, 3은 130% < 을 나타냄.

2) 제3장의 KREI-ASMO가 추정한 수입량 전망치를 근거로 산출함.

3) 개도국 시나리오 1과 2의 산출 결과가 같으므로, 이 둘을 모두 하나의 개도국 시나리오로 지칭함.

표 4-5. 수입량 기준 SSM의 발동 가능성: 선진국 시나리오

연도	두류	기타 곡물	고추	배추	맥류	마늘	양파	사과	배	포도	감	감귤	복숭아	한우우	낙농	양돈	육계
2004	0	0	2	3	0	2	0	0	3	1	0	0	0	0	2	3	0
2005	0	0	0	3	0	0	0	0	3	2	0	0	0	0	2	3	0
2006	1	0	0	3	1	0	0	0	3	0	0	0	0	2	1	2	2
2007	0	0	0	2	0	1	0	0	0	0	0	0	0	2	0	1	2
2008	0	0	0	0	0	1	0	0	0	0	0	0	0	2	0	1	1
2009	0	0	0	0	1	2	0	0	0	0	0	0	0	2	0	1	1
2010	0	0	0	0	1	2	0	0	0	0	0	0	0	2	0	1	1
2011	0	0	0	0	2	2	0	0	0	0	0	0	0	1	0	0	1
2012	0	0	0	0	2	2	0	3	0	0	3	3	0	1	0	0	1
2013	0	0	0	0	2	2	0	3	3	2	3	3	0	1	0	0	1
2014	0	0	0	0	1	1	0	3	3	3	2	2	3	0	0	0	0
2015	0	0	0	0	0	1	0	2	3	3	2	2	3	0	0	0	0
2016	0	0	0	0	0	1	0	2	3	2	2	2	3	0	0	0	0
2017	0	0	0	0	0	1	0	2	3	1	2	2	2	0	0	0	0
2018	0	0	0	0	0	1	0	2	3	1	2	2	2	0	0	0	0
총빈도	1	0	1	4	1	13	0	7	7	5	7	7	2	6	3	5	8

주: 1) 숫자 1은 105% ≤ 110% 구간, 2는 110% ≤ 130% 구간, 3은 130% < 을 나타냄.

2) 제3장의 KREI-ASMO가 추정한 수입량 전망치를 근거로 산출함.

- 선진국 시나리오 아래 SSM 발동 빈도가 큰 품목은 마늘 13회, 배 9회, 포도, 한육우, 육계가 각각 7회, 복숭아 5회 등임.
  - 개도국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과일류에서 수입량 격차가 30%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도국 경우보다 SSM 발동 빈도가 늘어난 품목은 맥류, 배, 포도, 복숭아, 한육우, 양돈인데, 이 가운데 맥류, 포도, 복숭아의 증가 폭이 큼.
  - SSM 발동 총 빈도는 95회로 개도국 경우보다 18회가 많음.
  
- 수입량을 기준으로 SSM 대상 품목을 선정하면, 조미채소 중 마늘과 주요 과일, 축산물 위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여러 과일의 수입은 검역해제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그 해제 시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
  - 축산물의 SSM 발동은 새로운 농업협정의 이행 초기(2013년까지)에만 이루어짐도 주목할 특징임.

## 제 5 장

### 이행계획서(C/S) 양자협상 대책

- 이행계획서가 없는 상태지만, 잠재적인 양자협상 문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며, 우리나라가 선택할 개도국 감축의무를 주장하는데에 필요한 보완논리를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논의함.
  - 주요 상대국의 선정은 UR 협상을 비롯하여 쌀 관세화 협상과 DDA 농업협상에서 양자 협상을 하였던 국가를 우선으로 선정함.

#### 1. 주요 양자협상 대상국의 잠재적 요구 사항

- 주요 C/S 협상 대상국은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상위국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개도국의 관심 사항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쌀은 2004년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로 합의했고 국별 쿼터도 설정됐으므로, C/S 양자협상 의제가 아닌 것으로 가정함.

## 1.1. 미국

- 미국의 관심품목은 과일류(사과, 오렌지, 자몽, 딸기 등),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감자 등) 등임<부록 4>.
- 2006년 들어 추진하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양자 현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므로, DDA C/S 협상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예상됨.

## 1.2. 캐나다

- 캐나다는 유채유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 확대에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쌀 협상에서 캐나다는 유채유의 일종인 캐놀라유의 관세 인하(30%→8%)와 사료용 완두콩의 TRQ 확대(16만톤→45만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1.3.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의 관심 품목은 낙농제품, 축산물(쇠고기, 양고기), 맥주맥, 천연꿀 등임.
  - 우리나라에 대한 맥주맥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스트레일리아는 513%에 이르는 맥주맥 양허관세의 감축에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 미국과 FTA 협상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원당, 쇠고기, 낙농제품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한 점은 이들 품목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반증하며, 우리나라와 C/S 협상에서도 이들의 시장접근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됨.

- 낙농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의 감축과 TRQ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우리나라가 호주의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로, 일본 21%, 미국 11%, 중국 10%에 이어 뉴질랜드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임.

#### 1.4.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쇠고기, 낙농제품(특히 치즈), 천연꿀, 키위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2000년부터 키위 수입액에서 뉴질랜드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 이므로 45%인 양허 관세율 인하가 중요할 것임.
  - 뉴질랜드 치즈의 수입액 비중은 40% 안팎으로 국내 수입 시장의 최대 규모이며, 36%인 양허 관세율의 인하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임.
- 2004년에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특히 냉동육)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됨.
  - 2006년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일부 재개됐지만, 뉴질랜드는 확대된 쇠고기 수입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고 할 것임.

#### 1.5. 중국

-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은 22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많은 품목들이 협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옥수수는 중국의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국내 수출여력이 결정될 것이며,

돼지고기, 오이, 토마토 등은 검역에 의한 수입규제가 풀리면 그 수입이 늘 것임.

-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배추 등 채소류와 인삼, 참깨 등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들의 시장접근 개선이 주된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과일류는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규제 이외에도 품질 격차로 인해 수입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사과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 1.6. 인도

- 인도가 국내시장에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품목은 고관세 품목인 참깨, 양파, 마늘 등과 일부 곡물류로 관측됨.
-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인도와 양자협상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도 중요함.
  - 우리나라가 2004년 쌀 협상에서 인도로부터 식량 원조용 쌀을 구입하기로 양보한 사례처럼, 신축적인 협상대처가 필요함.

## 1.7. 아세안국가(ASEAN)

- 2005년부터 시작된 ASEAN과 FTA 협상에서 닭고기, 열대과일, 카사바 등의 관세 감축이 제기됨. 2006년에 베트남이 WTO 회원국이 되면서 닭고기에 대한 관심이 표명될 것으로 예상됨.
- ASEAN과 FTA가 체결되더라도 협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사과, 배 등 과일류와 고추 등 채소류는 C/S 협상에서 추가 관심 품목이 될 것임.

## 1.8. EU

- 치즈, 전지분, 탈지분유 등 낙농제품의 관세율 인하와 TRQ 증량이 관심 대상이 될 것임.
- EU와 FTA는 2006년 9월에 2차 예비 협의를 가진 상태임.

## 1.9. 주요 남미 국가

- 브라질은 콩, 아르헨티나는 쇠고기와 과일류 등이 관심대상임.
  - 특히 아르헨티나는 2004년 쌀 협상에서 쇠고기 검역 개시와, 닭고기와 오렌지의 신속한 검역 추진을 요구했음.
- 2004년에 발효된 칠레와 FTA에서 농산물의 72%가 양허된 만큼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이 중요할 것이며, DDA 타결과 연동된 FTA 조항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2.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대응 방향

- 우리나라의 개도국 논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시됐으며, 여기서는 추가 대책들을 다루기로 함.<sup>40)</sup>

---

40) 주요 선행 연구로는 임송수 등(2005), 임송수, 김상현(2003), 임정빈, 이재옥(2002) 등이 있음.

- 개도국 지위 유지에 호응을 얻으려면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함.
  - 선진국들은 LDC에게 다양한 무역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아니지만 경제대국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
  - LDC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수입과급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선정해 영세율 등의 특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함.
  
-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서 활동을 더욱 적극 펼쳐야 할 것임.
  - WTO, OECD 등 국제기구들이 개도국 세분화 또는 개도국 졸업요건에 관한 논의를 못하도록, 개도국으로서 OECD 회원국인 멕시코와 협력함.
  - 개도국에 영향력이 큰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협상 논의에서 G33과 공조체제도 더욱 견고히 함.
  
- C/S 양자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가 제기될 것을 대비해 국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양보 가능한 사항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함.
  - 1993년 12월 UR 협상의 타결 막바지 양자협상에서 BOP 품목의 양허 등 우리나라의 수입개방 확대 폭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를 반대하던 미국, EU 등이 개도국 인정으로 돌아섰음.
  
- 우리 농업의 취약성을 외국에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외교단의 순회외교 활동을 통해 취약한 우리 농업의 실상을 알리고 설득함.
  - 전통적 동조국(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출 선진국(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향력이 큰 개도국(인도, 이집트 등), ASEAN(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중남미 수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LDC 등 회원국들을 그룹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차별된 접근 전략을 강구함.
  - 개도국과 농업협력을 강화하고 LD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선발 개도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의무 이행에 동참할 것임을 밝힘.
  -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대규모 개도국들이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의무 이행을 하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요청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증대된 의무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특별품목 등 개도국 우대 조치의 일부에 대한 권한만을 행사하기로 양보하는 것임.
  
- 농업 부문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사회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홍보하고 설득함으로써 다른 산업 부문과 협상 목표를 공유하도록 노력함.
  - 농업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된 공급, 쾌적한 농촌 유지, 농업·농촌 붕괴에서 비롯될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사회가 요구하는 다원적 기능 제공 등의 유익을 가져오고, 다른 협상 분야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널리 알림.

## 제 6 장

### WTO 규범을 고려한 국내 농정 방향

- WTO 국내보조 규정은 국내 농정조치의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농정조치 전환과 개혁 방향 설정이 필요함.
  - UR후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처럼 DDA에서 새로운 농업협정이 체결되면 이에 대응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 AMS에서 직접지불(블루박스 또는 허용보조) 중심으로 농정 수단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런 농정개혁의 기초에 맞는 조치 도입과 조정이 필요함.
- 허용보조는 1995년에 4조 110억 원에서 2002년에 6조 93억 원(잠정치)으로 연평균 6% 증가하고 있으며, 농정개혁 기초 속에 농가소득 확충을 목표로 하는 허용보조 조치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995~2002년에 허용보조 가운데 정부의 일반 서비스(예: 검역,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에서 56%로 내림세를 나타낸 반면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 비중은 38%에서 43%로 오름세를 보임.
  - 경영이양, 친환경 농업과 축산,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생산조정제, 쌀소득보전(과거 논 농업) 등 직접 지불 조치들이 확대 도입되고 있음.

## 1. 국내보조 조치의 요건 검토와 조정 방향

- 우리나라는 2000년 후의 국내보조 이행 실적을 WTO에 통보하지 않아, 새롭게 도입된 정책조치들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 특히 관심이 되는 논 농업 직접지불제는 환경보전과 비연계 소득지원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보상 산출방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환경보전보다 비연계 소득지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AMS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쌀 수매제가 2005년 7월에 폐지되고,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이하 ‘쌀 직불’)가 도입됨에 따라 이 두 제도의 분류가 관심 사항임.

### 1.1. 공공비축제

- 공공비축제는 식량안보 목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목표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시장가격으로 방출하므로, UR 농업협정 부속서 2의 3항에 근거한 허용보조임.<sup>41)</sup>
- 2005년에 공공비축 쌀의 목표를 600만석으로 설정하고, 400만석(57만 6,000톤)을 매입했고,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100만석(14만 4,000톤)을 추가로 매입함.<sup>42)</sup>

41)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정책가격으로 구매하면 정책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AMS 산출에 포함됨.

42) 250만석은 농가로부터 매입하고 150만석은 RPC를 통해 매입하되, 10~12월 매입기간의 산지가격을 적용함.

- 추가로 매입한 100만석을 포함, 500만석 매입에 소요된 비용은 1조 2,102억원임.
- 2006년의 매입 물량은 350만석으로 설정됨.
- 공공비축제는 기존 농업협정의 허용보조 조건들을 충족하며, DDA 농업협상에서 관련 규정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전망되므로 허용보조로서 지속할 수 있을 것임.
  - 식량안보 목적: 식량안보 목적을 제도에 명시함.
  - 사전에 목표 설정: 양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최종의결을 통해 매입량을 사전에 결정함.
  - 현행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 산지가격 기준으로 매입하며, 특히 산물벼를 9~11월에 매입하더라도 10~12월의 산지가격 기준으로 정산함.

## 1.2.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쌀 직불은 사전에 설정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격차를 변동 직불과 고정 직불로 보전하는 조치이며, 보전 수준은 가격 격차의 85%임.
  - 고정 직불=고정 직불단가×기준면적
  - 변동 직불={(목표가격-시장가격)×85%-고정 직불단가}×기준단수×기준면적
  - 총 직불=고정 직불+변동 직불
- 대상 농지는 1998~2000년에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면적 상한이 없으며, 지급 대상자는 실제 경작자임.
-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설정되며, 2005~07년산이 80kg 당 170,083원임.
  - 목표가격의 변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

- 2005년산에 적용되는 고정 직불의 단가는 진흥지역이 ha 당 64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51만 2,000원으로 평균 60만원 수준임.
  - 고정 직불의 단가는 2006년에 ha 당 평균 70만원 수준으로 상승함.
- 2005년에 지출된 직불 규모는 고정 직불 6,038억원, 변동 직불 9,015억원 등 모두 1조 5,053억원임.
  - 쌀 80kg 당 고정 직불 9,836원, 변동 직불 15,710원으로 모두 25,546원임.
  - 2007년 고정 직불과 변동 직불의 예산은 각각 6,986억원과 1조 3,112억원으로 책정됨.
- 고정 직불은 UR 농업협정 부속서 2의 6항의 비연계 소득지원에 해당하는 허용보조임.
  - 고정된 기준 연도의 자격요건: 1998~2000년에 논 농업에 이용된 면적으로 고정함.
  - 지급액의 비연계성: 지급액은 기준 연도 이후에 생산 작물형태(논에 쌀 이외 작물의 재배 가능)나 생산량, 국내외 가격과 상관없이 결정됨.
  - 휴경 허용: 기준 연도 후 휴경한 면적도 유효한 직불 대상임.
- 그러나 직불의 지급 규모가 논농업 직불 때엔 ha 당 2001~03년에 평균 40만원과 2004년에 50만원, 그리고 쌀 직불 아래 2005년에 60만원과 2006년 7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므로 고정 직불이 허용보조가 아니라 AMS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단가 조정이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반응으로 보면 가격과 연동된 조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임.
- 변동 직불은 시장가격의 수준에 따라 지급규모가 변하므로 AMS임.
  - 2005년에 지급된 변동 직불은 양허수준 1조 4,900억원 대비 61%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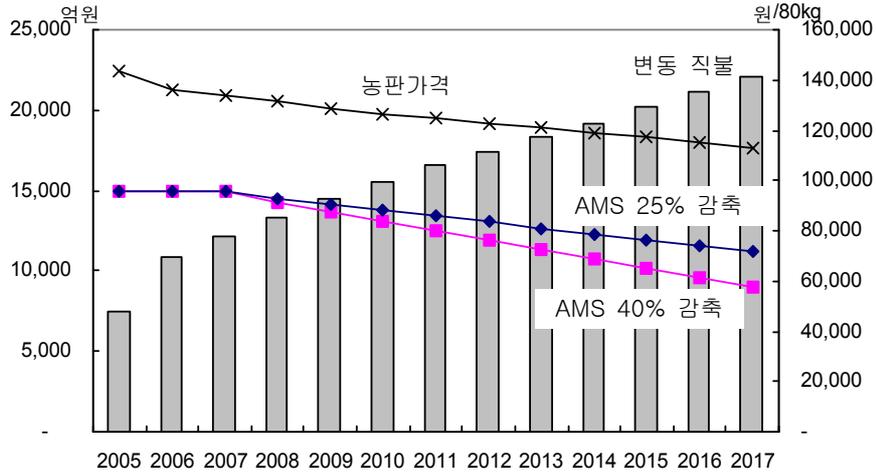
## 2. 국내 농정의 새로운 방향

- 모델리티 합의안이 없는 상태이므로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과 주요국 제안을 근거로 농정 방향을 제시하기로 함.

### 2.1. 쌀 직불제의 조정 필요

- 수입개방의 확대와 소비량 감소의 영향으로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 변동 직불이 더 많이 지출될 텐데, 농업협상 결과로 AMS가 감축되는 제약 아래 이러한 직불 확대가 가능한지가 관심 사항임.
- 2005~2017년에 쌀의 농가 판매가격이 80kg 당 143,195~113,150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가정해 변동 직불을 산출하면 <그림 6-1>과 같음.
-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음.
  - ① 새로운 DDA 농업협정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행됨.
  - ② 쌀 직불의 대상 면적은 2005년 수준으로 고정됨.
  - ③ 쌀의 농판가격 하락 추이는 2000년대 들어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2% 감소하는 반면에 수입량은 늘면서 공급과잉 기조가 이어짐을 반영함.
  - ④ 개도국 지위 아래 AMS 양허수준이 1조 4,900억원에서 각각 25%와 40% 감축됨.
  - ⑤ AMS 감축률(25%, 40%)과 변동 직불 규모를 결정하는 다른 변수들은 일정함.
- 변동 직불의 소요 규모는 2009년부터 AMS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AMS 25%와 40% 감축 아래 2009년의 초과분은 각각 295억원과 742억원임.

그림 6-1. 쌀 변동 직불의 규모와 AMS 상한 비교



- 기본가정 아래 AMS 상한이 소진되는 쌀 가격은 2007년 기준으로 80kg 당 각각 12만 9,431원과 13만 349원이고, 2017년 기준으로는 각각 13만 5,547원과 14만 134원임<표 6-1>.
- 쌀 가격이 위의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면, AMS 한도를 초과하게 됨.43)

표 6-1. AMS 상한 소진에 이르는 변동 직불의 변수 값

결정 변수	초기값	연도	AMS 25% 감축	AMS 40% 감축
'05 농판가격	143,195원/80kg	2009	129,431	130,349
		2017	135,547	140,134
'05 목표가격	170,083원/80kg	2009	169,478	168,561
		2017	147,686	143,099

43) 물론 AMS 감축률과 쌀 가격에 대한 가정에 따라 AMS 소진에 이르는 쌀 가격(목표 값)은 다를 것임.

- AMS로서 변동 직불을 계속 활용하려면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① 목표가격의 하향 조정: AMS 상한에 맞추려면 목표가격을 가마당 17만 83원에서 최대 14만 3,099원으로 낮춤.
- ② 고정 직불 비중 확대: 쌀 직불에서 고정 직불의 몫을 늘림으로써 변동 직불이 감당해야 할 격차를 완화시킴.
- 변동 직불의 조정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목표가격은 변동 직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허용보조인 고정 직불과 연계됨으로 자주 변경하기 어려움.
  - 목표 가격과 보상을(목표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의 격차의 85%)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농업계가 요구하고 있음.
  - 기준단수나 기준 면적의 축소로도 AMS 상한을 맞출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려움.

## 2.2. 블루박스의 활용 가능성<sup>44)</sup>

- 쌀 직불 가운데 변동 직불을 UR 농업협정상의 블루박스로 전환하려면 지급의 요건에다가 휴경 의무가 추가로 더해져야 함.<sup>45)</sup>
- 변동 직불을 새로운 블루박스에 포함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수정과 여건 마련이 필요함.

44) 우리나라는 블루박스 조치를 사용한 적이 없음.

45) 2003년 농정개혁 전에 EU가 사용한 보상 직접 지불이 대표적인 블루박스 조치인데, 휴경이나 사육두수 제한 아래 지급되는 직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임송수 2003).

· 직불=기준단가(유로/톤)×기준단수(톤/ha)×기준면적(ha)

- ① 지불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음: 새로운 블루박스는 시장가격에 따라 지급액이 변화되므로 가격연동 보조라고 할 수 있으나,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지원임. 이에 따라 생산을 전제로 지급되는 지금의 요건이, 생산하지 않거나 휴경할 때에도 지급되도록 완화돼야 함.<sup>46)</sup>
- ② 협상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블루박스를 확보함: 협상 동향을 감안할 때 개도국 가정 아래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블루박스 규모는 8,6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AMS 40% 감축된 수준보다 적은 수준이므로 활용할 여지가 크지 않음. 이에 따라 이보다 큰 규모의 블루박스 상한이 설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③ 보상률은 85%로 고정임: 기존 조치나 새로운 조치 모두 보상률이 85%로 고정됨. 이에 따라 보상률의 상향 조정은 블루박스 자격을 상실하는 요인이 될 것임.<sup>47)</sup>

### 2.3. 농가의 수입보장 제도의 도입 가능성

- WTO 규범 아래 농정개혁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허용보조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짐.
- 허용보조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농가 수입보장 제도(Revenue Assurance Program)임.
  - UR 농업협정 부속서2의 7항의 소득보험과 소득안전망 조치에 해당함.
  - 이전 3개년 평균 또는 이전 5개년 올림픽(olympic) 평균을 기준으로 농가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면, 그 소득 감소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임.

46) 미국이 새로운 블루박스로 분류하려는 CCP 제도는 휴경한 농지에도 직불함.

47) 이와 비슷한 사례로 캐나다의 소득안전망 계정(NISA)은 허용보조 아래 허용된, 소득 감소분의 70%보다 더 많이 보전함으로써 감축 대상 보조로 분류됨.

- 농가소득보장 제도는 농가의 농업 총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조치로써 장점을 가진 반면에 보상률이 충분하지 않은 단점을 지님.
  - 2003년에 도입된 캐나다의 농업소득 계정(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CAIS)은 농가의 자부담과 정부 보조를 합쳐 기준 소득의 최대 100%까지 보전함.<sup>48)</sup>
  - 미국은 2007년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이 조치를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음.
- 농가소득보장 제도 아래 보상률을 소득 감소분의 70% 이상으로 높인다면, 이 보조는 최소 허용보조(특히 품목 불특정)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2003년부터 EU가 단일 직접 지불 제도를 통해, 농가가 이전에 받던 보조를 기준 면적에 따라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처럼 농가소득보장 제도를 운용한다면, 이는 비연계 소득지원에 해당하는 허용보조가 될 것임.

---

48) CAIS 제도가 WTO에서 어떤 보조로 분류될 지는 아직 불확실함.

## 제 7 장

### 요약과 결론

#### 1. 모델리티 협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

- 미해결 쟁점 사항이 많아 모델리티 타결 방향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연구는 시나리오 분석에 의한 협상안들의 평가와 KREI-ASMO 모형 및 부분균형 모형에 의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함.
  -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국, EU, G20 제안서를 평가하여 그 영향을 계측함.
- 시장접근 분야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G20, EU, 미국의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관세 감축률이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제안으로 나타남.
  - 민감품목의 수를 변화시킬 경우 평균 관세율이 약 2% 포인트 상승함. 이처럼 민감품목의 수의 확대는 시장개방 폭을 완화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파급효과가 작음.
  - 특별품목의 수를 변화시킬 경우, 평균 관세율은 최대 9% 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감품목에 비해 특별품목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상한 150% 적용, 민감품목의 수 1.5~6%, 특별품목의 수를 증가시키는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 특별품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상한의 효과는 반감함.
  - 따라서 관세상한이 설정되더라도 특별품목의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관세상한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음.
- 국내보조 분야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별 국내보조 감축 효과는 시장접근 분야와 달리 EU와 G20보다 미국의 제안이 우리나라에 유리함.
  - 최종 이행연도 말 기준 OTDS는 개별 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보다 크므로 DDA 농업협상 종료 이후 활용 가능한 AMS,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 등 개별보조 규모에 의해서 제약됨.
  - 반면, 이행 기간 중에 OTDS는 개별보조들의 감축 후 합계보다 작아 국내보조 조치를 운용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진국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OTDS는 최대 70%, 개별보조의 합계는 최대 78% 감축됨. 반면, 개도국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OTDS는 최대 47%, 개별보조의 합계는 최대 48% 감축됨. 따라서 개도국 지위 유지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함.
- 총량모형인 KREI-ASMO를 활용한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직불을 포함한 농업소득은 개도국 시나리오 아래 연평균 1.34~1.48% 감소하지만, 선진국 시나리오 아래 연평균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불을 제외했을 때의 농업소득이 포함했을 때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는데 직불이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함.
  - 재배면적은 시나리오에 따라 연평균 1.5~1.6% 감소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시나리오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분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21개 주요 품목의 생산액 감소 규모를 계측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선진국 및 개도국 기준 아래 분석 대상 품목을 관세상한이 적용되는 일반품목이나 민감품목으로 가정할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의 생산액 절대액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03~2005년 기준 생산액 대비 평균 감소율이 큰 품목은 마늘, 참깨, 팥, 콩 등으로 나타남.
  - 관세상한의 제약이 풀릴 경우 이에 구속되었던 품목들의 농업생산액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들음. 따라서 관세상한 설정은 고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의 시장접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

## 2.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과 양자협상 대책

- 모델리티 타결 이후 최대 관심 사항은 C/S 작성과 양자협상이 될 것임.
  - 모델리티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C/S 작성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모델리티에 내재된 신축성과 양자협상에서 상대국이 제기할 수 있는 현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DDA 농업협상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관세가 큰 품목으로 감축될 것임. 반면, 관세 감축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선정할 수 있음.
  - 민감품목이 관세 감축을 완화할 수 있을지라도 TRQ 물량을 증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효율적으로 선정해야 함.
- 민간 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 최적화 모형은 일반품목과 민감품목 사이의 생산액 감소 격차를 민감품목으로 설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 간주하여, 이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는데 유용할 것임.
  - 민감품목의 수와 연계하여 한계효과를 계측하는 이 모형은 민감품목의 수와 특별품목, 일반품목 사이의 상쇄효과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우리나라가 협상이득을 극대화하는 최적조합을 찾는 데 기여할 것임.
  
- 모델리티 협상이 잠정 중지된 상황이지만, 잠재적인 양자협상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주요 C/S 협상 대상국은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상위 농산물 수출국이 될 것이며, 양자협상에서 일부 개도국의 관심 사항도 제기될 전망이다.
  
-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C/S 양자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가 제기될 것을 대비해 국별 요청사항을 사전 준비하여 양보 가능한 사항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3. WTO 규범을 고려한 국내 농정 방향

- DDA 농업협상에서 새롭게 규정될 국내보조 규정은 국내 농정조치의 운용을 제약할 것임. 이런 기조에 맞는 농정조치의 전환과 이에 따른 새로운 조치의 도입과 조정이 필요함.

- AMS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쌀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와 쌀 직불이 도입됨에 따라 이 두 제도의 분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공공비축제는 기존 농업협정의 허용보조 요건들을 충족하며, DDA 농업협상에서 관련 규정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 전망이어서 허용보조로 지속될 것임.
  - 쌀 직불 가운데 변동 직불은 시장가격의 수준에 따라 지급규모가 변하므로 AMS로 분류되는 반면, 고정 직불은 UR 농업협정 부속서의 비연계 소득지원에 해당하는 허용보조임. 반면, 직불 규모가 해마다 변동하고 있어 허용보조가 아니라 AMS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쌀 변동 직불에 대한 추가 지원이 요구될 수 있음. 그러나 AMS가 감축되는 상황에서 DDA 농업협상의 결과로 인해 이러한 직불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변동 직불의 소요 규모가 DDA 이행 기간 AMS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AMS로서 변동 직불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의 하향 조정하거나 고정 직불 비중을 확대하여 변동 직불의 감소분을 완화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 따라서 변동 직불을 휴경 의무가 추가된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WTO 체제 아래 농정개혁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허용보조 활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농가소득보장 제도 등 다양한 허용보조 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참 고 문 헌

- 김경덕, 정학균, 송우진, 한우석. 2002. 과일, 과채, 채소, 축산 수급 및 반응함수 추정. M0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환, 박배민, 박준기, 서대석, 허주옥. 2000. 주요 채소, 과일의 수급함수 추정. M0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환, 김혜영. 2004. 논콩 재배사업 및 콩 수매제도의 발전 방안. C2004-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이철현, 안병일, 김성용. 2001. WTO 체제하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방안 연구. R4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한석호, 홍승지. 2003. 주요 양념채소의 DDA 농업협상 파급효과 분석. 농촌경제 제26권 4호.
- 김윤식. 2006. “부분균형모델에서 대체 효과를 고려한 FTA효과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9권 제3호(2006.9). 한국농업경제학회.
- 농림부. 2006.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대응 방향. 협상참고자료.
- 문 조나단. 2005.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미래형 리스크분석. 이레테크.
- 산업자원부. 2001. 산업피해구제제도 개관. 무역위원회.
- 서진교, 임송수, 김상현, 임소영, 이병훈, 이재욱. 2004. DDA 농업분야 Modality 협상 결과분석 및 C/S 작성 방향에 관한 연구. C2004-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진교, 임소영, 김상현, 조규대, 이재욱. 2005a. DDA 농업분야 모델리티 협상 쟁점 분석과 협상 대책. C2005-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진교, 임소영. 2005b.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R4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진근. 2006. 민감품목 선정에 관한 연구의 결론 유도를 위한 검토. 농업통상대책연구협의회 토론회 자료.
- 송주호, 정민국, 김현중, 이현옥, 안병일. 2005. 우유 수급 전망과 조절방안에 관한 연구. R4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정정길, 강혜정, 허주녕. 2005.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R5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 최지현, 이철현, 안병일. 1999. 육류 소비구조의 변화와 전망. 연구보고 R4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민, 장철수. 2006. 밤의 수급 전망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준, 권오상, 임정빈. 2006. WTO/DDA 협상에 따른 원예 산업의 민감품목 분석. 내부 자료.
- 이용선, 심송보. 2006. 농업관측 품목모형 KREI-COMO 2005 개발, 운용. W0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욱, 서진교, 조규대, 서진교, 김상현, 임소영. 2005. 개도국 특별품목 및 특별수입 규제조치 관련 협상 대책. 용역보고서 C2005-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욱. 2005. 「WTO 농업협상의 전개 과정과 평가」. 연구총서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중웅. 1999. 포도 수급 전망과 정책 과제. R4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이재욱, 서진교, 김상현. 2003a.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 방향. 용역보고서 C2003-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김상현. 2003b.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 대응 방향. 정책연구보고 P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임송수. 2003c. 유럽연합의 2003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KREI 농정연구속보 200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서진교, 김상현, 임소영. 2004. 농업협상 기본 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KREI 농정연구속보. 2004-7(제10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김상현, 임소영. 2005. OECD 회원국 농업·농정과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유지 논리개발. 연구보고 C2005-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2006a. DDA 협상 중단의 의미와 전망. KREI 농정연구속보. 제34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2006b. DDA 세부 원칙 초안의 메시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제314호, 2006년 6월.
- 임정빈, 이재욱. 2002.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연구보고 C20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경수, 이병오, 이종인. 2006. 한미 FTA 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한국축산경영학회.
- 정민국, 송우진, 신승렬, Scott Brown, In-Seck Kim. 2005. Quarterly Livestock Model. 토의용자료 M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영일. 2006. 관세화유예기간 연장 이후 쌀정책 과제. 농정연구센터 152회 월례세미나.
- 조규대, 김상현, 서진교, 임소영. 2005.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 분야 협상 전략. 용역보고서 C2005-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덕래, 조재환. 1992. 주요 과실류의 수급 분석 및 전망. 재배면적 반응함수. R2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성열, 김배성, 이병훈. 2004. 농업 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4 운용·개발 연구. W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이재욱, 어명근, 임송수, 임정빈. 2000. 농산물 시장개방이 국내농업에 미친 영향. C2000-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양부, 김명환, 한두봉, 김용택, 이계임, 조덕래, 조재환, 김병률, 김석현, 이재욱, 서진교, 김정기, 김동민, 임정빈. 1993. 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P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2006.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2006년 8월.
- 허덕, 정민국, 권오복, 유철호, 최정섭. 2001.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방안. R4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두봉. 2006. 평점 방식을 활용한 민감품목 선정. 농업통상대책 연구협의회 토론회 자료.
- Alexandraki, K. and H. Lankes. 2004. “The Impact of Preference Erosion on Middle- Income Developing Countries.” IMF Working Paper No. WP/04/169.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878994>
- European Communities[EC]. 2006. “The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s of Major WTO Players.” Monitoring Agri-Trade Policy No. 01-06.
- Farm Subsidy database. <[http://www.ewg.org:16080/farm/progdetail.php?fips=00000&progcode=total\\_cc](http://www.ewg.org:16080/farm/progdetail.php?fips=00000&progcode=total_cc)>
- ICTSD. 2005a. Making Hong Kong a Success: Europe’s Contribution
- \_\_\_\_\_. 2005b. G-20 Proposal On Market Access
- \_\_\_\_\_. 2005c. G-10 Proposal On Market Access
- \_\_\_\_\_. 2005d. G-20 Proposal, Sensitive Products: Selection and Treatment
- \_\_\_\_\_. 2005e. G-20. Review and Clarification of Green Box Criteria. G20/DS/Greenbox.
- \_\_\_\_\_. 2005f. Canada. Green Box: Clarification and Review of Criteria.
- \_\_\_\_\_. 2005g. ACP Proposal In Market Access In Agriculture
- \_\_\_\_\_. 2005h. G-33 Proposal on the modalities for the designation and treatment of any agricultural product as Special Product(SP) by any developing country members, WTO document JOB(05)/304, <http://www.agtradepolicy.org/index.htm>
- \_\_\_\_\_. 2005i.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PRODUCT-SPECIFIC AMS Note by the Secretariat. Revision. TN/AG/S/15/Rev.1.
- \_\_\_\_\_. 2005j. G20 Proposal on Domestic Support.
- \_\_\_\_\_. 2005k. G20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Product-Specific caps in AMS.
- \_\_\_\_\_. 2005l. G20 Green Box Submission.

- ICTSD. 2005m. Canada Green Box Submission.
- \_\_\_\_\_. 2005n. U.S. Proposal for WTO Agriculture Negotiation.
- \_\_\_\_\_. 2005o. EU Conditional Negotiating Proposals. Statement by EU Trade Commissioner Peter Mandelson on the EU Negotiating Position.
- \_\_\_\_\_. 2006a, G-33 Proposal On Article [...] Special Safeguard Mechanism For Developing Countries, WTO document JOB(06)/64
- \_\_\_\_\_. 2006b. G10 Positions on Domestic Support.
- \_\_\_\_\_. 2006c. US. United States Communication on Domestic Support. Annex 2. Domestic Support: The Basis for Exemption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JOB(06)/80.
- \_\_\_\_\_. 2006d. NAMA: Chair Calls for Non-Stop Negotiations to Bring Modalities Within Reach. Bridges Vol. 10 No. 14.
- \_\_\_\_\_. 2006e. United States Communication On Special Products, WTO document JOB(06)/137
- \_\_\_\_\_. 2006f. United States Communication On Special Agricultural Safeguard(SSG) And The Special Safeguard Mechanism(SSM), WTO document JOB(06)/120
- \_\_\_\_\_. 2006g. Thailand Paper on Special Product
- \_\_\_\_\_. 2006h. G20 comments on the Chair's Reference Paper on the Green Box.
- \_\_\_\_\_. 2006i. G20 comments on the Chair's Reference Paper on the Blue Box. Inside US Trade. 2005. "Outcome of Doha Round. WTO Cases Likely to Shape 2007 Farm Bill." September 9, 2005.
- \_\_\_\_\_. 2006. "Brazil to Ask for WTO Cotton Compliance Panel in September." August 18, 2006.
- Kelly, Kenneth. 1988. "The Analysis of Causality in Escape Clause Cases."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7(2):187-207.
- Kwa. Aileen. 2006. "WTO Members Question Process, Yet Again." Focus on the Global South. Available at <http://www.focusweb.org/wto-members-question-process-yet-again.html>
- Lawrence. R. and T. Rosito. 2006. "A New Compensation Mechanism for Preference Erosion in the Doha Round." Prepared for the Blue Sky Conference organized by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t the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Cambridge MA. September 9th 2006. Available at [http://www.cid.harvard.edu/bluesky/papers/Lawrence\\_compensation\\_0609.pdf](http://www.cid.harvard.edu/bluesky/papers/Lawrence_compensation_0609.pdf)

- Mehta. P., P. Kumar and R. Lodha. 2006. "Suspension of Doha Round Talks." Briefing Paper SAFIT 2/2006. CUTS International.
- OECD. 2006. "South-South Trade: Vital for Development." Policy Brief. August 2006.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taoecd/30/50/37400725.pdf>
- Oxfam. 2005. Truth or Consequences: Why the EU and the USA Must Reform Their Subsidies or Pay the Price. Oxfam Briefing Paper 81.
- Schott. Jeffrey. 2004. "Reviving the Doha Round." Speeches, Testimony, Paper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vailable at <http://www.iie.com/publications/papers/paper.cfm?ResearchID=207>
- Steinberg. R. and T. Josling. 2003. "When the Peace Ends: The Vulnerability of EC and US Agricultural Subsidies to WTO Legal Challeng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6(2):369-417.
- TWN[Third World Network]. 2006. "Lamy Outlines Process for 'Mini-Ministerial' This Week." 29 June 2006. Available at <http://www.twinside.org.sg/title2/twninfo441.htm>
- UNCTAD. 2003. "An Analysis of the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under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Blue Box. UNCTAD/DITC/COM/2003/6.
- \_\_\_\_\_. 2006. "Indicators Entering the Formulation of the 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 Available at [http://www.unctad.org/sections/ldc\\_dir/docs/ldc\\_highlight001evi\\_en.pdf](http://www.unctad.org/sections/ldc_dir/docs/ldc_highlight001evi_en.pdf)
- USDA. NASS. Agricultural Statistic 2005. <<http://www.usda.gov/nass/pubs/agr05/acro05.htm>>
- \_\_\_\_\_. ERS. <[http://www.ers.usda.gov/briefing/farmincome/data/GP\\_T7.htm](http://www.ers.usda.gov/briefing/farmincome/data/GP_T7.htm)>
- \_\_\_\_\_. Farm Income and Cost. <[http://www.ers.usda.gov/briefing/farmincome/data/GP\\_T7.htm](http://www.ers.usda.gov/briefing/farmincome/data/GP_T7.htm)>
- USTR. 2005. U.S. Proposal -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www.ustr.gov](http://www.ustr.gov)
- Washington Trade Daily(WTD). 2006a. "A Crucial Mandelson-Schwab Meeting" Monday.
- \_\_\_\_\_. 2006b. "The New 'G-6' Takes Shape." Oct. 23. 2006.
- Washington Trade Daily(WTD). 2006c. "Lamy Seeks May Meeting After Ministerial Fails to Advance Doha Round.
- \_\_\_\_\_. 2006d. "Staunch US Left Lamy No Choice" July 27. 2006.
- World Trade Online. 2005. "G-20 Draft Elements for discussion on Domestic Support".
- Westhoff. Pat. "Boxed In? Implications of WTO Rules and Rulings for Farm Policy" Presented in the Conference on the 21st Century Farm Polic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ctober 30-31. 2005. Fargo. North Dakota. Available at <http://www.ag.ndsu.nodak.edu/capts/documents/WESTHOFF-farmpolwto1005.pdf>

- Young, Robert. 2005. "Stay the Course. No New Taxes, Thousand Points of Light." Presented in the Conference on the 21st Century Farm Polic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ctober 30-31, 2005. Fargo, North Dakota. Available at <http://www.ag.ndsu.nodak.edu/capts/documents/ROBERTYOUNG--Staythecourse.pdf>
- WTO. 2003. Negotiations of Agriculture First Draft of Modalities for the Further Commitments.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1/REV.1)
- \_\_\_\_\_. 2004. United States-Subsidies on Upland Cotton. WT/DS267/R. Available at <http://docsonline.wto.org/>
- \_\_\_\_\_. 2005a, Report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Ambassador Falconer, to the TNC, WTO document JOB(05)/306
- \_\_\_\_\_. 2005b.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Note by the Secretariat. Addendum.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S/13/Add.1
- \_\_\_\_\_. 2005c. De Minimis Support. Note by the Secretariat. Committee on Agriculture. TN/AG/S/16.
- \_\_\_\_\_. 2005d. Blue Box Support. Note by the Secretaria.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S/14.
- \_\_\_\_\_. 2005e. United States-Subsidies on Upland Cotton. WT/DS267/AB/R.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267abr\\_e.doc](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267abr_e.doc)
- \_\_\_\_\_. 2005f.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S/21.
- \_\_\_\_\_. 2005g. Doha Work Programm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WTO document WT/MIN(05)/DEC
- \_\_\_\_\_. 2005h. Report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Ambassador Falconer to the TNC. WTO document JOB(05)/306
- \_\_\_\_\_. 2006a. Chair's Reference Paper: Special Prodcuts. [www.wto.org](http://www.wto.org)
- \_\_\_\_\_. 2006b. Chair's Reference Paper: Blue Box.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Domestic Support.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refpapers\\_apr06\\_e.htm](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refpapers_apr06_e.htm)>
- \_\_\_\_\_. 2006c. Chair's Reference Paper: Green Box.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Domestic Support
- \_\_\_\_\_. 2006d. Agriculture Domestic Support Simulation: European Communitie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ot for Further Circulation. 16. May. 2006.
- \_\_\_\_\_. 2006e. Chair's Reference Paper: Sensitive Prodcuts. [www.wto.org](http://www.wto.org)
- \_\_\_\_\_. 2006f. Chair's Reference Paper: Special Safeguard Mechanism. [www.wto.org](http://www.wto.org)

## 부록 1

### 관세 감축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계측: 부분균형 모형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해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 쇠고기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계측하였음. 여기에서는 김윤식(2006)이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품목별 관세율이 감축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계측하였음.

먼저 관세 감축 전의 가격과 관세 감축 후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P_i^0 = (1 + t^0)P_w$$

$$P_i^1 = (1 + t^1)P_w$$

단  $P_i^0$ 는 감축 전 수입가격,  $P_i^1$ 은 감축 후 수입가격,  $t^0$ 는 초기 관세율,  $t^1$ 은 감축 후 관세율,  $P_w$ 는 국제가격임.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면 이로 인한 수입의 가격 변화율은 다음과 같음.

$$\frac{P_i^1 - P_i^0}{P_i^0} = \frac{(1 + t^1)P_w - (1 + t^0)P_w}{(1 + t^0)P_w} = \frac{t^1 - t^0}{1 + t^0}$$

수입에 대한 국내 수요함수를 선형 근사화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함.

$$Q_i = a_i - b_i P_i$$

단  $Q_i$ 는 수입 수요량이며  $a_i$ ,  $b_i$ 는 양수

이때 관세 감축으로 인한 수입의 국내 수요량 변화는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frac{Q_i^1 - Q_i^0}{Q_i^0} &= -b_i \left( \frac{P_i^1 - P_i^0}{P_i^0} \right) = - \left( b_i \frac{P_i^0}{P_i^1} \right) \left( \frac{P_i^1 - P_i^0}{P_i^0} \right) \\ &= \eta_i \left( \frac{P_i^1 - P_i^0}{P_i^0} \right) = \eta_i \left( \frac{t^1 - t^0}{1 + t^0} \right) \end{aligned}$$

단  $\eta_i$ 는 수입에 대한 수요 탄성치 임.

국내산의 공급함수와 수요함수가 아래와 같다고 했을 때,

$$Q_d = a + bP$$

$$Q_s = c + dP$$

수입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의 수요 변화는 다음과 같음.

$$\frac{\partial Q_d}{Q_d} = \eta_c \left( \frac{P_i^1 - P_i^0}{P_i^0} \right) = \eta_c \left( \frac{t^1 - t^0}{1 + t^0} \right)$$

여기에서  $Q_d$ 는 국내산 수요량,  $\eta_c$ 는 교차탄성치 임.

현재의 균형 공급량을  $Q^0$ 라고 한다면 새로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음.

$$Q_d = a - bP - \eta_c \left( \frac{t^1 - t^0}{1 + t^0} \right) Q_0$$

$$Q_s = c + dP$$

이를 풀면,

$$\begin{bmatrix} b & 1 \\ -d & 1 \end{bmatrix} \begin{bmatrix} P \\ Q \end{bmatrix} = \begin{bmatrix} a - \eta_c \left( \frac{t^1 - t^0}{1 + t^0} \right) Q_0 \\ c \end{bmatrix}$$

$$\begin{aligned} \begin{bmatrix} P \\ Q \end{bmatrix} &= \begin{bmatrix} b & 1 \\ -d & 1 \end{bmatrix}^{-1} \begin{bmatrix} a - \eta_c \left( \frac{t^1 - t^0}{1 + t^0} \right) Q_0 \\ c \end{bmatrix} \\ &= \frac{1}{b+d} \begin{bmatrix} 1 & -1 \\ d & b \end{bmatrix} \begin{bmatrix} a - \eta_c \left( \frac{t^1 - t^0}{1 + t^0} \right) Q_0 \\ c \end{bmatrix} \\ &= \frac{1}{b+d} \begin{bmatrix} 1 & -1 \\ d & b \end{bmatrix} \begin{bmatrix} a - c - \eta_c \left( \frac{t^1 - t^0}{1 + t^0} \right) Q_0 \\ ad + bc - d\eta_c \left( \frac{t^1 - t^0}{1 + t^0} \right) Q_0 \end{bmatrix} \end{aligned}$$

따라서 국내산의 가격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P_d^1 &= P_d^0 - \eta_c \left( \frac{t^1 - t^0}{1 + t^0} \right) \left( \frac{Q_d^0}{b+d} \right) \\ &= P_d^0 - \eta_c \left( \frac{t^1 - t^0}{1 + t^0} \right) \left( \frac{P_d^0}{\eta + \epsilon} \right) \end{aligned}$$

단  $P_d^0$ 는 관세 감축 전 국내산 가격,  $P_d^1$ 은 관세 감축 후 국내산 가격,  $\eta$ 는 수요 탄성치,  $\epsilon$ 은 공급탄성치 임.

관세 감축으로 인한 국내산의 가격 변화율은 아래와 같이 표현됨.

$$\frac{P_d^1 - P_d^0}{P_d^0} = - \left( \frac{\eta_c}{\eta + \epsilon} \right) \left( \frac{t^1 - t^0}{1 + t^0} \right)$$

국내산의 공급량 변화율은 다음과 같음.

$$\frac{Q_s^1 - Q_s^0}{Q_s^0} = -\epsilon \left( \frac{\eta_e}{\eta + \epsilon} \right) \left( \frac{t^1 - t^0}{1 + t^0} \right)$$

계산된 수요량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을 기준 연도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곱하면 관세 감축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변화량이 계산됨.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감소하게 되므로 초과 수요량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수입량의 증가분으로 볼 수 있음.

## 부록 2

## 탄성치 가정에 활용한 선행연구

## (1) 고추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 0.15, 0.20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36	최양부 등(1993)
	0.31	김명환 등(2000)
	0.37	김경덕 등(2002)
	0.36	김병률 등(2001)
	0.34	김병률 등(2003)
	0.5~0.64	이용선 등(2006)
수요탄성치	0.4	어명근 등(2005)
	-0.22	최양부 등(1993)
	-0.19	김명환 등(2000)
	-0.08	김경덕 등(2002)
	-0.21	김병률 등(2001)

## (2) 마늘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25, 0.30, 0.35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38	최양부 등(1993)
	0.26	김명환 등(2000)
	0.36	김경덕 등(2002)
	0.14	김병률 등(2001)
	0.73	김병률 등(2003)
	0.12~0.19	이용선 등(2006)
수요탄성치	0.4	어명근 등(2005)
	-0.30	최양부 등(1993)
	-0.27	김명환 등(2000)
	-0.16	김경덕 등(2002)
	-0.30	김병률 등(2001)

## (3) 딸기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05, 0.10, 0.15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44	KREI 내부자료
수요탄성치	-0.14	KREI 내부자료

## (4) 양파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25, 0.30, 0.35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71	김명환 등(2000)
	0.72	김경덕 등(2002)
	0.29	김병률 등(2001)
	0.65	김병률 등(2003)
	0.28~0.35	이용선 등(2006)
	0.4	어명근 등(2005)
수요탄성치	-0.45	김명환 등(2000)
	-0.46	김경덕 등(2002)
	-0.44	김병률 등(2001)

## (5) 토마토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0, 0.15, 0.20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56	KREI 내부자료
수요탄성치	-0.18	KREI 내부자료

## (6) 감귤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25, 0.3, 0.35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7, 1, 1.3	시나리오
	0.08	김명환 등(2000)
	0.16	조덕래 등(1992)
	0.08	어명근 등(2005)
수요탄성치	-0.75	김명환 등(2000)
	-1.06	김경덕 등(2002)

## (7) 사과

구 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2, 0.3, 0.4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7, 1, 1.3	시나리오
	0.08	김명환 등(2000)
	0.19	조덕래 등(1992)
	0.08	어명근 등(2005)
수요탄성치	-0.25	김명환 등(2000)
	-0.45	김경덕 등(2002)

## (8) 포도

구 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5, 0.2, 0.25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1.6, 1.9, 2.2	시나리오
	0.06	김명환 등(2000)
	0.43	조덕래 등(1992)
	0.25	이중웅(1999)
	0.08	어명근 등(2005)
수요탄성치	-0.64	김명환 등(2000)
	-0.56	김경덕 등(2002)
	-0.15	이중웅(1999)

## (9) 배

구 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 0.2, 0.3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8, 1.1, 1.4	시나리오
	0.18	조덕래 등(1992)
	0.08	어명근 등(2005)
수요탄성치	-0.32	김명환 등(2000)
	-0.56	김경덕 등(2002)

## (10) 복숭아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 0.2, 0.3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7, 1, 1.3	시나리오
수요탄성치	0.3, 0.4, 0.5	시나리오

## (11) 인삼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0, 0.15, 0.20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1.02	KREI 내부자료
수요탄성치	-0.72	KREI 내부자료

## (12) 땅콩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0, 0.15, 0.20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44	KREI 내부자료
수요탄성치	-0.13	KREI 내부자료

## (13) 참깨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 0.2, 0.3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21	최양부 등(1993)
	0.4	어명근 등(2005)
수요탄성치	-0.3	최세균 등(2000)

## (14) 쇠고기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4~0.6	정경수 등(2006)
공급탄성치	0.50	정경수 등(2006)
	0.99	허덕 등(2001)
	1.25	최양부 등(1993)
수요탄성치	-0.6735	정경수 등(2006)
	-0.97	허덕 등(2001)
	-0.86	최양부 등(1993)

## (15) 돼지고기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 0.2, 0.3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28	최정섭 등(2002)
수요탄성치	-0.38	정민국 등(2005)
	-0.35	이계임 등(1999)

## (16) 닭고기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 0.2, 0.3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2, 0.3, 0.4	시나리오
수요탄성치	-0.41	정민국 등(2005)
	-0.29	이계임 등(1999)

## (17) 대두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 0.2, 0.3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44	김명환, 김혜영(2004)
수요탄성치	-0.347	김명환, 김혜영(2004)

## (18) 감자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 0.2, 0.3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317	이용선, 심송보(2006), 봄, 여름, 가을 감자의 평균 탄성치
수요탄성치	-0.347	KREI 내부자료

## (19) 보리

구분	계측치	출처
교차탄성치	0.1, 0.2, 0.3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1.39	조성열, 김배성, 이병훈(2004)
수요탄성치	-0.297	조성열, 김배성, 이병훈(2004)

## (20) 팔

구 분	계 측 치	출 처
교차탄성치	0.1, 0.2, 0.3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176	조성열, 김배성, 이병훈(2004)
수요탄성치	-0.347	김명환, 김혜영(2004)

## (21) 밤

구 분	계 측 치	출 처
교차탄성치	0.3, 0.5, 0.7	시나리오
공급탄성치	0.33	이상민, 장철수(2006)
수요탄성치	-0.86	이상민, 장철수(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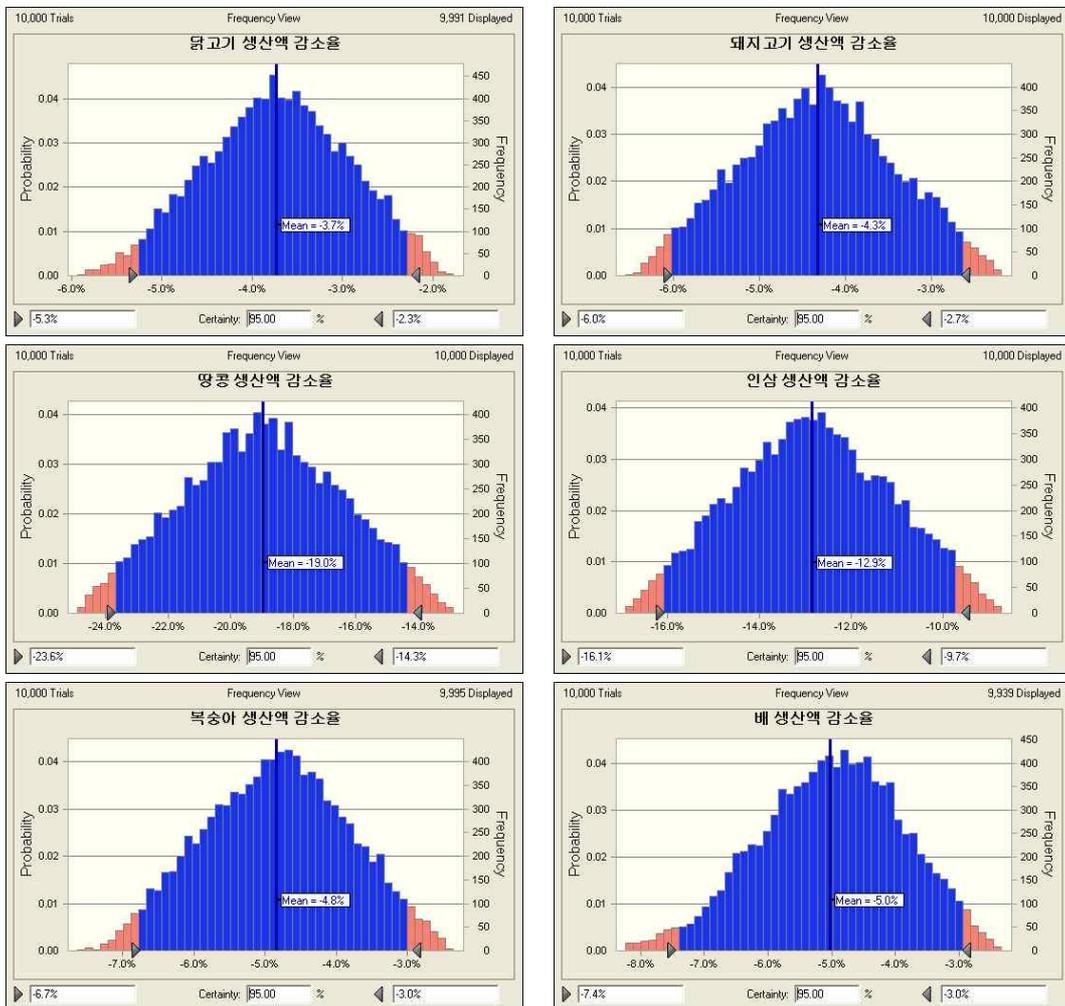
주:1) 공급탄성치는 재배면적반응계수로 대체하였음.

2) 수요탄성치는 가공용 수출가격에 대한 가공용 수요탄성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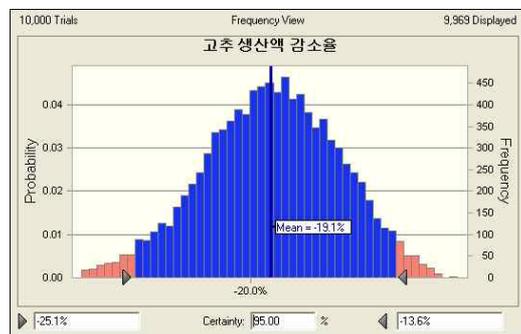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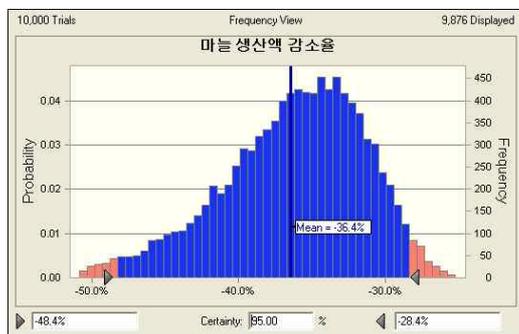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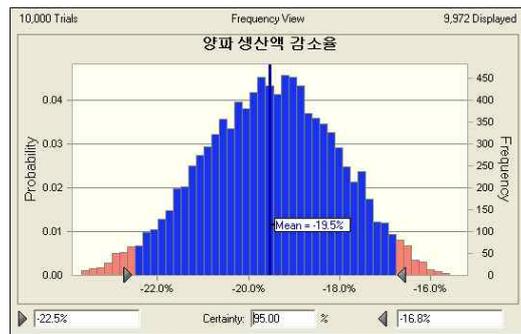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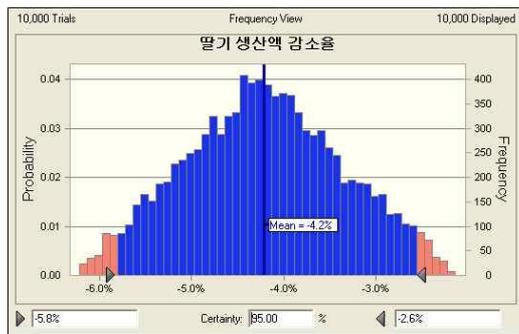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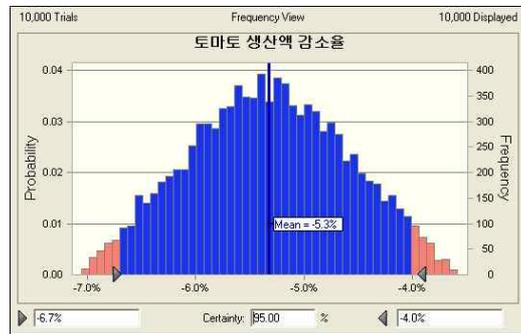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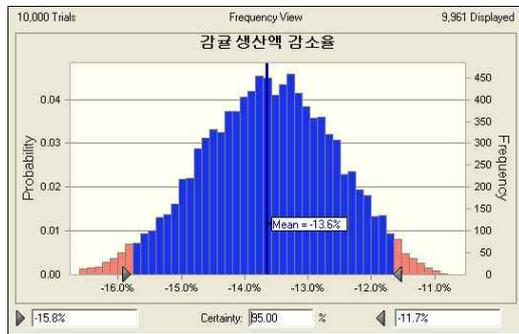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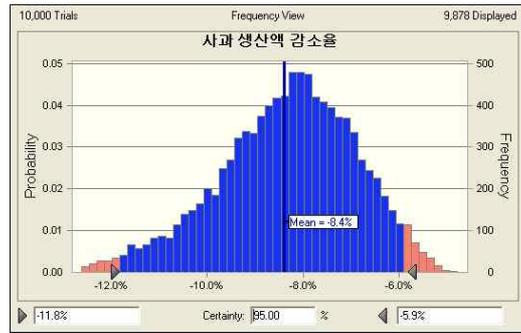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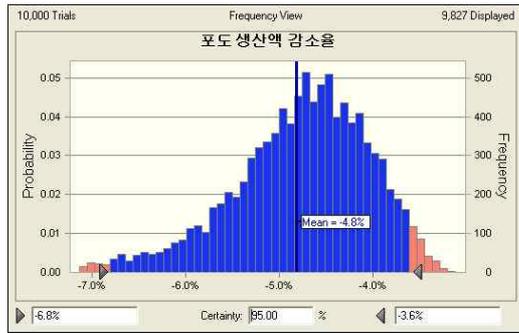
### 부록 3

## 부분균형 모형에 의한 시장접근 분야 모의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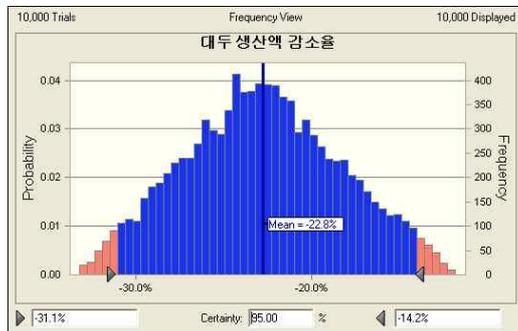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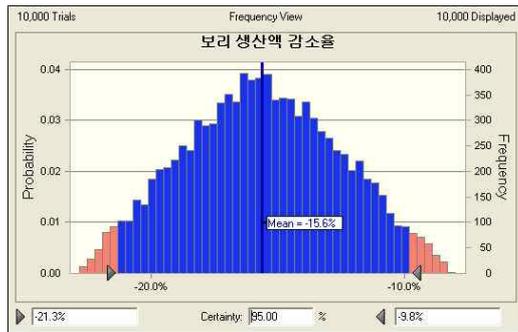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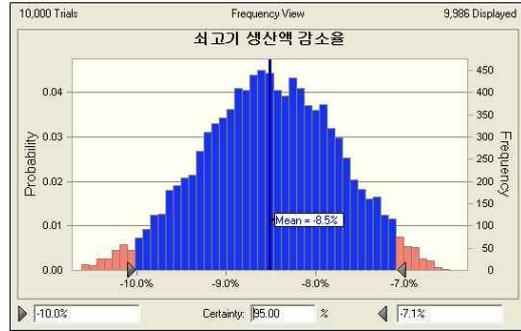
### 1. 일반품목 관세상한 적용: 선진국



<계속>



<계속>



부표 3-1. 일반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선진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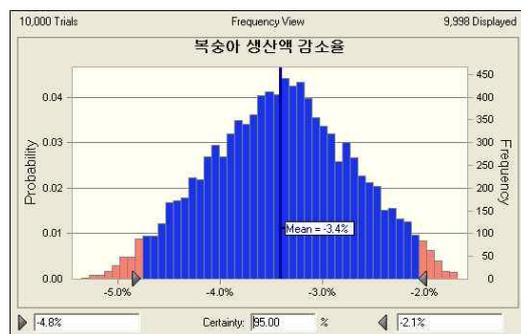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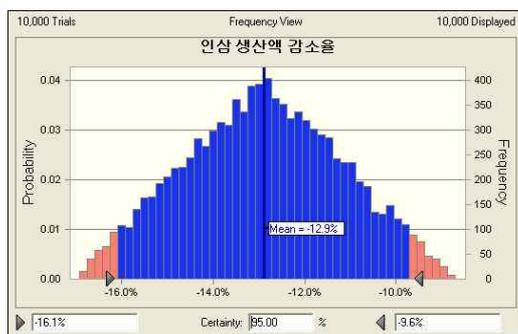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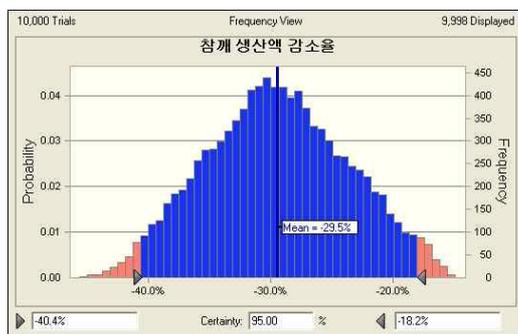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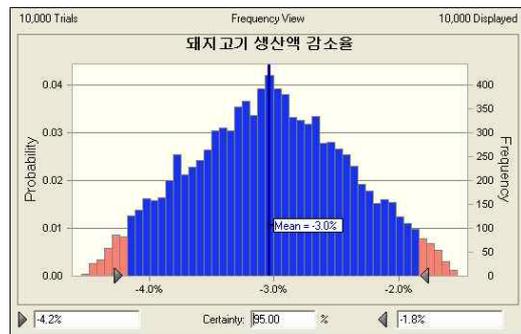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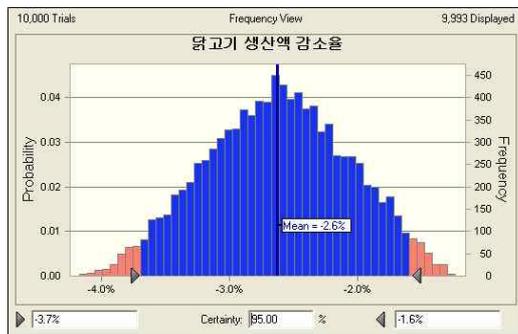
품목	최소	평균	최대
밤	-10.0	-7.1	-4.3
팥	-6.2	-4.1	-2.1
보리	-14.1	-9.5	-4.7
감자	-8.0	-5.4	-2.7
대두	-11.0	-7.4	-3.7
닭고기	-1.5	-0.9	-0.4
돼지고기	-1.5	-1.0	-0.5
쇠고기	-5.9	-4.1	-2.5
참깨	-11.6	-7.3	-3.3
땅콩	-8.1	-6.1	-4.1
인삼	-8.9	-6.7	-4.5
복숭아	-3.9	-2.4	-1.1
배	-3.8	-2.1	-0.5
포도	-3.7	-2.4	-0.5
사과	-5.4	-3.3	-0.8
감귤	-9.2	-5.6	-1.2
토마토	-2.6	-1.9	-1.3
딸기	-1.9	-1.3	-0.7
양파	-9.0	-6.8	-4.4
마늘	-16.2	-10.8	-5.2
고추	-9.0	-6.1	-3.5

부표 3-2. 일반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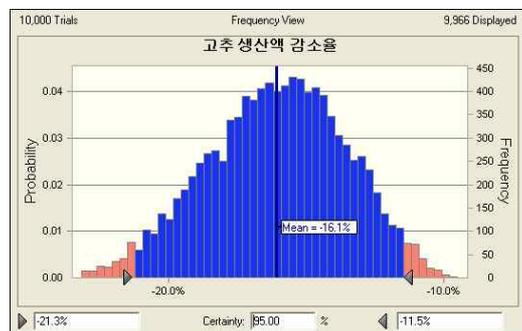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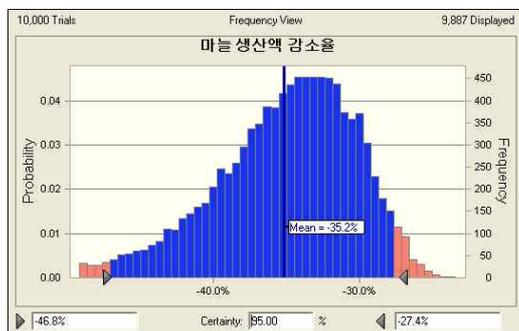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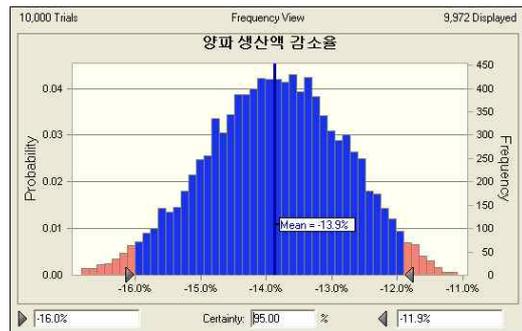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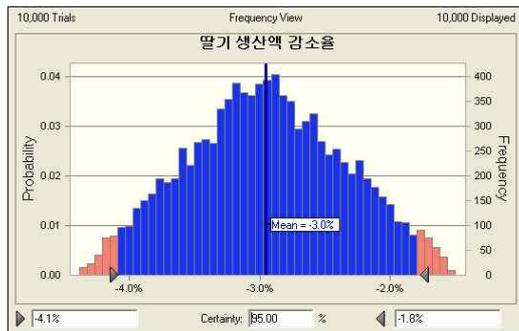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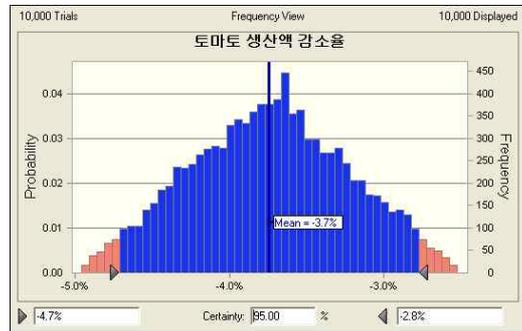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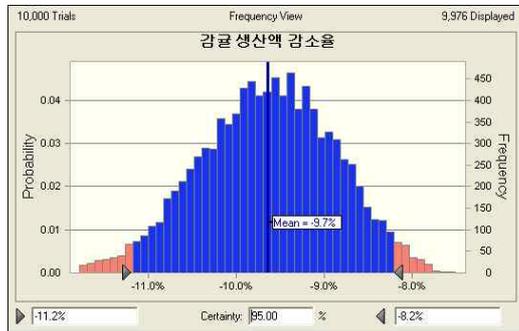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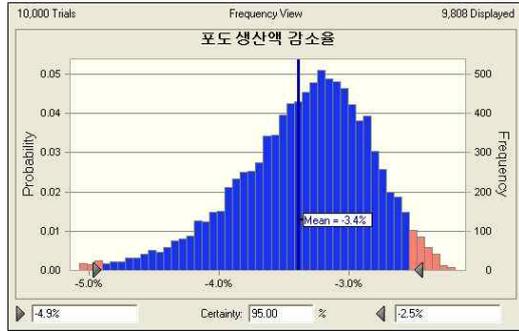
단위: %

품목	최소	평균	최대
밤	-30.2	-21.6	-13.1
팥	-35.3	-23.5	-11.9
보리	-10.2	-6.8	-3.4
감자	-25.4	-17.0	-8.6
대두	-25.0	-16.7	-8.4
닭고기	-5.2	-2.9	-1.3
돼지고기	-5.2	-3.4	-1.7
쇠고기	-7.2	-4.6	-3.1
참깨	-40.0	-24.2	-11.0
땅콩	-18.3	-13.8	-9.2
인삼	-8.8	-6.6	-4.4
복숭아	-4.6	-2.5	-1.1
배	-8.8	-3.0	-1.1
포도	-10.5	-2.5	-1.0
사과	-15.0	-5.3	-2.2
감귤	-15.7	-8.5	-5.1
토마토	-4.6	-3.5	-2.3
딸기	-4.4	-3.0	-1.5
양파	-19.7	-13.7	-9.4
마늘	-62.6	-28.7	-16.0
고추	-23.7	-13.9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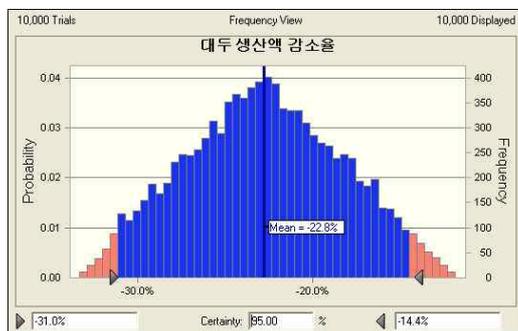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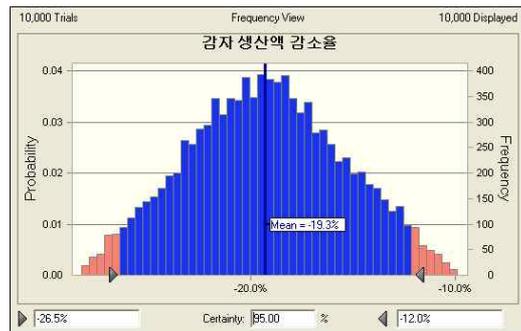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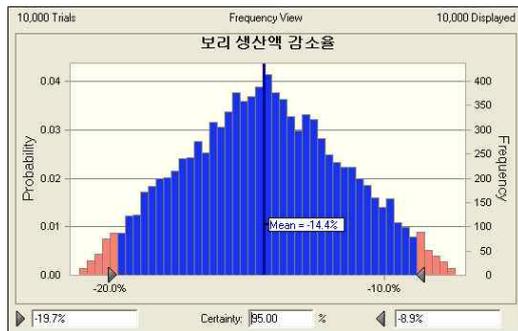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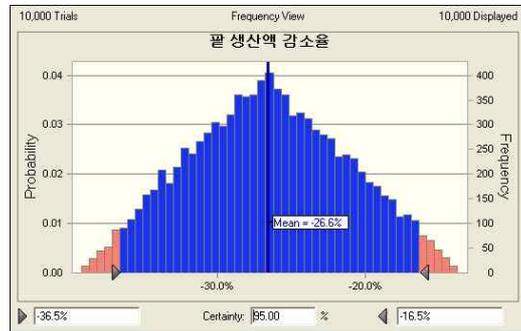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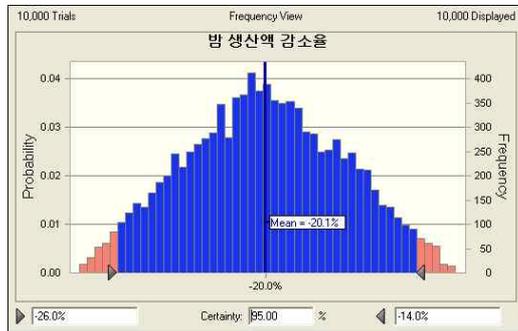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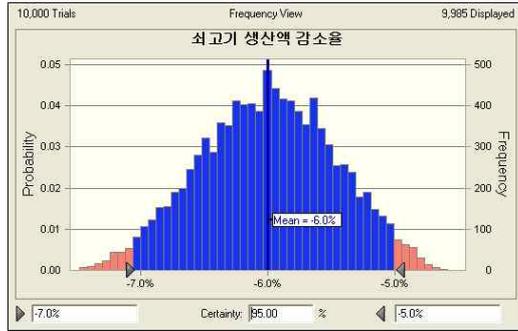
## 2.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선진국



<계속>



<계속>



부표 3-3.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선진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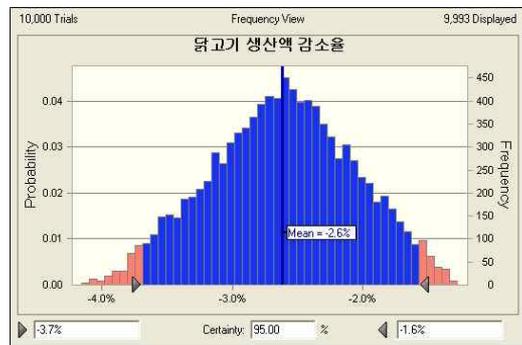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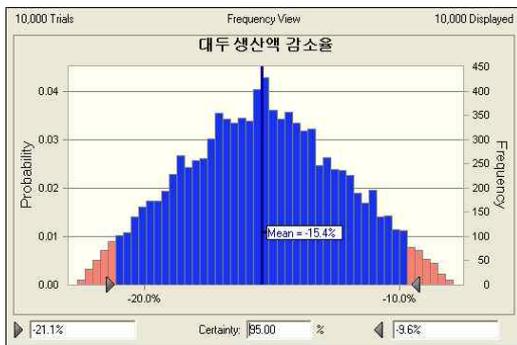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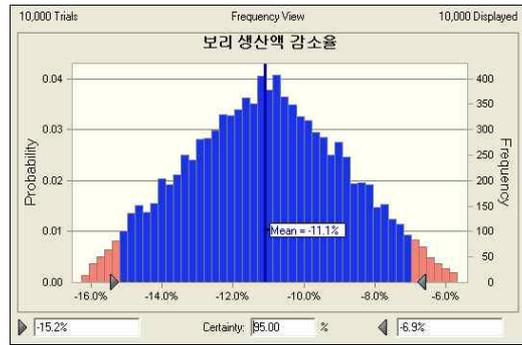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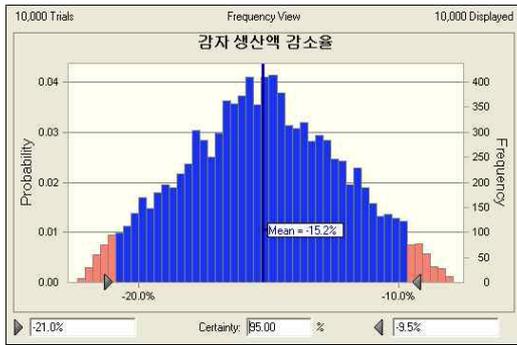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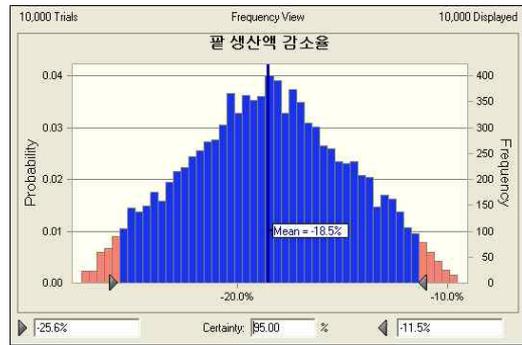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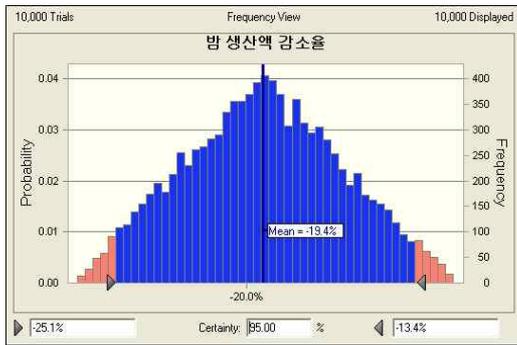
품목	최소	평균	최대
밤	-7.2	-5.2	-3.1
팥	-6.2	-4.1	-2.1
보리	-13.0	-8.7	-4.4
감자	-7.2	-4.8	-2.4
대두	-11.0	-7.4	-3.7
닭고기	-1.0	-0.6	-0.3
돼지고기	-1.0	-0.7	-0.3
쇠고기	-4.0	-2.8	-1.8
참깨	-12.2	-7.3	-3.3
땅콩	-6.1	-4.6	-3.1
인삼	-8.9	-6.7	-4.5
복숭아	-2.7	-1.7	-0.8
배	-2.7	-1.5	-0.3
포도	-2.6	-1.7	-0.3
사과	-3.8	-2.3	-0.5
감귤	-6.2	-3.9	-0.7
토마토	-1.8	-1.4	-0.9
딸기	-1.4	-0.9	-0.5
양파	-6.3	-4.7	-3.2
마늘	-15.5	-10.4	-4.5
고추	-7.7	-5.1	-3.0

부표 3-4.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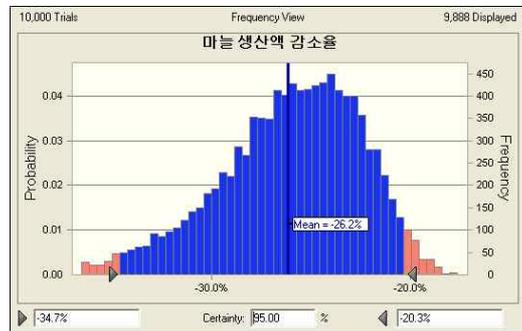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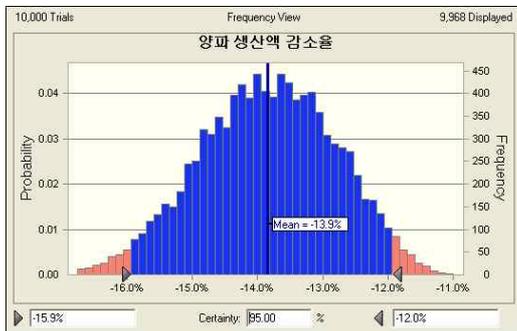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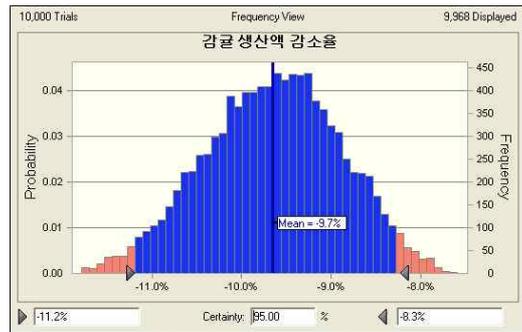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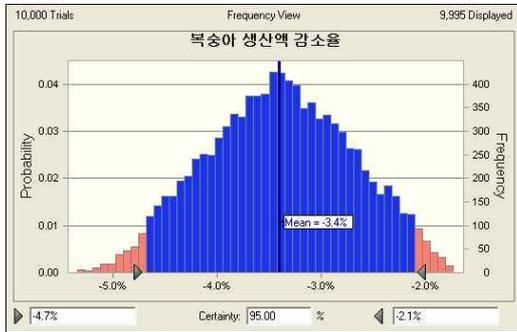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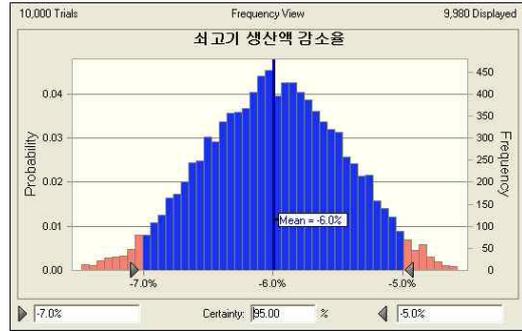
단위: %

품목	최소	평균	최대
밥	-21.9	-15.7	-9.5
쌀	-35.1	-23.5	-12.0
보리	-9.3	-6.3	-3.2
감자	-22.7	-15.2	-7.6
대두	-25.1	-16.7	-8.5
닭고기	-3.7	-2.0	-0.9
돼지고기	-3.6	-2.4	-1.2
쇠고기	-5.1	-3.3	-2.2
참깨	-40.7	-24.0	-11.3
땅콩	-13.8	-10.4	-7.0
인삼	-8.8	-6.6	-4.4
복숭아	-3.2	-1.7	-0.8
배	-7.7	-2.1	-0.7
포도	-6.9	-1.7	-0.7
사과	-11.8	-3.7	-1.6
감귤	-10.7	-6.0	-3.6
토마토	-3.2	-2.4	-1.6
딸기	-3.1	-2.1	-1.0
양파	-13.8	-9.6	-6.8
마늘	-62.4	-27.6	-14.6
고추	-20.7	-11.6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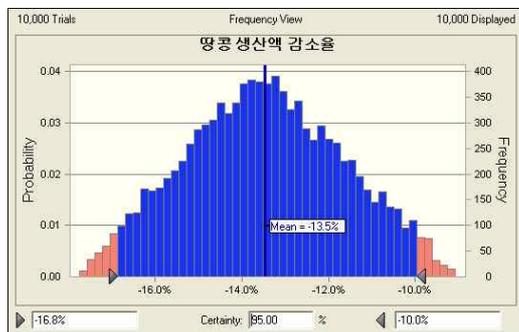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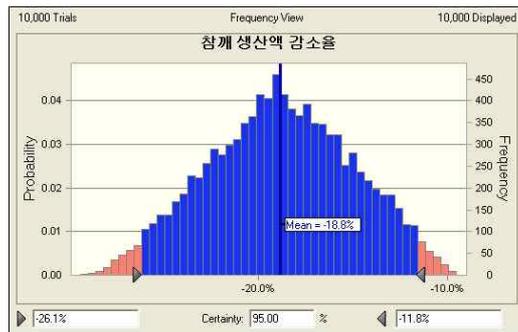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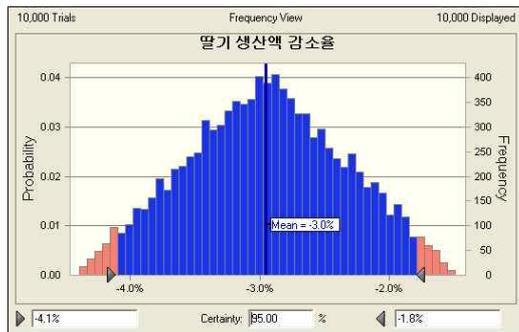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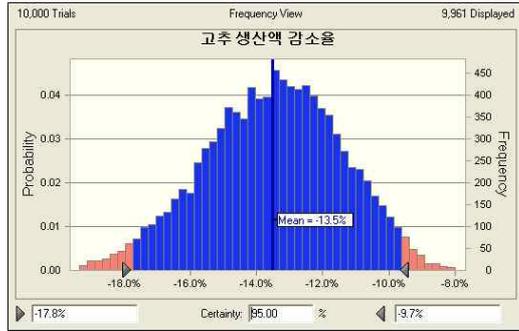
### 3.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선진국



<계속>



<계속>



부표 3-5.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선진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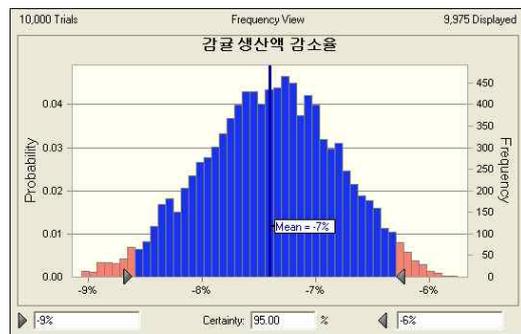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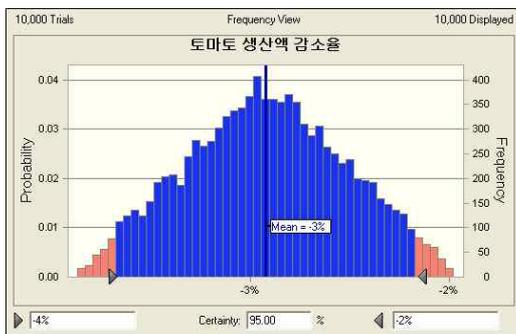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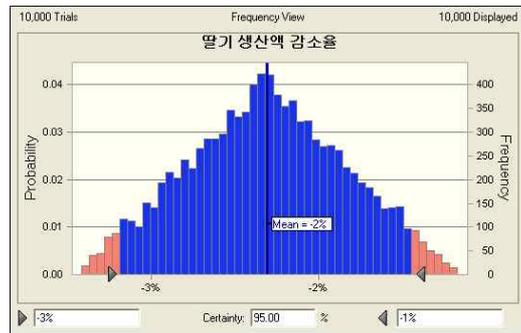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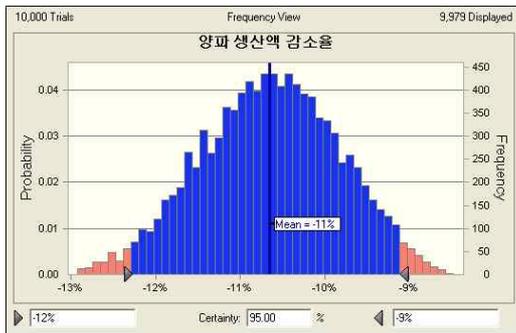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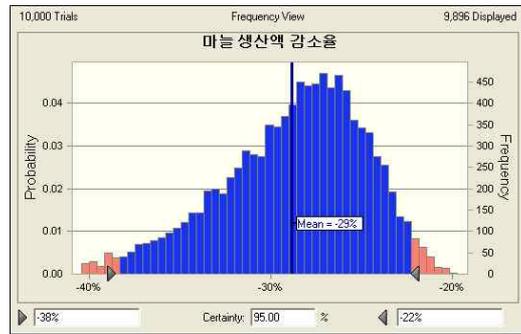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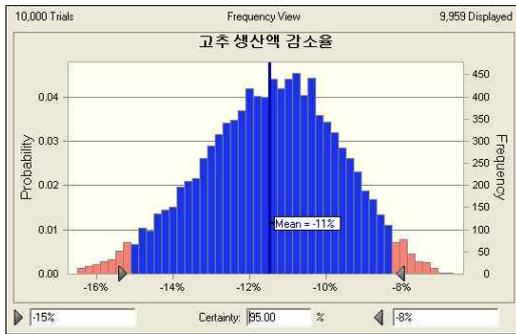
품목	최소	평균	최대
밤	-7.0	-5.0	-3.0
팥	-4.3	-2.8	-1.4
보리	-9.9	-6.6	-3.3
감자	-5.6	-3.8	-1.9
대두	-7.3	-4.9	-2.4
닭고기	-1.0	-0.6	-0.3
돼지고기	-1.0	-0.7	-0.3
쇠고기	-4.1	-2.8	-1.8
참깨	-7.5	-4.5	-2.1
땅콩	-5.6	-4.2	-2.8
인삼	-5.4	-4.1	-2.7
복숭아	-2.8	-1.7	-0.8
배	-2.7	-1.5	-0.3
포도	-2.6	-1.7	-0.3
사과	-3.7	-2.3	-0.6
감귤	-6.3	-3.9	-0.7
토마토	-1.8	-1.4	-0.9
딸기	-1.4	-0.9	-0.5
양파	-6.3	-4.7	-3.1
마늘	-11.4	-7.5	-3.6
고추	-6.2	-4.3	-2.6

부표 3-6.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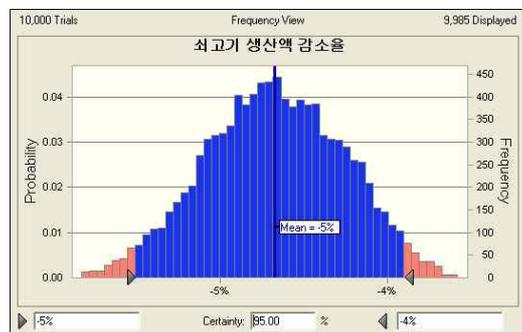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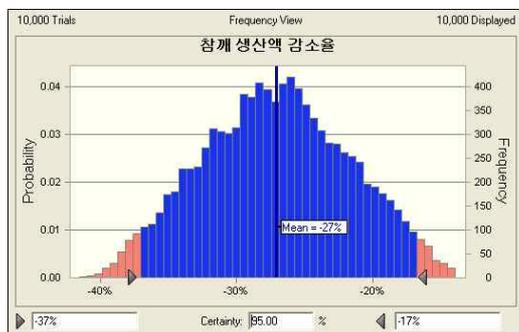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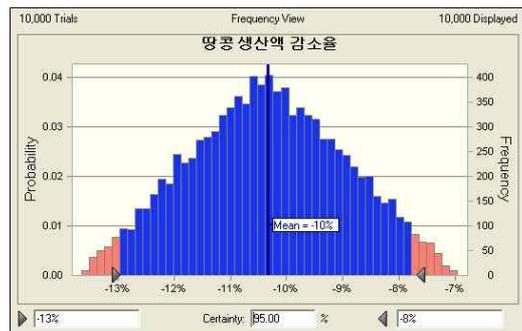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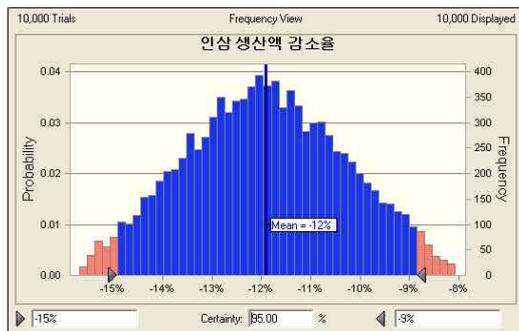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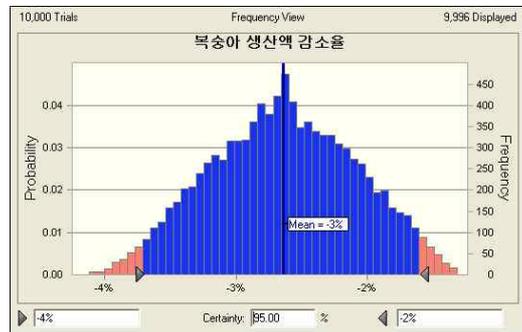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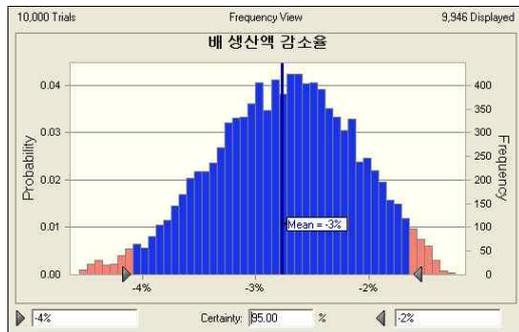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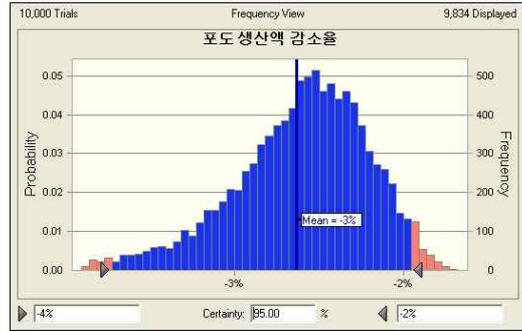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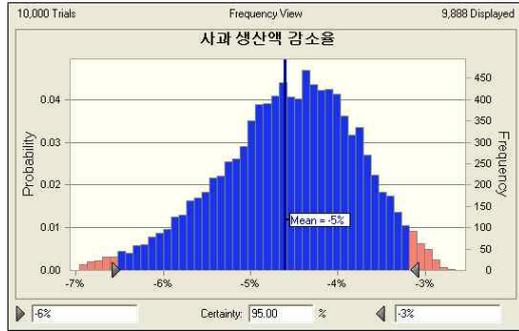
단위: %

품목	최소	평균	최대
밤	-21.1	-15.1	-9.2
팥	-24.2	-16.2	-8.2
보리	-7.1	-4.8	-2.4
감자	-17.8	-11.9	-6.1
대두	-16.5	-11.1	-5.6
닭고기	-3.6	-2.0	-0.9
돼지고기	-3.6	-2.4	-1.2
쇠고기	-5.1	-3.3	-2.2
참깨	-25.1	-15.0	-7.0
땅콩	-12.8	-9.6	-6.4
인삼	-5.3	-4.0	-2.7
복숭아	-3.3	-1.7	-0.8
배	-6.6	-2.1	-0.7
포도	-7.7	-1.7	-0.7
사과	-10.3	-3.7	-1.6
감귤	-10.9	-6.0	-3.6
토마토	-3.2	-2.4	-1.6
딸기	-3.1	-2.1	-1.0
양파	-13.9	-9.6	-6.6
마늘	-42.6	-20.1	-10.8
고추	-17.3	-9.7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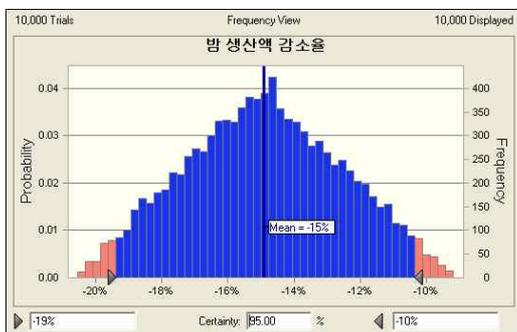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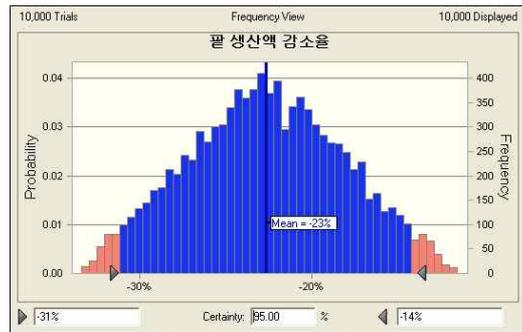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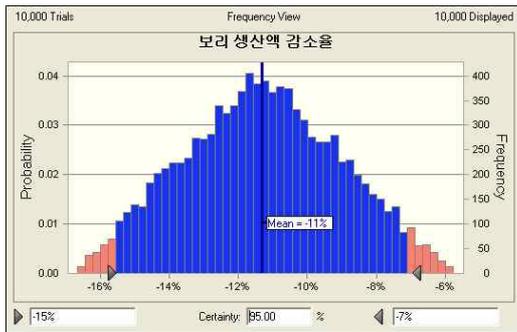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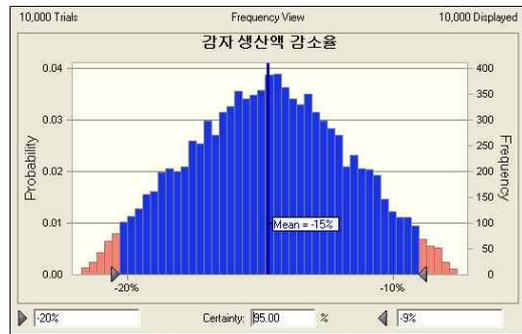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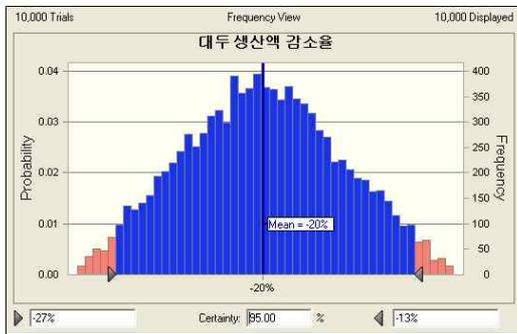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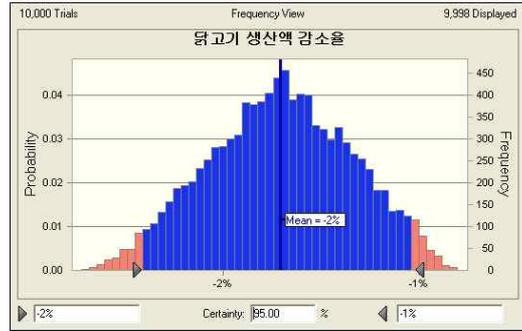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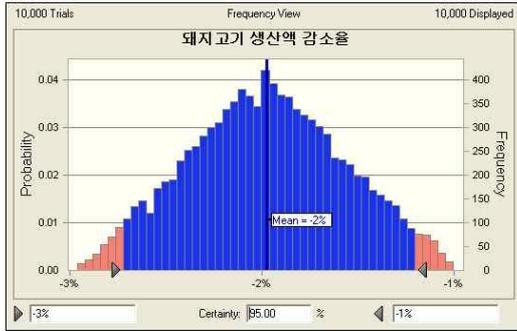
#### 4. 일반품목 관세상한 적용: 개도국



<계속>



<계속>



부표 3-7. 일반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개도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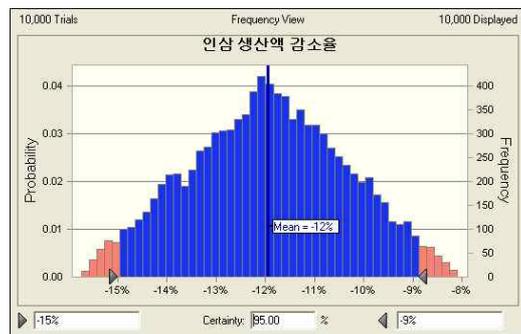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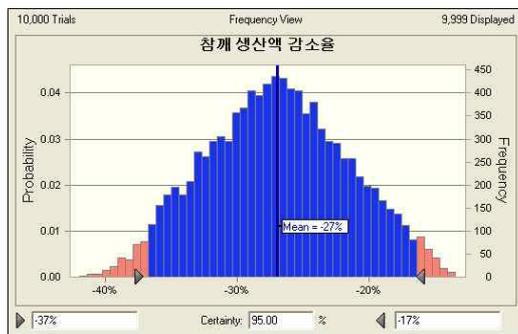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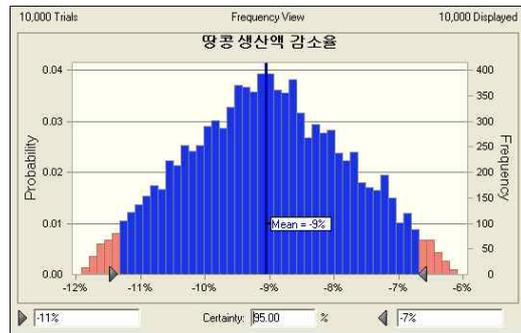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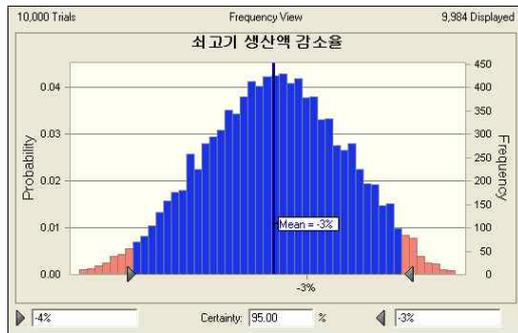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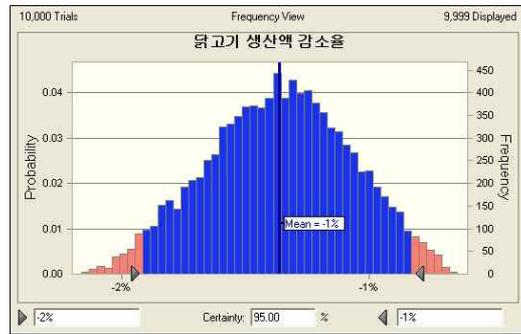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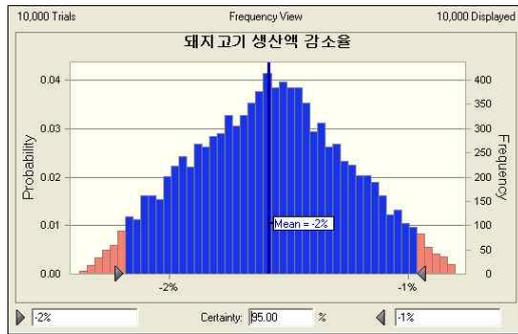
품목	최소	평균	최대
밤	-5	-4	-2
팥	-5	-3	-2
보리	-10	-7	-3
감자	-5	-4	-2
대두	-10	-6	-3
닭고기	-1	0	0
돼지고기	-1	0	0
쇠고기	-3	-2	-1
참깨	-11	-7	-3
땅콩	-4	-3	-2
인삼	-8	-6	-4
복숭아	-2	-1	-1
배	-2	-1	0
포도	-2	-1	0
사과	-3	-2	0
감귤	-5	-3	-1
토마토	-1	-1	-1
딸기	-1	-1	0
양파	-5	-4	-2
마늘	-12	-8	-4
고추	-5	-4	-2

부표 3-8. 일반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개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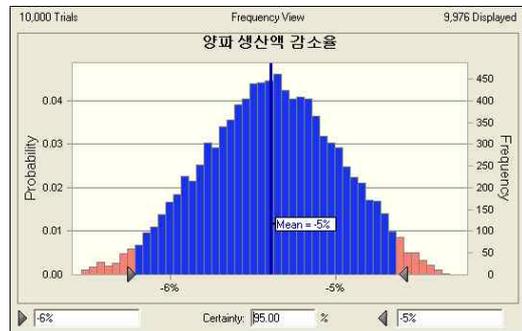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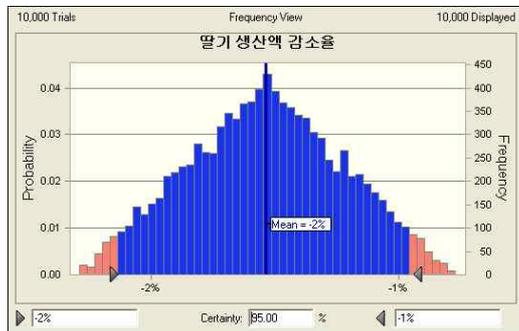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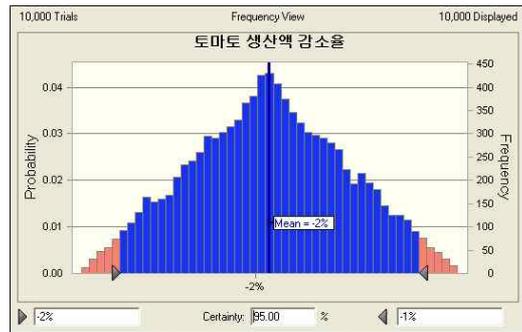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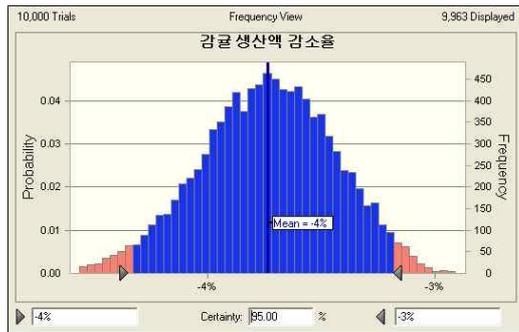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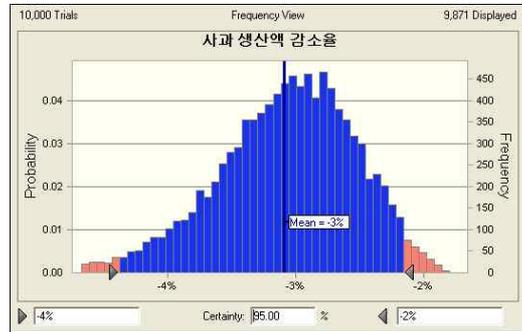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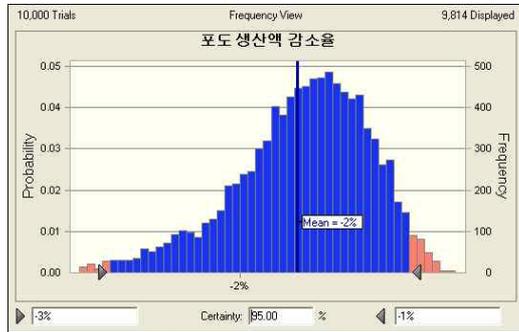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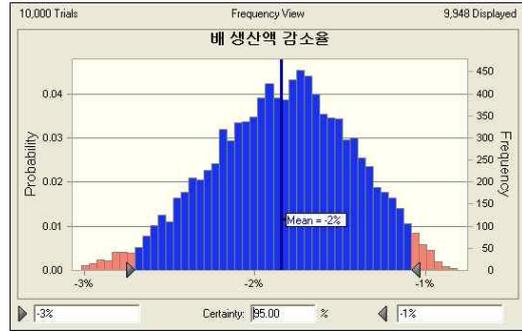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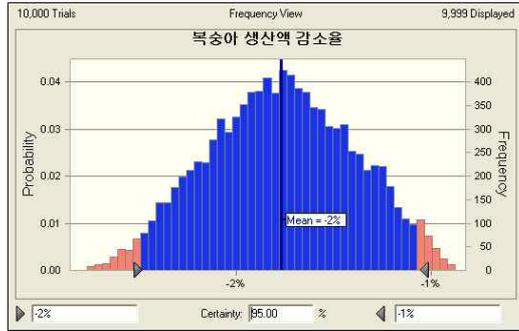
단위: %

품목	최소	평균	최대
밤	-16	-12	-7
팥	-30	-20	-10
보리	-7	-5	-2
감자	-17	-11	-6
대두	-22	-15	-7
닭고기	-2	-1	-1
돼지고기	-2	-2	-1
쇠고기	-4	-3	-2
참깨	-36	-22	-11
땅콩	-10	-7	-5
인삼	-8	-6	-4
복숭아	-2	-1	-1
배	-5	-2	-1
포도	-5	-1	-1
사과	-9	-3	-1
감귤	-9	-5	-3
토마토	-3	-2	-1
딸기	-2	-2	-1
양파	-11	-7	-5
마늘	-46	-22	-12
고추	-14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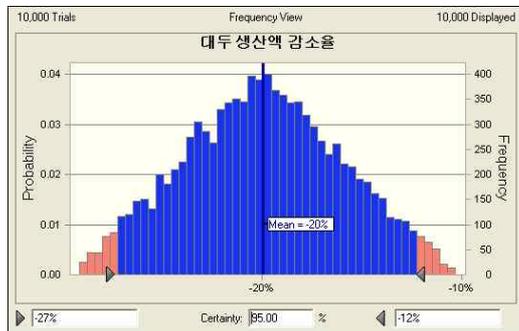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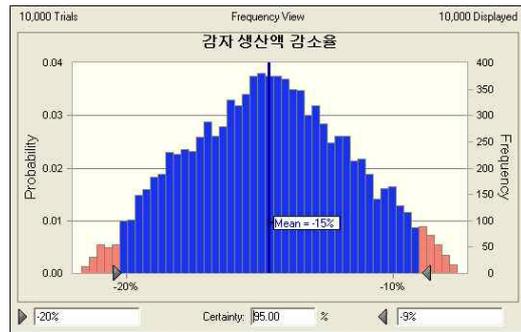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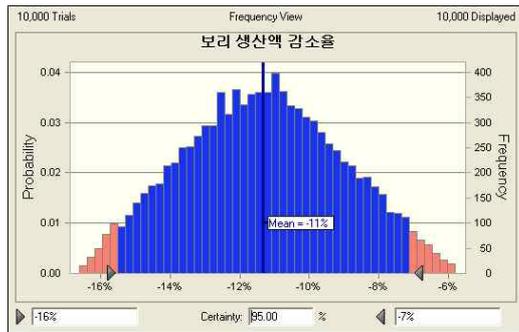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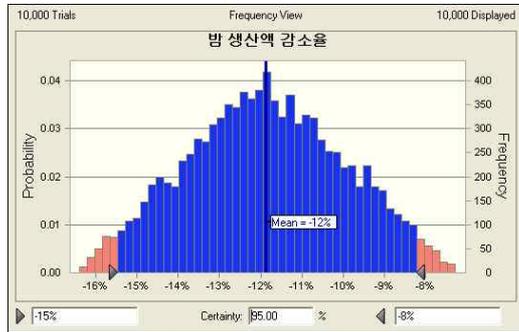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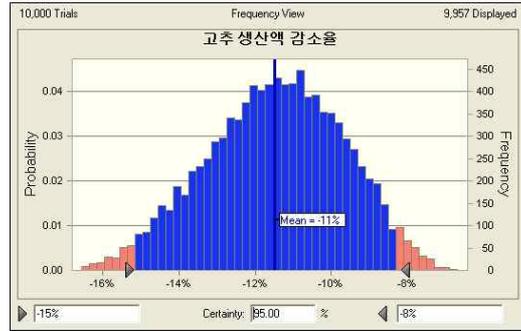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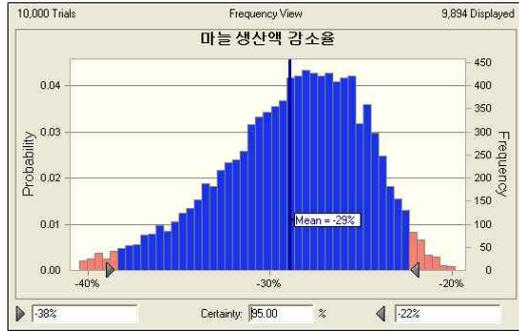
### 5.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개도국



<계속>



<계속>



부표 3-9.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개도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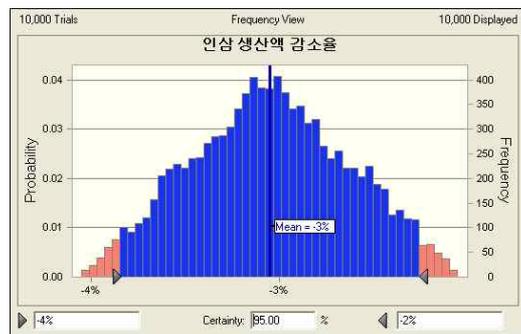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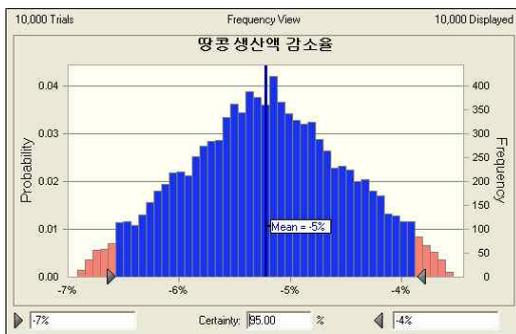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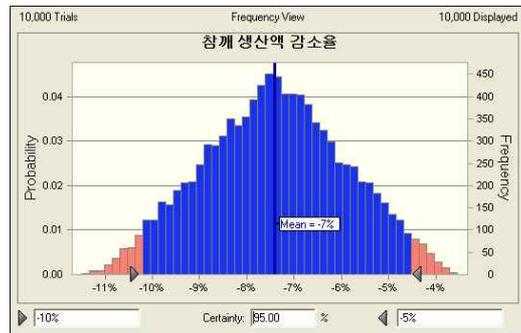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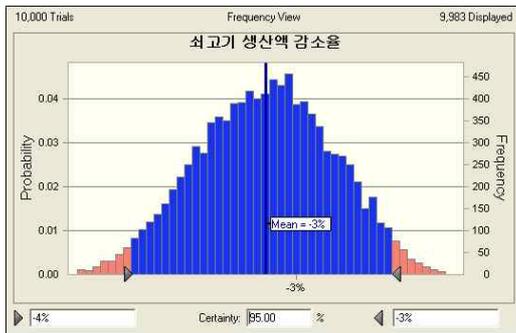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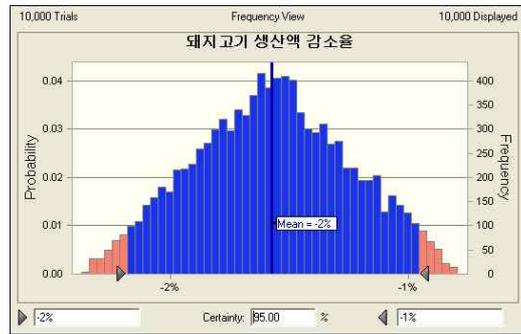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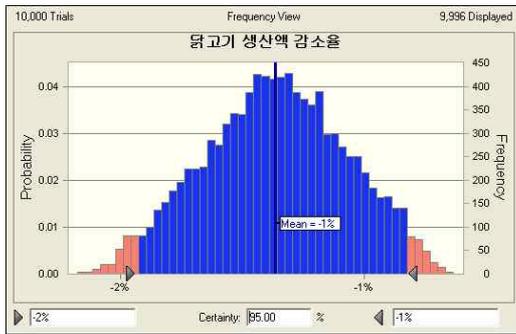
품목	최소	평균	최대
밤	-4	-3	-2
팥	-5	-4	-2
보리	-10	-7	-3
감자	-5	-4	-2
대두	-10	-6	-3
닭고기	-1	0	0
돼지고기	-1	0	0
쇠고기	-2	-1	-1
참깨	-11	-7	-3
땅콩	-4	-3	-2
인삼	-8	-6	-4
복숭아	-1	-1	0
배	-1	-1	0
포도	-1	-1	0
사과	-2	-1	0
감귤	-2	-1	0
토마토	-1	-1	0
딸기	-1	0	0
양파	-2	-2	-1
마늘	-12	-8	-4
고추	-5	-4	-2

부표 3-10.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개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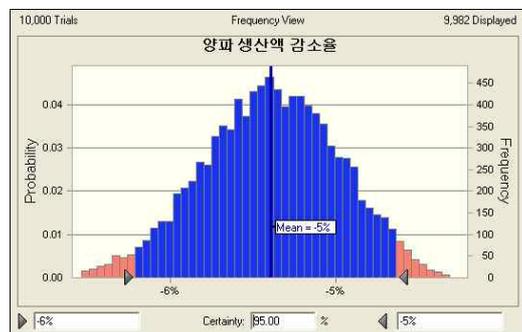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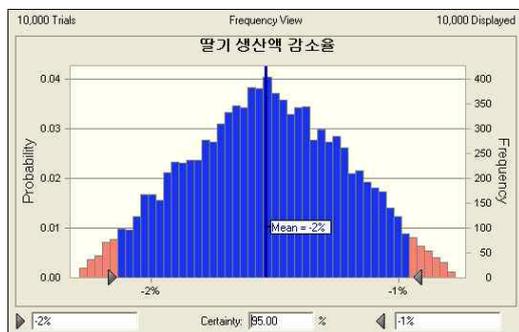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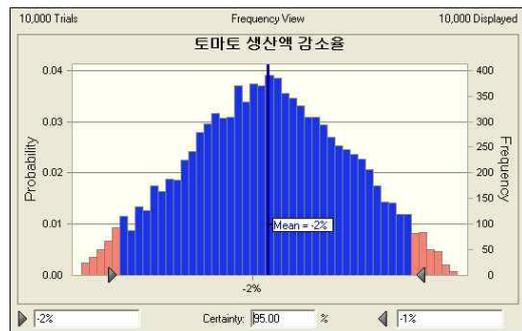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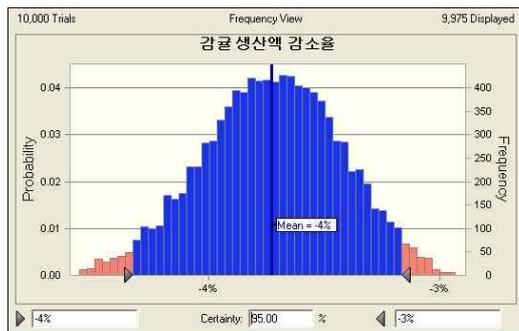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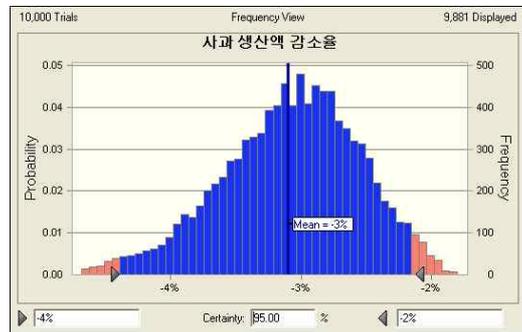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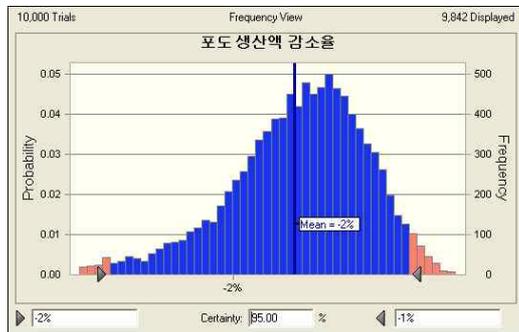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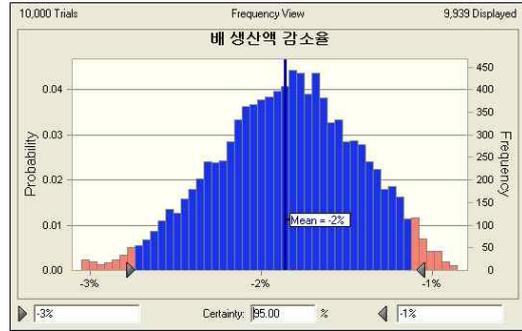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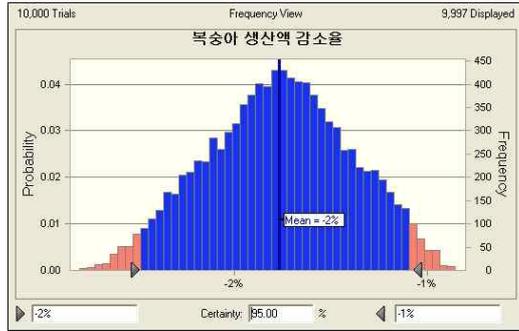
단위: %

품목	최소	평균	최대
밤	-13	-9	-6
팥	-30	-20	-10
보리	-7	-5	-2
감자	-17	-11	-6
대두	-22	-15	-7
닭고기	-2	-1	0
돼지고기	-2	-1	-1
쇠고기	-3	-2	-1
참깨	-37	-22	-10
땅콩	-8	-6	-4
인삼	-8	-6	-4
복숭아	-2	-1	0
배	-4	-1	0
포도	-4	-1	0
사과	-5	-2	-1
감귤	-4	-2	-1
토마토	-2	-1	-1
딸기	-2	-1	-1
양파	-5	-4	-3
마늘	-44	-22	-12
고추	-14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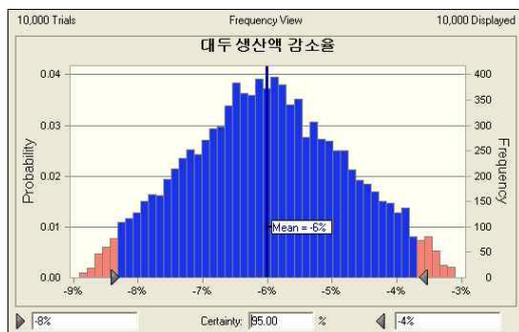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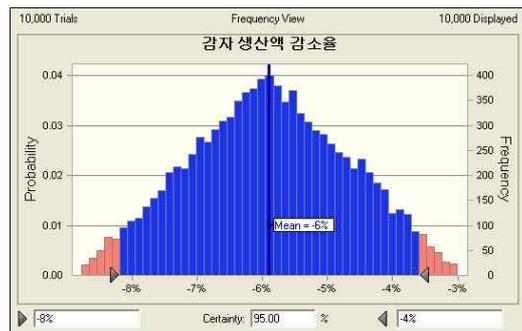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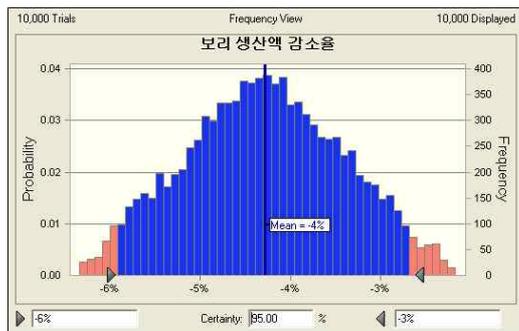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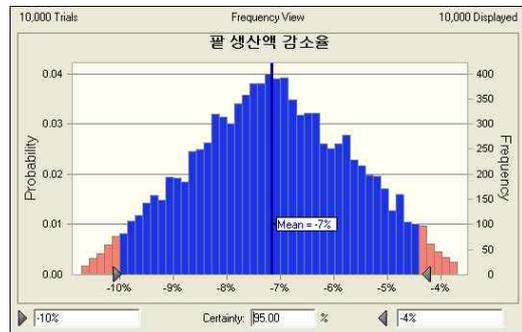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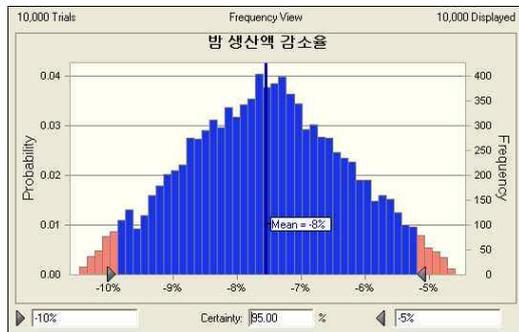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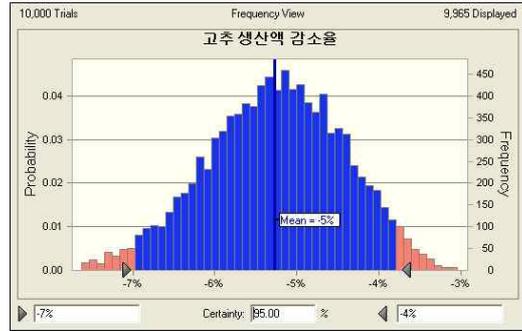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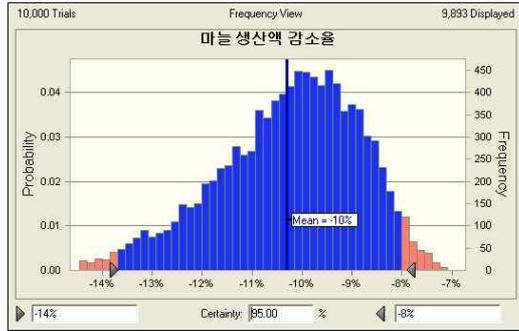
## 6.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개도국



<계속>



<계속>



부표 3-11.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가정 아래 생산량 변화율: 개도국

단위: %

품목	최소	평균	최대
쌀	-3	-2	-1
쌀	-2	-1	-1
보리	-4	-3	-1
감자	-2	-1	-1
대두	-3	-2	-1
닭고기	-1	0	0
돼지고기	-1	0	0
쇠고기	-2	-1	-1
참깨	-3	-2	-1
땅콩	-2	-2	-1
인삼	-2	-2	-1
복숭아	-1	-1	0
배	-1	-1	0
포도	-1	-1	0
사과	-2	-1	0
감귤	-2	-1	0
토마토	-1	-1	0
딸기	-1	0	0
양파	-2	-2	-1
마늘	-4	-3	-1
고추	-2	-2	-1

부표 3-12. 민감품목 관세상한 미적용 가정 아래 가격 변화율: 개도국

단위: %

품목	최소	평균	최대
밤	-8	-6	-3
팥	-9	-6	-3
보리	-3	-2	-1
감자	-7	-5	-2
대두	-6	-4	-2
닭고기	-2	-1	0
돼지고기	-2	-1	-1
쇠고기	-3	-2	-1
참깨	-10	-6	-3
땅콩	-5	-4	-2
인삼	-2	-2	-1
복숭아	-2	-1	0
배	-4	-1	0
포도	-4	-1	0
사과	-6	-2	-1
감귤	-4	-2	-1
토마토	-2	-1	-1
딸기	-2	-1	-1
양파	-5	-4	-3
마늘	-17	-8	-4
고추	-7	-4	-2

## 부록 4

## 양자협상 대상국에서 수입한 실적: 품목별

## ① 오렌지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60,369 (95%)	75,234 (98%)	85,101 (97%)	109,367 (97%)	130,853 (96%)	115,006 (96%)
남아프리카	1,494	556	1,047	2,870	5,026	2,336
뉴질랜드	130	387	130	12	125	0
호주	1,369	963	1,773	308	680	2,131
중국	0	35	36	23	28	104
합계	63,361	77,200	88,088	112,631	136,744	120,377

주:1) 오렌지의 수입액은 HS 번호 0805.10임.

2) 미국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② 그레이프프루트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1,384 (90%)	1,246 (81%)	1,621 (90%)	1,874 (98%)	1,760 (100%)	2,217 (100%)
이스라엘	160	287	187	30	0	0
합계	1,543	1,533	1,808	1,904	1,760	2,217

주:1) 그레이프의 수입액은 HS 번호 0805.40임.

2) 미국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③ 옥수수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262,366 (28%)	366,647 (40%)	113,002 (11%)	41,722 (4%)	782,078 (55%)	312,488 (26%)
브라질	0	146,563	137,205	96,113	264,550	46,532
아르헨티나	7,963	104,674	93,963	692	39,874	32,782
중국	659,816 (71%)	298,771 (32%)	636,764 (65%)	907,698 (87%)	238,645 (17%)	819,787 (68%)
합계	933,160	925,474	983,480	1,048,365	1,431,563	1,212,640

주:1) 옥수수의 수입액은 HS 번호 1005임.

2) 미국과 중국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④ 대두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291,594 (89%)	259,655 (90%)	271,123 (85%)	322,157 (81%)	373,703 (78%)	235,241 (60%)
브라질	27,538 (8%)	21,170 (7%)	37,839 (12%)	62,232 (16%)	91,720 (19%)	135,341 (35%)
중국	8,447 (3%)	8,514 (3%)	8,309 (3%)	9,459 (2%)	14,075 (3%)	20,457 (5%)
캐나다	312 (0.1%)	25 (0.01%)	0	0	776 (0.2%)	361 (0.1%)
합계	328,237	289,401	317,294	399,203	480,300	391,449

주:1) 대두의 수입액은 HS 번호 1201.00임.

2) 미국과 브라질, 중국, 캐나다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⑤ 대두유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634 (4%)	469 (4%)	649 (5%)	661 (5%)	864 (6%)	1,019 (15%)
네덜란드	853	1,358	1,309	1,504	787	110
말레이시아	2,490	3,069	3,649	3,484	4,035	5,093
스웨덴	4,684	2,620	3,459	3,519	3,908	3,709
싱가포르	2,944	1,765	2,101	2,419	2,886	2,989
일본	932	964	815	716	1,372	1,076
중국	1	114	190	175	181	428
합계	14,481	11,940	13,187	14,027	15,674	16,832

주:1) 대두유의 수입액은 HS 번호 1516.20임.

2) 미국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⑥ 쇠고기 수입액(I)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18,142 (78%)	16,885 (69%)	38,635 (63%)	85,155 (71%)	823 (1%)	0
캐나다	311	311	587	1,547	0	66
뉴질랜드	38	38	55	599	2,907	4,740
호주	4,100 (18%)	7,196 (29%)	22,425 (36%)	32,651 (27%)	74,361 (95%)	131,138 (94%)
합계	23,315	24,435	61,726	119,969	78,092	139,299

주:1) 쇠고기의 수입액은 HS 번호 0201임.

2) 미국과 호주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⑦ 쇠고기 수입액(II)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473,660 (68%)	303,237 (66%)	553,219 (70%)	728,083 (77%)	94,580 (20%)	3,805 (0.7%)
캐나다	61,308	19,553	31,639	15,882	209	26
뉴질랜드	25,832	21,607	38,251	64,643	127,579 (27%)	162,206 (30%)
호주	130,599 (19%)	115,076 (25%)	163,008 (21%)	142,393 (15%)	241,432 (52%)	357,189 (67%)
합계	699,650	462,858	786,391	951,359	466,178	533,706

주:1) 쇠고기의 수입액은 HS 번호 0202임

2)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⑧ 돼지고기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14,197 (6%)	11,606 (7%)	14,903 (7%)	13,776 (7%)	38,347 (11%)	133,156 (23%)
캐나다	22,922 (9%)	22,521 (13%)	30,367 (15%)	30,147 (16%)	37,970 (10%)	82,173 (14%)
칠레	0	0	6,328 (3%)	30,147 (16%)	54,625 (16%)	79,155 (13%)
벨기에	2,741	28,467	52,223	35,152	51,913	54,280
프랑스	43,816	15,802	314	15,738	39,003	62,901
덴마크	62,425	31,536	33,573	18,944	27,661	35,522
합계	250,424	171,611	205,913	183,937	333,611	591,058

주:1) 돼지고기의 수입액은 HS 번호 0203임.

2) 미국과 캐나다, 칠레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⑨ 유장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12,364 (49%)	11,790 (41%)	9,060 (39%)	10,741 (43%)	11,329 (43%)	19,905 (61%)
네덜란드	3,113	3,532	3,170	2,134	2,206	1,317
뉴질랜드	1,064	1,283	1,292	1,194	1,705	1,379
프랑스	4,777	6,006	4,400	5,375	5,455	2,987
핀란드	299	1,010	1,035	761	1,295	2,220
호주	1,179	237	1,088	802	1,470	2,967
합계	25,236	28,567	23,237	25,035	26,334	32,786

주: 1) 유장의 수입액은 HS 번호 0404.10임.

2) 미국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⑩ 포도주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31 (4%)	3 (0.4%)	26 (1.9%)	4 (0.3%)	5 (0.3%)	2 (0.1%)
독일	11	11	12	42	13	29
스페인	223	78	156	189	112	54
이탈리아	16	39	22	57	93	206
칠레	0	0	0	22	19	16
프랑스	494 (62%)	667 (83%)	1,150 (83%)	1,090 (74%)	1,623 (84%)	2,385 (87%)
호주	6 (0.7%)	2 (0.2%)	5 (0.4%)	43 (2.9%)	22 (1.1%)	28 (1.0%)
합계	803	805	1,391	1,466	1,929	2,742

주: 1) 포도주의 수입액은 HS 번호 2204.10임.

2) 미국과 프랑스, 호주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⑪ 포도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2,314 (18%)	1,108 (12%)	1,771 (17%)	4,075 (23%)	3,787 (22%)	4,434 (19%)
칠레	10,348 (82%)	8,438 (88%)	8,673 (83%)	13,656 (77%)	13,133 (78%)	19,158 (81%)
캐나다	0	0	0	0	0	24 (0.1%)
합계	12,662	9,546	10,443	17,732	16,921	23,616

주:1) 포도의 수입액은 HS 번호0806.10임.

2) 미국과 칠레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⑫ 사과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일본	8 (100%)	135 (100%)	11	0	0	0
합계	8	135	11	0	0	0

주:1) 사과의 수입액은 HS 번호0808.10임.

2) 일본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⑬ 유채유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캐나다	0	0	5,788 (87%)	8,875 (87%)	11,650 (100%)	7,874 (98%)
합계	0	0	6,641	10,169	11,650	8,006

주:1) 유채유의 수입액은 HS 번호 1514.11임.

2) 캐나다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⑭ 대맥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캐나다	2,663 (17%)	5 (0.03%)	1,715 (12%)	3,413 (25%)	0	0
호주	7,401 (47%)	15,325 (85%)	12,488 (88%)	10,151 (73%)	10,721 (97%)	11,329 (95%)
중국	38	30	0	294	377	613
합계	15,732	18,024	14,202	13,858	11,099	11,977

주: 1) 맥주맥의 수입액은 HS 번호 1003임.

2)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⑮ 맥주맥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국	38	30	0	294	377	613
캐나다	2,663 (17%)	5 (0%)	1,715 (12%)	3,413 (25%)	0	0
호주	7,401 (47%)	15,325 (85%)	12,488 (88%)	10,151 (73%)	10,721 (97%)	11,329 (95%)
합계	15,732	18,024	14,202	13,858	11,099	11,977

주: 1) 맥주맥의 수입액은 HS 번호 1003.00임.

2)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⑯ 양고기 수입액(I)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뉴질랜드	324 (100%)	248 (76%)	0	0	0	0
호주	0	78 (24%)	491 (100%)	439 (100%)	0	0
합계	324	326	491	439	0	0

주: 1) 양고기의 수입액은 HS 번호 0104.20임.

2)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⑰ 양고기 수입액(II)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호주	90 (100%)	69 (100%)	233 (100%)	622 (100%)	432 (100%)	496 (100%)
합계	90	69	233	622	432	496

주:1) 양고기의 수입액은 HS 번호 0204.50임.

2) 호주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⑱ 천연꿀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뉴질랜드	49 (8%)	325 (32%)	10 (1.4%)	255 (21%)	34 (1.8%)	129 (6%)
미국	202	335	229	347	620	691
스위스	52	34	49	53	79	55
중국	218	160	349	380	604	666
호주	12 (2%)	72 (7%)	5 (0.7%)	66 (5%)	186 (10%)	36 (2%)
합계	587	1,030	721	1,212	1,863	2,143

주:1) 천연꿀의 수입액은 HS 번호 0409.00임.

2)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⑲ 키위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뉴질랜드	7,061 (82%)	8,473 (91%)	14,464 (88%)	18,017 (80%)	38,219 (86%)	42,698 (80%)
미국	710	149	548	2,753	3,575	2,619
칠레	748	647	1,361	1,758	2,885	7,996
합계	8,647	9,272	16,373	22,528	44,679	53,313

주:1) 키위의 수입액은 HS 번호 08110.50임.

2) 뉴질랜드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㉔ 치즈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네덜란드	93	49	474	688	1,649	1,371
뉴질랜드	16,616 (42%)	25,859 (52%)	22,493 (45%)	20,829 (39%)	30,279 (42%)	29,295 (33%)
덴마크	909	1,020	478	1,142	539	1,099
독일	0	48	593	1,785	3,706	2,068
미국	1,948	3,153	3,449	4,117	2,411	3,573
벨기에	0	415	279	1,288	1,610	56
이탈리아	115	368	765	1,134	1,631	1,957
프랑스	113	308	521	1,516	2,228	2,056
호주	16,001 (40%)	15,688 (32%)	19,065 (38%)	17,972 (34%)	20,731 (29%)	19,479 (22%)
합계	39,576	49,756	49,902	52,815	72,603	87,583

주:1) 치즈의 수입액은 HS 번호 0406.10임.

2)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㉕ 쌀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225 (0.5%)	4,523 (17%)	17,463 (39%)	7,883 (16%)	32,768 (40%)	14,152 (28%)
태국	9,076 (20%)	3,746 (14%)	0	4,666 (10%)	11,968 (15%)	3,755 (7%)
중국	37,014 (80%)	18,337 (69%)	21,727 (49%)	36,027 (74%)	37,636 (46%)	33,453 (65%)
합계	46,319	26,620	44,446	48,576	82,373	51,369

주:1) 쌀의 수입액은 HS 번호 1006임.

2)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㉒ 참깨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단	26,273	18,112	7,767	17,689	30,658	5,090
인도	0	7,930	2,301	6,544	14,407	9,358
중국	25,970 (49%)	16,088 (33%)	28,564 (73%)	42,943 (62%)	28,690 (36%)	31,266 (59%)
파키스탄	0	6,710	0	0	5,205	1,625
합계	52,483	49,226	38,935	68,865	80,593	52,565

주:1) 참깨의 수입액은 HS 번호 1207.40임.

2) 중국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㉓ 양파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322 (42%)	9 (1%)	54 (42%)	6,934 (39%)	6,075 (58%)	190 (3%)
중국	334 (43%)	1,359 (98%)	25 (19%)	9,404 (53%)	4,262 (41%)	5,295 (94%)
합계	774	1,381	130	17,733	10,388	5,627

주:1) 양파 수입액은 HS 번호 0703.10임.

2)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㉔ 마늘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국	111 (98%)	8,135 (100%)	6,996 (100%)	3,889 (100%)	9,786 (100%)	7,931 (100%)
합계	113	8,135	6,996	3,889	9,786	7,931

주:1) 마늘의 수입액은 HS 번호 0703.20임.

2)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㉕ 타피오카 수입액

단위: 천 달러

대상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만	1	8	62	70	45	24
태국	2 (4%)	4 (7%)	8 (8%)	124 (61%)	207 (72%)	265 (70%)
스위스	22	31	0	0	0	0
미국	3	10	0	0	1	0
합계	45	59	95	202	286	377

주: 1) 타피오카의 수입액은 HS 번호 1903.00임.

2) 태국의 경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정책연구보고 C2006-37

**DDA 농업협상 진전 상황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6. 11.  
발 행 2006. 11.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41~5 <http://www.@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연구는 농림부의 연구용역 결과로서 전제나 인용할 경우 농림부 관련 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